

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006-10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 제도개선

발 간 사



날로 심화되는 국가간 글로벌 경쟁시대에 국가청렴도는 각국의 신인도와 직결되는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세월호 사건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과 공직사회 내 청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뼈아픈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청렴성은 개개인이 갖추어야 할 미덕에서 나아가, 국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행위규범, 즉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청렴한 문화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이러한 신뢰는 각종 거래비용을 줄이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청렴한 대한민국’호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부패영향평가제도』는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부패 문제를 사후처벌 방식만으로 해결하는 것에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사전 예방하는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법령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조문 속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찾아내고 제거함으로써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한 해 동안 1,325개의 제·개정 법령안을 평가하고 그 중 357건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각 기관에 개선권고 하였

습니다. 또한 현행법령에 대해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선정하여 228건의 개선의견을 관계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난해의 결실들을 고스란히 담은 2013년 부패영향평가 사례집은 평가 업무를 처음 접하는 담당자들은 간단한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보다 전문적인 접근을 원하는 담당자들을 위해서는 우수사례를 담은 등 다양하게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각 장별 분류기준 및 구성취지에 관한 설명자료를 추가하고, 평가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함께 수록하여 부패영향평가 업무 담당자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해에도 우리 위원회의 반부패·청렴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사례집이 유용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에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4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 성 보



Contents

제1장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7

제1절	부패영향평가 개요	8
제2절	부패영향평가 기준	10
제3절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12
제4절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15
제5절	'13년도 부패영향평가 주요 추진내용	18

제2장 제·개정법령 평가 사례 25

제1절	평가기준별 주요 개선 사례	27
제2절	행정내용별 사례	85
제3절	참고의견 주요 사례	123

제3장 현행법령 평가 사례 137

제1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139
제2절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	155
제3절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185
제4절	민·관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강화	191
제5절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205
제6절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리 투명성 제고	219

제4장 자발적 개선 사례 265

제1절 중앙행정기관 행정규칙 개선 사례 267

제2절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 사례 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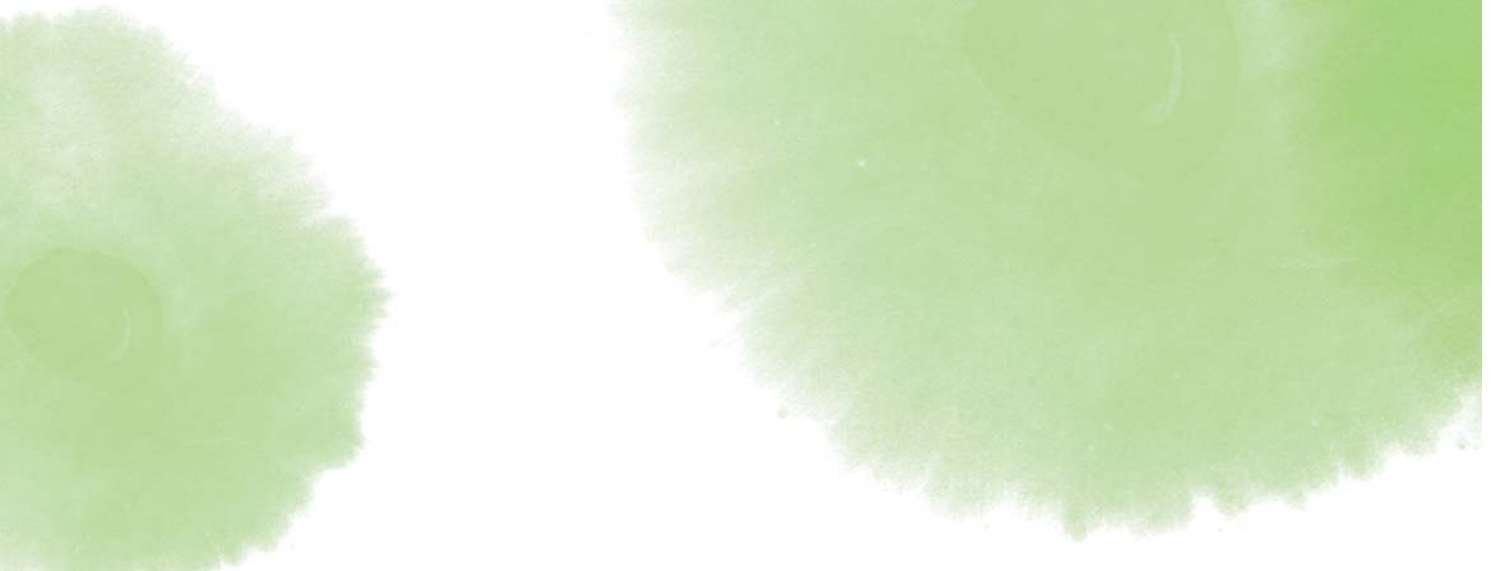
제3절 시·도 교육청 자치법규 개선 사례 311

제4절 공직유관단체 사규 개선 사례 337

제5장 부 록 373

제1절 제·개정 시 참고해야 할 일반법 374

제2절 색인 375



정림 韓 세상

Korea, a country of integrity

제1장

부패영향평가 제도 개요

제1절 부패영향평가 개요

제2절 부패영향평가 기준

제3절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제4절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제5절 '13년도 부패영향평가 주요 추진내용

청렴^韓
세상



제1절

부패영향평가 개요

1

의 의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개선하는 사전적·예방적 부패통제 시스템으로 크게 제·개정 법령 평가와 현행 법령 평가로 나눌 수 있음

2

법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6항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및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을 보내면서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와 통계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기간(「행정절차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입법예고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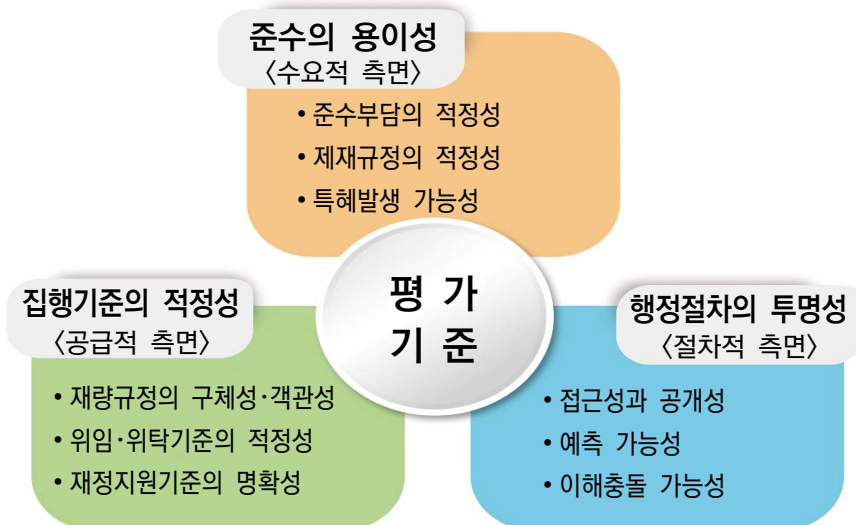
필요성

법령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법령을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

제2절

부패영향평가 기준 (영 제30조제1항)

- ❖ 부패영향평가 기준은 크게 ‘준수의 용이성’, ‘집행기준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의 3가지 영역으로 분류됨
- 이 중 ‘준수의 용이성’은 행정의 수요자(민원인 등)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들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재규정의 적정성’ 및 ‘특혜발생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 ‘집행기준의 적정성’은 해당 규정이 행정의 공급자(처분권자 등)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으로 세분화됨
 - ‘행정절차의 투명성’은 해당 규정이 수요자나 공급자 입장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해 부패발생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접근성과 공개성’, ‘예측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으로 세분화됨



1 준수의 용이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준수 부담의 적정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
특혜 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집행기준의 적정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각종 민간협회 등에 정부업무 위임·위탁 시 관련 법적근거 및 요건, 대상 사무의 범위와 한계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위탁 목적상 필요시 통제수단 등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예산이나 기금으로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거나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는 등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기준 및 범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예산남용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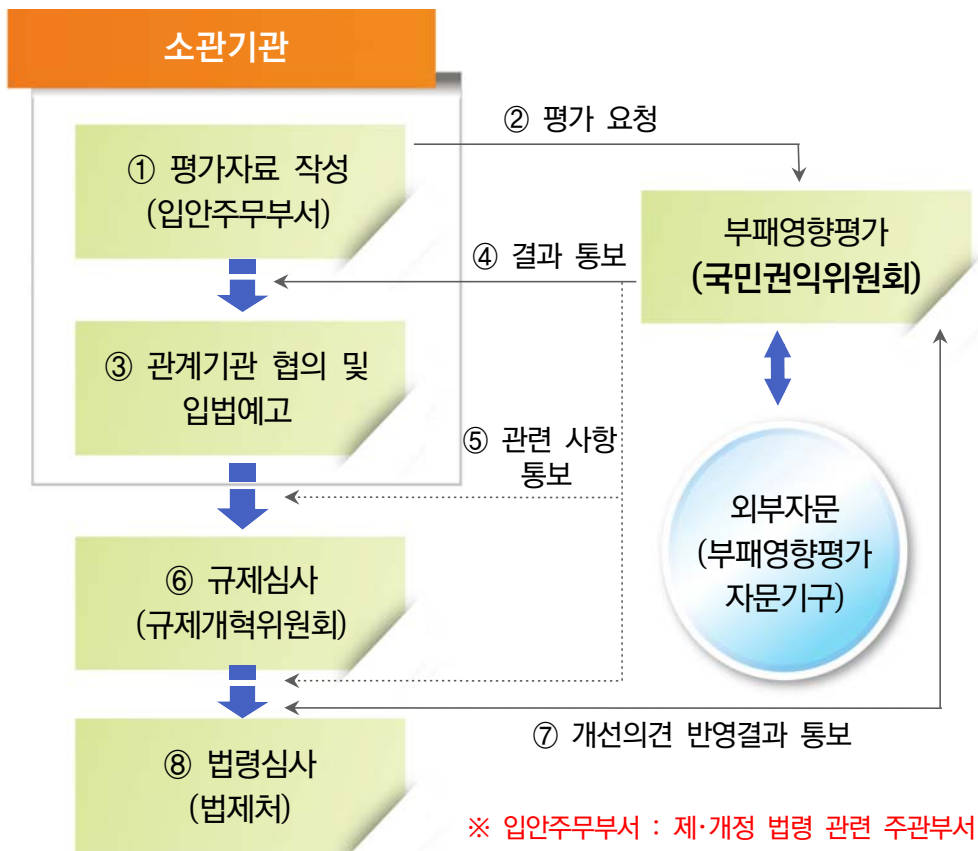
3 행정절차의 투명성

평가항목	주요 검토 내용
접근성 공개성	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있는지 여부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제3절

제·개정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 ❖ 각 기관은 소관 법령의 제·개정시 평가에 필요한 제·개정안 및 기초자료를 첨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 요청
- ❖ 위원회는 통상적인 입법예고기간인 40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소관기관에 통보



1

부패영향평가 요청

- ❑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 법령(안)과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첨부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시작하는 즉시 위원회에 평가 요청
 - ※ 평가요청에서 제외되는 법령 : 직제, 국호·국가·연호, 상훈·전례·국경일, 급여·수당, 문서·관인·차량관리 관련 법령 등
 - ⇒ 제·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대상 제외법령 통보(부패영향분석과-1592(2011.5.18.) 문서 참조)
 - 개정법령(안)을 평가 요청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함께 첨부
 - ※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서식(‘12부패영향평가 지침, p.27)
 - 제정법령(안)을 평가 요청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를 함께 첨부
 - ※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서식(‘12부패영향평가 지침, p.32)
- ❑ 평가자료의 제출방법은 공문의 경우 전자문서를 이용하고, 공청회·연구논문 등 기타 참고자료는 담당자 e-mail 등 활용
- ❑ 법령 입안주무부서는 부패영향평가 요청 시 반드시 법령평가 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 공문 시행
- ❑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단계에서 이미 제출한 법령(안)이 수정·보완된 경우 즉시 그 내용 및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

2

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 ❑ 위원회는 제출된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관계기관 협의 단계에서부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 완료
 - 입법예고기간 내에 평가를 종료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종료일부터 40일의 범위 안에서 평가기간 연장 가능



※ 평가기간 연장 사유 : 법령(안)의 지연제출, 제출자료의 보완,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령(안)의 수정·변경 등으로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 ❑ 위원회는 평가단계에서 해당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관계기관·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 수렴
- ❑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제출 법령(안) 및 자료를 토대로 평가 후 결과를 서면으로 소관 기관에 통보(영 제30조제6항)
 - 평가결과는 원안동의·개선권고·철회의견·참고의견으로 세분하여 통보
- ❑ 위원회는 평가결과가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영 제32조제1항)
- ❑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 법제처에 통보(영 제32조제2항)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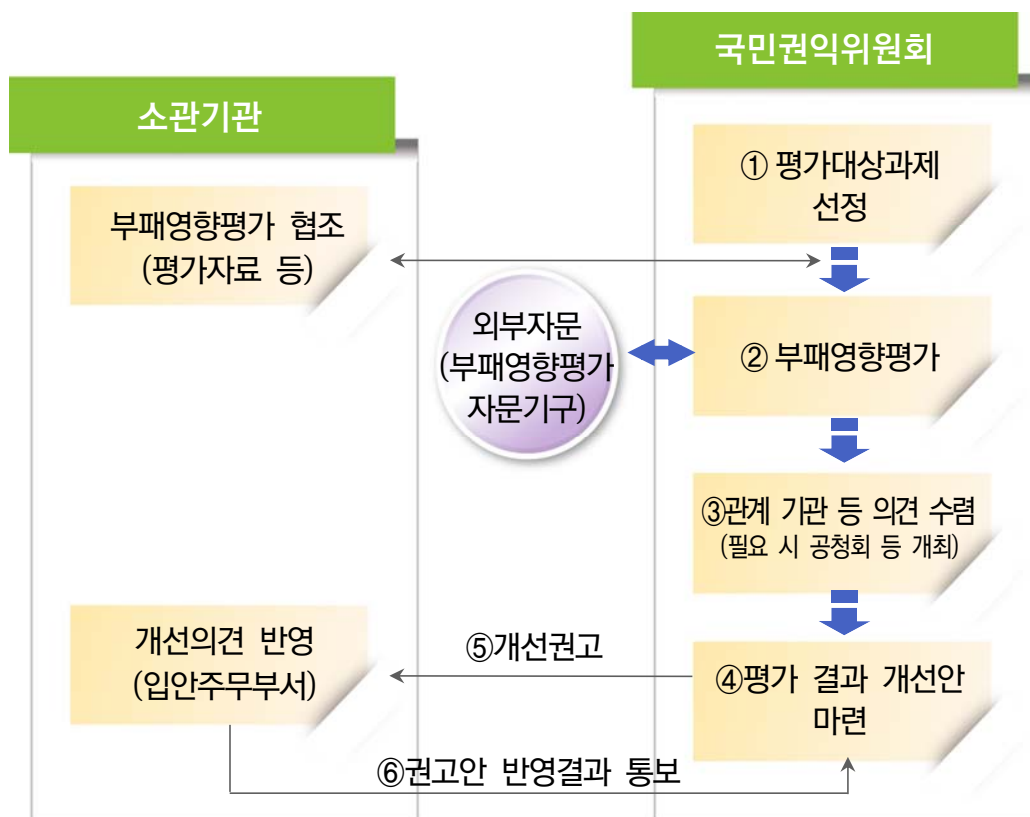
평가결과의 처리

- ❑ 행정기관은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법제처 심사 의뢰 시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
- ❑ 행정기관은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영 제30조제5항)
-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각 기관의 시책평가 등에 반영
 - 법령(안) 제출시기, 평가자료 협조, 권고사항 이행 등

제4절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 절차

- ❑ 위원회가 선정한 평가대상과제(법령)에 대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평가자료 등을 제출받아 평가 실시
- ❑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법령의 소관기관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권고 사항을 통보



※ 입안주무부서 : 현행 법령 관련 주관부서



1

평가대상법령 선정

- ❑ 제·개정 법령의 평가과정에서 부패유발요인이 해당 법령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 자치법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법령
- ❑ 부정부패·비리사건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법령

2

위원회 평가 및 결과 통보

- ❑ 위원회는 법령 평가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실시(법 제29조제1항제1호)
- ❑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나 실태조사 등에 대해 성실히 응하고 이에 협조(법 제29조제4항)
- ❑ 위원회는 법령 운용실태 분석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기초로 작성한 개선권고(안)에 대하여 소관기관과 협의
 -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이해관계인·전문가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 수렴
- ❑ 위원회는 평가결과에 따라 법령의 소관기관에 조치기한을 정하여 개선 권고사항을 서면으로 통보(영 제30조제4항)

3

평가결과의 처리

- ❑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조치기한 내에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의뢰 시까지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 ❖ 행정기관은 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치기한 내에 그 내용 및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영 제30조 제5항)
- ❖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의 개선의견 처리상황 및 협조이행상황을 확인하여 각 기관 평가 등에 반영
 - 법령(안) 제출시기, 평가자료 협조, 권고사항 이행 등

제5절

'13년도 부패영향평가 주요 추진내용

1

'13년도 부패영향평가 총평

2013년도에는 각급 기관의 부패영향평가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평가 매뉴얼 및 사례집 발간·배포, 워크숍, 사이버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년 대비 1.5배 증가한 6개 분야에 대해 현행법령 평가를 실시하여 228건의 개선 의견을 권고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의 개정을 통하여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평가업무의 효율성을 한층 향상시켰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권고 과제 이행을 평가 결과, 각 기관별 이행률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이행을 향상을 위해 평가기반 수준 향상 및 이행점검 강화 등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원회는 총 1,325개의 제·개정 법령안을 평가하여 169개의 법령안에서 357건의 개선의견을 도출하여 해당 기관에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고, 해당 기관의 수용률은 93.4%로서 2010년 이후 꾸준히 93% 이상의 수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현행법령 평가는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 공정성이 요구되는 교육, 지방자치 분야와 국가예산의 효율적 지출이 필요한 복지, 과학 등 6개 분야의 법령을 평가하여 228건의 개선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현재 소관부처에서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이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자치법규 및 사규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자율평가기반 구축여부를 반부패경쟁력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함으로써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중 대부분의 기관(91.2%)에서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명문화하고 있고, 공직유관단체 역시 대부분의 기관에서 사규공개관리규정을 제도화(92.8%)하면서 사규의 제·개정 예고시스템을 구축(91.2%)하여 자율평가기반을 구축하였다.

2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내용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중앙부처의 의뢰법령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평가하는 것으로, 2013년에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추어 주요 정책과제 우선 처리 등 역량의 집중을 통해 평균 처리기간을 17.2일로 전년(22.1일) 대비 28.5% 단축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업무효율성 향상을 추진하였다.

'13년 한 해 동안 총 169개 법령안에서 35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여 해당 기관에 개선권고를 하였으며, 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대한 해당기관의 수용률은 93.4%로 나타났다.

가. 제·개정 법령안 접수·처리 총괄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1,313개의 제·개정 법령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의뢰를 받아 1,156개의 법령안에 대해서는 원안동의로 통보하고, 169개의 법령안에서 357건의 부패유발요인을 도출하여 해당기관에 개선·보완하도록 하였다.

《 접수·처리 현황 ('13.1.1.~12.31.) 》

접 수	평가결과 통보			수용률
	원안동의	개선권고	개선의견건수	
1,313개 법령	1,156개 법령	169개 법령	357건	93.4%

나. 분야별 개선권고 현황

법령별(169개)로는 일반행정 관련 법령(72개, 42.6%), 환경·보건 관련 법령(31개, 18.3%)순으로 많았으며, 개선의견(357건) 중 43.1% (154건)가 일반행정 관련 법령에서 도출되었다.

《 분야별 개선권고 현황 ('13.1.1. ~ 12.31.) 》

분야 법령	계	일반 행정	교육 문화	국방 보훈	재정 경제	산업 개발	과학 정보	환경 보건	형사 사법	기타
개선권고 법령개수	169	72	10	15	7	22	3	31	5	4
개선의견 건수	357	154	24	17	19	48	15	65	6	9

다. 평가항목별 개선권고 현황

평가항목별로는 3개의 평가영역 중 집행기준의 적정성(147건, 41.2%)에서 개선의견이 가장 많았고, 9개의 평가기준별로는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114건, 31.9%), 예측 가능성(66건, 18.5%), 제재규정의 적정성(55건, 15.4%) 순이었다.

《 평가항목별 개선의견 현황 (357건) 》

평가영역	평가기준	개선의견 건수
준수의 용이성 (86건)	준수부담의 적정성	21
	제재규정의 적정성	55
	특혜발생 가능성	10
집행기준의 적정성 (147건)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114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17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16
행정절차의 투명성 (124건)	접근성과 공개성	27
	예측 가능성	66
	이해충돌 가능성	31
합 계		357

3

현행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내용

2013년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는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새 정부의 공약을 효과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관련된 분야의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에 국민생활과 밀접하면서 공정성이 요구되는 교육, 지방자치 분야와 국가예산의 효율적 지출이 필요한 복지, 과학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였다.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분야
-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 분야
-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분야
- 민·관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강화 분야
-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분야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투명성 제고 분야

이러한 세부 과제의 부패유발요인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전수조사' 방식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사전 예비조사 단계부터 대안의 발굴과 검증 등 전 과정에 걸쳐 현장의 실무자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또한, 해당 과제의 법령 분석수준도 법률부터 자치법규까지 수직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직접 근거법령부터 관련 법령까지 수평적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의 질적 수준도 향상시켰다.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와 폭넓은 교차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2013년 현행 법령 부패영향평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학교운영위원회의 불합리한 위원 구성방식, 형식적 안전심의(자문)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운영결과 측면으로 문제점을 구분하여 지위남용행위, 자격상실 의무화 등 7개 개선과제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전반의 공정성·투명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나.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청과 각 급 학교로 지원되는 교육경비 지원 관련 규정의 미비 및 불확실성과 운영·지원 과정의 불투명 등으로 교육재정 운용의 비효율과 기관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경비 전출·보조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함으로써 교육이전경비 지원기준의 명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건전성과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다.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지방의회 의사중계 범위를 본회의 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특위까지 인터넷 중계를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을 마련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원들의 공정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이끌어내고 주민의 의정활동 감시·참여를 활성화 하였다.

라. 민·관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강화

민간 복지시설과 지자체간 협력과 연계 부족으로 원활하고 체계적인 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민·관간 합동 사례회의 정례화, 사회 복지시설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복지재정의 낭비를 억제하고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마.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국립병원의 임상연구비가 연구의 성과와는 무관하게 정액화된 수당처럼 지급되고 있어, 임상연구비 세부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좀 더 공정하게 임상연구 과제를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임상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국가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였다.

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투명성 제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기본법령과 각 부처의 개별 법령간에 존재하는 괴리에 초점을 맞추고 부처 칸막이로 인해 R&D 관련 분야의 법 규정과 현실 적용이 서로 형평성 차원에서 차이가 있는 점을 주요 개선과제로 삼아 연구자 선정부터 연구비 환수·제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적용되는 법령 등을 명확하게 하고,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연구비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4

자치법규 및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및 공직유관단체의 사규는 각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형식적인 평가 등 실효성의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우리위원회에서는 기관별로 내실있는 자체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직유관단체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사이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각 기관 실무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자율평가기반의 구축 여부를 반부패경쟁력평가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각급 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였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1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반부패경쟁력평가 결과, 대부분의 기관(31개 기관)이 부패영향평가 체계 구축을 위하여 조례·규칙 등에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명문화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영향평가 제도가 정착단계로 한 단계 진보하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2013년도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의견 이행률 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8%, 시·도교육청의 경우 63%로, 이행률이 기관의 의지에 따라 큰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행률 향상을 위해서는 평가기반 수준의 향상과 이행점검의 강화 등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공직유관단체의 사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법령의 위탁을 받아 규정하는 것도 있어 법령과 유사하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제·개정되거나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사규에 대한 이해관자들의 의견제출 기회를 차단하고 국민들의 정보취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이어 사규공개관리규정의 제도화, 사규의 공개유도, 사규 제·개정 예고 실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그 결과 반부패경쟁력 평가 대상 140개 공직유관단체 중 131개 기관(93.6%)에서 사규공개관리규정을 제도화하였고, 사규집을 기준으로 109개 기관(77.9%)이 90% 이상의 사규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128개 기관(91.4%)에서 사규의 제·개정 예고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제2장

제·개정법령 평가 사례

제1절 평가기준별 주요 개선 사례

제2절 행정내용별 사례

제3절 참고의견 주요 사례

청렴
세상



청렴^韓세상

Korea, a country of integrity

제2장은 제·개정법령의 평가 사례를 수록한 장으로, 부패영향평가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우수 사례를 수록한 ‘평가기준별 주요 개선 사례’와 신규 업무자 등을 위해 빈발 지적 사례를 알기 쉽게 수록한 ‘행정내용별 사례’ 및 부패유발요인과는 무관하나 입법상의 모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참고의견’으로 구성하였음

제1절

평가기준별 주요 개선 사례

- 
1. 준수부담의 적정성
 2. 제재규정의 적정성
 3. 특혜발생 가능성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5.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6.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7. 접근성과 공개성
 8. 예측 가능성
 9. 이해충돌 가능성

제1절은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에 규정된 9가지 평가기준에 따른 주요 개선 사례로, 각 기준별로 엄선된 우수 사례의 파악을 통해 평가업무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수록



1

준수부담의 적정성

❖ 사례 1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20조의7(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인력 배치기준 등) 법 제39조의5제4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운영기준은 별표 3의 2와 같다.

[별표 3]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안 제20조의7 관련)

1. 시설기준

다음 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되, 노인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설비시설을 병용할 수 있다.

가. 사무실

긴급전화설치에 필요한 적정규모를 확보하여야 하며, 노인학대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또는 프로그램운영실

상담실 또는 프로그램운영실을 설치하여야 하되, 상담실 또는 프로그램 운영실에는 다음의 설비, 구조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1) 학대받은 노인 등 상담을 받는 자의 신분, 사생활 및 상담내용 등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칸막이를 구획할 것
- (2) 노인의 심리치료 및 프로그램 운영·교육 등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는 것
- (3) 효과적인 상담 또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비(녹취기, 카메라 등)를 갖추는 것

현 황

- 「노인복지법」에서 국가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시·도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되,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문제점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는 긴급전화, 상담실이 필수적인 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동일한 설치기준을 둠으로써, 불필요한 준수부담 우려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정책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상담 등을 수행

개선의견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시설기준을 구분하여 시설기준 설정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긴급전화, 상담실을 필수적으로 설치토록 규정

【 예 시 】

개정안	개선의견
[별표 3]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안제20조의7 관련) 1. 시설기준 다음 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되, 노인복지 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설비시설을 병용할 수 있다.	[별표 3]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안제20조의7 관련) 1. 시설기준 다음 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되, 노인복지 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설비시설을 병용할 수 있다.



개정안	개선 의견
가. 사무실 긴급전화설치에 필요한 적정규모를 확보하여야 하며, 노인학대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또는 프로그램운영실 상담실 또는 프로그램운영실을 설치하여야 하되, 상담실 또는 프로그램운영실에는 다음의 설비, 구조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학대받은 노인 등 상담을 받는 자의 신분, 사생활 및 상담내용 등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칸막이를 구획할 것 (2) 노인의 심리치료 및 프로그램 운영·교육 등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는 것 (3) 효과적인 상담 또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비(녹취기, 카메라 등)를 갖추는 것	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일반사무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책상 등 필요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1) 사무실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하되, 책상 등 필요비품을 갖추고, 상담을 하기 위한 전화 전용회선, 개인용 컴퓨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상담실 또는 프로그램운영실 상담실 또는 프로그램운영실을 설치하여야 하되, 상담실 또는 프로그램운영실에는 다음의 설비, 구조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학대받은 노인 등 상담을 받는 자의 신분, 사생활 및 상담내용 등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칸막이를 구획할 것 나) 노인의 심리치료 및 프로그램 운영·교육 등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는 것 다) 효과적인 상담 또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비(녹취기, 카메라 등)를 갖추는 것

❖ 사례 2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가대상 조문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허가신청시의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5. ~ 7. (생략)

현 황

- 국방부에서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 허가 제도를 운영
 - 제조 및 판매업의 시설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업의 시설 기준(같은 법 시행령 별표)]

구 분		장비기준 1	장비기준 2	건물면적기준
금속제품류		전동프릭션프레스 3톤 이상	전기파워프레스 2톤 이상	연면적 100㎡ 이상
섬 유 제품류	모 자 류	공업용 고속재봉기 (96종 또는 103종) 8대 이상	공업용 고속재봉기 (2분침기) 2대 이상	연면적 100㎡ 이상
	계급장류	자동식(다두식) 자수기 또는 직조기	1대 이상	연면적 100㎡ 이상

- 아울러 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요건에도 허가 시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운영

**군복 및 군용장구 현황**

- 군 복 : 군모, 제복, 군화, 계급장, 표지장 및 특수군복
- 군용장구 : 권총집, 구급대, 탄입대, 개인장구요대, 수통, 야전삽, 반합, 천막류, 모포, 침낭, 방탄헬멧, 방탄복, 배낭

문제점

-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 요건 변경

당초	개정안
허가의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허가신청시의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 관련 시설(기계·장비 등)의 발전에 따른 동종시설 고도화 또는 현대화 추진으로 시설의 생산능력을 높였음에도 허가신청 시의 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생산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 협의로 해석 시에는 생산시설을 업그레이드 한 이후에도 허가신청 시의 시설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개선의견

- 허가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허가의 취소 등 요건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시설을 통한 생산 능력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 허가신청 시의 시설능력 또는 허가신청 시 시설의 생산 능력 등 일부 보완을 통한 '준수부담의 적정성' 제고 방안 마련

2

제재규정의 적정성

❖ 사례 1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 (제34조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금액
법 제15조의3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1. 상습적으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상습적으로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26조의 2	300만원
2. 고의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00만원
3. 그 밖에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의 진술서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00만원

현 황

-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 발생

※ 국가기술자격증은 17개 부·처·청 소관의 556 종목으로 기술사, 기능장, 산업기사 등이 있음.
(’10. 9월 제도개선 자료)



〈최근 5년간 자격증 불법대여 적발현황〉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계(건)	112	203	214	314	226

- 현재 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각 부처에서 조사·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격증 불법대여자에 대하여 자격취소 및 벌칙 등 제재 조치
 - ※ 국가기술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자격정지 3년 혹은 자격취소 (법 제16조)
 -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26조)

문제점

- 벌칙규정의 적정성 미흡
 -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얻는 이익에 비해 벌칙(특히 벌금)이 경미하여 제재의 실효성 저하 우려
 - ※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국가자격증의 불법 대여를 알선해주고 수수료 수익 원을 챙긴 업체를 적발해 수사 (YTN, '09. 7월)
 - ※ 자격증 대여료로 받은 금액은 1억6500만원에 달하며 A씨는 알선료 명목으로 이 중 5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짐. (뉴시스, '10. 5월)

개선의견

-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강화
 - 자격증 불법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를 타 법령의 불법대여에 대한 제재(특히 벌금) 수준으로 강화

【 예시 : 국가기술자격법 】

개정안	개선 의견
제26조(벌칙) ① (생략) ②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8조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자	제26조(벌칙)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③ 제18조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불법대여에 대한 제재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법령명	위반내용	징역형	벌금형
1	「법무사법」 제72조	법무사 등록증 대여	5년	1천만원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대부업 등록증 대여	3년	3천만원
3	「수도법」 제83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대여	2년	1천만원
4	「수의사법」 제39조	수의사면허증 대여	2년	1천만원
5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35조	수산질병관리사면허증 대여	2년	1천만원



❖ 사례 2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가대상 조문

제28조(비밀엄수 의무 등) ①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아니 된다.

제30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 황

-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있어 판결 및 조정문제를 결정하는 준사법적 행정기관으로 공공성이 큰 업무를 수행
 - 이에 노동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담당한 사건에 대한 비밀누설 행위 등은 노동위원회 판결 및 조정의 공정성·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위반 시 벌칙을 규정

문제점

- 벌칙규정의 적정성 미흡
 - 비밀엄수 의무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나 비밀을 담보해야 할 책임에 비해 벌칙(특히 벌금)이 경미하여 비밀 누설을 담보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
 - ※ 업무상 비밀준수의무 위반의 법정형을 분석한 결과 “징역 2년~3년 이하가 55개(57%) 또는 벌금 1,000만원~3,000만원 이하 42개(43%)”로 가장 많이 분포 (부패영향분석과-1398, '09년 8월)
 - 또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공익위원과 사건담당자가 비밀엄수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의 경중이 달라 형평의 문제가 제기될 소지
 - ※ 공인노무사의 경우 비밀엄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 (2010. 5. 25.)

개선의견

- 비밀엄수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공인노무사의 비밀엄수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으로 강화

【예시】

제정안	개선의견
제30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관련 유사 입법례】

구분	법령명	징역형	벌금형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5년	5천만원
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8조	5년	5천만원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9조	5년	5천만원
4	「실용신안법」 제46조	5년	5천만원
5	「특허법」 제226조	5년	5천만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7조	5년	3천만원
7	「우편법」 제51조의2	5년	2천만원
8	「대외무역법」 제54조	3년	3천만원
9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0조	3년	3천만원
10	「변호사법」 제112조	3년	2천만원
11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6조	3년	1천만원
12	「건강검진기본법」 제28조	3년	1천만원
13	「결핵예방법」 제41조	3년	1천만원
14	「공인노무사법」 제28조 (2010.5.25.개정)	3년	1천만원
15	「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2항	3년	1천만원
1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47조	2년	2천만원
17	「교통안전법」 제63조	2년	2천만원
18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8조	2년	2천만원
19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	2년	2천만원
20	「민사소송법」 제164조의7	2년	1천만원



3

특혜발생 가능성

❖ 사례 1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30조(토지·건물 등 소유자) 법 제19조제1항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등을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자
2.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소유자로부터 계속하여 상속을 받아 소유한 자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여 고도를 활력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은 법에서 정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현 황

- 고도(古都) 지구 행위 제한으로 사적 재산권 침해를 받는 토지 등의 소유자 중 ① 지구 지정 이전부터 소유한 자 및 ② 상속자는 토지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 개정안은 고도(古都) 지구 지정 이후에 지구 지정 이전 소유자 및 상속자로부터 토지 등을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자도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매수청구 신청자

법 제19조제1항

1. 지구지정 전부터 계속 소유한 자
2. 지구지정 이전부터 계속 소유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자
3. 지구 내 소유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령 제30조 <신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로부터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자
2. 법 제19조제1항제2호로부터 상속받은 자

※ 2012. 3. 5. 문화재청은 경주·부여·공주·익산 4개 고도의 894만㎡를 고도지구로 지정 (특별 보존지구 552만㎡, 보존육성지구 342만㎡)

문제점

- 지구 지정 이후에 지구 지정 이전 소유자 및 상속자로부터 토지 등을 취득한 소유자에게도 매수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연공원법」 등 유사법령에 비추어 특혜 소지가 있음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자연공원법」 등 유사 법령은 매수청구 신청을 ① 지구 지정 이전부터 소유한 자, ② 상속자 및 ③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부터 소유한 자로 한정

개선의견

- 지구 지정 이전 소유자 및 그 상속자에게만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안 제30조제1호 삭제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30조(토지·건물 등 소유자) 법 제19조제1항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30조(토지·건물 등 소유자) 법 제19조제1항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소유자로부터 계속하여 상속을 받아 소유자한 자를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등을 그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자	〈삭제〉
2.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소유자로부터 계속하여 상속을 받아 소유자한 자	〈삭제〉



❖ 사례 2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 제3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명령·검사 및 질문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현 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추진의 기본계획이 되는 ‘종합 계획 수립’과 ‘정비계획 수립’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 농촌공사에 위탁 하도록 규정

종합계획과 정비계획의 구분

구 분	종합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법률근거	제5조	제6조
수립권자	농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수립내용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 대상지역 3. 추정사업비 4. 정비사업의 목표 5. 노후·불량주택 정비 방향 6. 정비기반시설의 정비 방향 7. 공동이용시설의 정비 방향 8. 공동형 농어촌주택 정비 방향 9. 경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10.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 사업명칭, 정비구역 위치·면적 2. 사업시행 방식·예정시기 3. 정비사업 시행예정자 4. 토지·물권·권리의 명세서 5. 사업비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경관·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계획 7. 농어촌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8. 공동형 농어촌주택 설치계획 등 9.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 10.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계획 등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추진 절차 및 내용〉

추진 절차	관련 내용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 수립(법 제5조)	▶ 수립권자 : 농식품부장관 ▶ 계획내용 – 정비사업 기본방향, 대상지역 및 현황, 추정사업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법 제6조)	▶ 계획수립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구역지정권자 : 시·도지사 ▶ 절차 : 정비계획수립→주민 공람(30일)·의견수렴→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 신청→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도지사)→시·도지사 구역 지정→고시 및 (농식품부)보고
정비사업 시행자 지정 (법 제12조)	▶ 지정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시 행 자 : 지자체, 농어촌공사, 지방공기업, 농어촌마을정비조합 등
실시계획(법 제16조)	▶ 수립자 : 사업시행자 ▶ 승인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통보 – 14일 이상 일반인 열람 ▶ 인·허가 의제 : 건축법등
	▶ 임시수용시설 설치(철거주택소유자/세입자) – 사용신청승인 : 국가/지자체 – 사용료, 대부료 면제 ▶ 토지수용 : 공익사업법에 따름 ▶ 주택법 적용 특례 :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대지전매 제한 : 대지 공급받은 자는 등기 완료 전까지 전매 제한
공사완료(법 제32조)	▶ 준공인가 : 시장·군수·구청장 – 준공검사(직접 시행시 생략) – 준공인가 후 고시 ▶ 정비기반시설 설치 : 사업시행자 – 관리기관에 무상 귀속 – 舊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 귀속



문제점

- 제정안 제36조제3항은 ‘정비계획’ 수립권자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시행의 기본이 되는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 업무 모두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독점
 - ‘정비계획’ 수립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정비 구역 지정권자도 시·도지사이므로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에 기초가 되는 조사업무 위탁은 수립권자의 재량 사항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독점은 과도한 특혜 제공 우려
 - ※ 법률에서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을 지방공기업, 농어촌마을정비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무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이외 조사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을 갖춘 자(지방공기업, 도시계획설계·조사 전문 엔지니어링 및 기업·단체 등)도 시행할 수 있는 사무
 - ‘종합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업무를 모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독점할 경우 정비사업 부실*과 함께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에 관한 기술발전 및 기술경쟁력 저해 우려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 등 부실 사례

- ① 한국농어촌공사는 그동안 정부의 요청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농업 관련 공사를 많이 했고 부채비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서자 정부와 여당이 부채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체육시설이나 마을 개발사업 등에 진출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해 부실공사를 양산하고 있지만 관리 능력은 항상 제자리를 맴돌고 있음. (2012. 8. 15. 충청일보)
- ②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는 각종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과 사업운영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음. 공사가 지난해 말 운영 중인 자체사업은 모두 19곳으로 이중 18개 지구 대부분이 경제성 부실 논란에 휩싸임. 특히 공사가 지난 2005년부터 총 8백여억원을 투입해 13개 지구의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중 5개 지구는 사업 추진이 취소되거나 분양에 들어간 나머지 지구도 분양율이 2%에 그치는 등 사업관리 부실과 예산낭비 문제가 지적됨. (2012. 10. 12. 경기일보)

- ③ 인천시가 인천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시행 중인 3개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 등을 감사한 결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일환인 웰빙문화센터를 신축 하면서 감리비 과다계상과 이중 난방시설 설치로 6천여만원을 부당 집행하는 등 다수의 예산낭비와 사업관리 부실실태를 적발. (2013. 1. 17. 시민일보)

개선의견

- 정비계획 수립권자가 지역여건 및 특성에 따라 위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적 규정

【예시】

제정안	개선의견
제3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제3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 사례 3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19조의3(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법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해외 건설 정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출시장 및 공종 다변화 전략 개발
 2. 투자개발사업 및 건설 엔지니어링 진출 확대 등 부가가치 제고 방안 연구
 3. 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 및 기법 연구
 4. 해외건설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간 추진체계 강화방안 연구
 5. 해외건설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② 법 제15조의4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법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를 말한다.

현 황

- 해외건설 정책 등 지원을 위한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설치
 - 해외건설 정책개발, 해외건설 수주 및 리스크 관리(터키 원전, 이란제재)를 위한 기관의 필요성 대두
 - 「해외건설촉진법」 개정('13.8.13)을 통해 해외건설 시장·제도·정책·동향 등에 대한 정보조사·분석·제공 및 연구기능 등을 수행하는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이하 ‘정책지원센터’) 설치근거 마련
 - 개정안은 정책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정하고, 정책지원센터의 위탁기관을 해외건설협회로 지정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기능

- 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분석 및 시장전망
- 주요 국가 해외건설 제도·정책 동향 조사·분석
- 국제협력 추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지원
- 해외건설 시장 개척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 해외건설 진출에 따른 사업성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컨설팅

문제점

- 위탁기관을 해외건설협회로 한정하여 다른 전문기관의 참여 배제
 - 개정안은 정책지원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적합성 등의 사유로 해외건설협회를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 국토교통부로부터 해외건설업체에 해외건설 기술 및 도시개발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탁 중인 전문기관 사례를 고려하면,
 - 해외건설협회만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다른 전문기관의 참여를 배제하고 해외건설협회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해외건설 관련 업무 수탁현황 〉

구 분	핵심기능	주요 제공정보	수탁 기관	예산
건설기술정보 시스템	해외건설 정보 및 정책 등 정보제공	입찰계약·설계관리, 해외건설 정책·표준, 설계·시공기준	건기연 ('12.12)	-
중소기업수주 지원센터	수주컨설팅, 교육	중소규모 사업정보	해건협 ('06.4)	816백만원 (정부 670, 해건협 146)
해외도시개발 지원센터	도시사업발굴, 컨설팅	도시개발정보	LH ('12.10)	663백만원 (정부 200, LH 463)
해외건설협회	개별 프로젝트 정보제공, 국제 민간협력	개별 프로젝트 정보, 수주·시공 정보	- ('76.11)	-



개선의견

- 정책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기관으로 해외건설협회 외에 전문기관을 추가로 지정

【유사 입법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시 입법례

①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⑤ 법 제8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②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6조(공공시설 등의 위탁시행) ②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기관·정부출연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삭제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6.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7.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③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3조(권한의 위탁 등) ① 법 제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원자력발전사업자
2. 원자력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3.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 사례 1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12조(연구중심병원의 지정기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연구중심병원의 지정절차) ① ~ ② (생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지정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2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 등에 관하여 제15조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 ⑦ (생략)

[별표 2]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제12조 관련)

1. 연구조직 (생략)

2. 연구 인력

가. 연구전담의료인,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은 필수적으로 두어야 한다. 연구인력의 구분 및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연구인력에 대하여 중개 및 임상연구, 융·복합연구 등에 관한 교육·훈련·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교육 및 훈련 과정을 갖추어야 한다.

3. 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가. 의료기관은 생명자원은행과 임상시험센터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

1)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과 연구인력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연구기자재를 설치한 후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4. 연구실적

해당 의료기관의 최근 3년간 연구논문, 지식재산권, 기술료 등 연구실적의 평가 결과, 전체 의사수 대비 기준점수 및 가산점수의 합계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5. 연구역량의 질(質)

연구조직, 인력·시설·장비 등 연구 인프라, 연구실적, 연구중심병원 운영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6. 임상시험 수준 (생략)

7. 의료서비스 수준 (생략)

현 황

-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위해서는 2차에 걸친 평가 후 평가 결과 등에 관한 연구중심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 지정된 연구중심병원은 3년마다 재평가 후 재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 결격사유 발생 시 지정취소 가능
 - ※ 대상 : 치과병원(191개소), 한방병원(160개소), 종합병원(273개소), 상급종합병원(44개소), 전문병원(99개소)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

문제점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병원의 ‘연구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기준이 미흡
 - ※ 제4조의 평가기준에서 별표 2의 제5호 ‘연구역량의 질’은 누락되고 제2호 내지 제4호에

- 다른 지정기준을 설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각 호는 연구인력, 연구 인프라, 연구실적을 각각 최소기준 이상으로 갖추라는 요건만 규정
-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위한 연구역량 평가 시, 평가자가 평가기준의 수준과 범위를 자의적으로 재설정할 우려

개선의견

- ‘연구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정하여 고시

【 예 시 】

개정안	개선의견
제12조(연구중심병원의 지정기준) ① ~ ③ (생략)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지정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2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 등에 관하여 제15조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⑤ ~ ⑦ (생략)	제12조(연구중심병원의 지정기준)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지정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역량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 등에 관하여 제15조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 ⑧ (개정안 ⑤ ~ ⑦과 같음)



❖ 사례 2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가대상 조문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1. ~ 6. (생략)
7.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중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 나.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 다.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현 황

-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근거하여 문화재 지정·해제·현상변경·국외반출 및 매장문화재 발굴·평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문화재위원회 조사·심의 사항】

1.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6.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 반출에 관한 사항
7.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8.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9.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8조 제1항)

- 문화재위원회 심의 안건 중 현상변경 및 매장문화재 발굴 등의 사항은 중요 사항만을 심의하도록 조사·심의안건 범위의 개정을 추진 중임

현행	개정안
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7.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중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9.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0.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문제점

-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및 매장문화재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 ①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 ②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만 문화재위원회의 조사·심의 대상이 됨
 -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하고 재량권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의 자의적 재량권 행사의 가능성이 있으며,
 - 특히 매장문화재의 경우 발굴조사기관과 관련 있는 문화재위원이 심의 여부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재량기준의 구체화 필요
 - ※ '07. ~ '10.까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기관 지도위원회 자문수당 지급액 중 36%(18억 1,663만원)가 현직 문화재 위원에게 지급되었으며, 1억원 이상 수령자 9명 중 8명이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소속('11.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개선의견

- 재량권자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조사·심의 사항을 하위규정(예 :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에서 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 예 시 】

개정안	개선 의견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1. ~ 6. (생략) 7.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중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 <u>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u> 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나.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다.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생략)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1. ~ 6. (개정안과 같음) 7.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중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 <u>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사항</u> 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나.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다.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개정안과 같음)

❖ 사례 3 :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12조(토지 등의 관리와 처분) ① ~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의계약으로 관리·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내 거주기간, 사업 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현 황

-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어촌특화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매각·임대·사용 등의 방법으로 관리·처분 가능(법 제23조제1항)
 - ※ 어촌특화시설 :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특화사업을 마친 경우 어촌특화사업에 따른 시설 중 어촌특화시설(수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생태경관 관리시설 등)로 지정·고시하는 시설
 - ※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법 제12조) :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한국어촌어항협회, 지방공사, 기타 법인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등이 관리·처분되는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등에 수의계약으로 관리·처분 가능(법 제23조제2항)
- 이에 따라 시행령 제12조제4항 제정안은 토지 등을 수의계약으로 관리·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내 거주기간, 사업 운용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



어촌특화사업 업무 흐름도(workflow)



문제점

- 시행령 제12조제4항은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내 거주기간, 사업 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세부적인 기준이 없이 추상적으로 규정
-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에서 다수의 사람이 관리·처분되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려고 할 경우 그 선정이 자의적으로 될 우려 및 선정 받고자 하는 자들의 불법 로비 등 부패발생 가능성

개선의견

- 거주기간이나 사업 운용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예시】

제정안	개선의견
제12조(토지 등의 관리와 처분) ① ~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의계약으로 관리·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u>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내 거주기간, 사업 운용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u>	제12조(토지 등의 관리와 처분)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의계약으로 관리·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u>별표 1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이 매수·임차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격순위가 동일할 경우 공개 추첨하고, 상이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u>



5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 사례 1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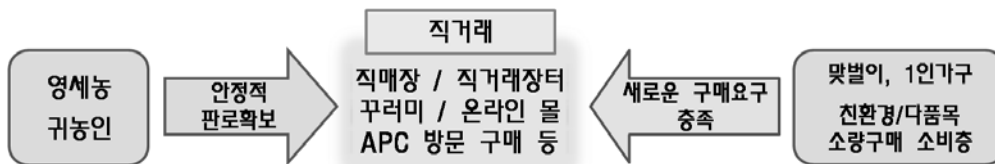
평가대상 조문

제19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위임 받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현 황

- 농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유통단계가 복잡하여 과도한 유통비용 발생으로 물가 상승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어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산물 직거래 관련 법률을 제정



〈농산물 직거래 개념〉

- 직거래 목적(농가소득 증대, 소비자 가계 안정)에 부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우수직거래사업자인증’을 부여하고, 인증 받은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정부 등의 직거래 활성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

- ‘우수직거래사업자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인증을 신청하면 인증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직거래인증을 발급하고, 인증 심사·승인 관련 업무는 위임·위탁할 수 있으며, 위임·위탁 받지 않은 자가 직거래인증 업무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문제점

- ‘우수직거래사업자인증’ 사무의 위임·위탁 대상 등 설정 불명확
 - 인증 관련 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위탁기준과 절차 및 책임성 확보 수단 등의 대강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구체적 규정 없이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부패유발 요인 내재
 - ※ 제정안에서 ‘우수직거래사업자인증’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제19조), 위임·위탁 없이 직거래인증 업무를 했을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 마련(제21조)
 - 인증사무를 위임·위탁 하면서 인증기관 지정요건 등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어 무분별한 위임·위탁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 내재

개선 의견

- 위임·위탁 규정을 구체화·명확화 하고,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



【예시】

제정안	개선 의견
제19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u>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위임 받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제19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직거래인증 심사·승인 2. 제16조에 따른 직거래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3. 제17조에 따른 직거래 활성화 교육·지원·홍보 ③ (제정안 제2항과 같음) 제○○조(인증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직거래사업자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직거래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인증업무의 범위, 인증기관의 지정 및 갱신 관련 절차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제정안	개선의견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2. <u>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u> 3. <u>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직거래 인증한 경우</u> 4. ~ (생략)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하여야 한다.</u> ③ <u>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하면 다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u> ④ <u>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 사례 2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 제2조(진술조력인 양성교육) ① 법무부장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른 진술조력인 양성을 위하여 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이하 ‘진술조력인 양성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법무부장관은 진술조력인 양성교육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현 황

● 법 제35조에 의하면,

- 같은 조 제1항에서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진술조력인 양성 업무는 법무부장관 업무로 규정되어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서 ‘진술조력인의 자격이나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진술조력인의 자격이나 양성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법무부장관의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지는 아니함

문제점

-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 행정관청의 권한은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권한의 위탁은 법률이 정한 권한의 분배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나,
- 개정안 제2조제2항의 ‘진술조력인 양성교육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은 법률에 근거 없이 위탁됨

개선의견

- 관련 규정 삭제 또는 위탁 근거를 법률에 마련토록 개선



❖ 사례 3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22조(납부금 부과·징수 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지방해양항만청장,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항공법」 제2조제7호의2에 의한 공항운영자에게 각각 위탁한다.

- ※ 「항공법」 제2조제7호의2. “공항운영자”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항운영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그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공항운영의 권한을 위탁·이전받은 자를 말한다.

현 황

-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2010년에 1,704억원이 징수됨
- ※ 납부목적 :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금액	부과·징수
○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	1인당 1만원 (선박이용 시 1천원)	각급 공항·항만공사, 지방해양항만청

- 개정안은 출국납부금 부과·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항공사 등 외에 민간 공항운영자도 동 납부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 ※ 민간사업자의 공항운영을 허용하는 운영권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

문제점

- 출납금 징수업무 재위탁 관련 근거 미비
 - 국민의 부담·희생을 수반하는 징수업무 등을 위탁받은 기관이 동 사무를

타 기관에 재위탁할 경우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나,

-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공항공사 등은 재위탁 관련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04년부터 실제 출국납부금 징수업무를 국내항공사에 재위탁하여, 항권권 구입 시 납부금을 포함하여 징수 중

●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통제수단 미흡

- 위탁사무 관리·감독 등 합리적인 조치수단이 부재하여 수탁기관의 부정행위 등의 발생 우려
- 또한 출국납부금 징수업무를 대행하는 국내항공사의 수수료율 등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수탁사무의 투명성 저해

관련 사례

“국내항공사 출국납부금 관련 불로소득 186억원”

- '05~'09년 항공사들이 항공료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징수대행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익은 186억원에 달하는 등 승객의 소중한 돈을 특별한 활동이 없는 항공사 배불리는데 쓰이고 있음을 지적

(국토해양위 정희수 의원, '10. 10월 국정감사 시)

개선의견

- 출국납부금 부과·징수업무 관련 수탁사무 재위탁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
※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국제항공사업자’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탁자(재위탁 포함)에 대해서 지휘·감독권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질 수 있음을 명시
- 출국납부금 부과·징수업무 위탁수수료율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예 시 】

개정안	개선의견
제22조(납부금 부과·징수 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지방해양항만청장,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항공법」 제2조 제7호의2에 의한 공항운영자에게 각각 위탁한다. 〈신설〉	제22조(납부금 부과·징수 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지방해양항만청장,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항공법」 제2조제7호의2에 의한 공항운영자에게 각각 위탁한다.
〈신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는 「항공법」 제2조제8호에 의한 국제항공사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납부금 부과·징수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
〈신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⑤ 수탁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금 부과·징수업무에 대하여 수탁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운영비를 취득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수료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6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 사례 1 :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법률안

평가대상 조문

제31조(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자원순환사업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1.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2. 관리대상자의 순환이용에 관한 사업
 3.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순환이용 사업
 4.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에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정부는 자원순환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원순환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현 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차관 알선 가능



자원순환사업의 종류

- ▶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 ▶ 관리대상자의 순환이용에 관한 사업
- ▶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순환이용 사업
- ▶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 ▶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자원순환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자금 등을 산업기반기술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이나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 가능

문제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업자에게 자금의 보조나 융자, 차관 알선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 구체적인 지원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하지 않아, 자원순환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
 - 일부 사업자에게 자금 지원 편중 등 불투명하게 운영될 가능성

개선 의견

- 자금의 지원방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규정

【예시】

제정안	개선 의견
제31조(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자원순환사업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 ③ (생략) 〈신설〉	제31조(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자원순환사업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1. ~ 5. (제정안과 같음) ②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방법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사례 2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2조(공동이용시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구판장·세탁장·화장실·수도·주차장
2. 농산물판매장, 농기계보관창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시설 등 농업관련 시설
3. 경로당·어린이집 등 노유자(老幼者) 시설
4.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취미·체육활동을 위한 시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 공동이용시설 : 농어촌마을 정비 사업에 포함되는 마을 편의시설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회관·공동작업장 등의 시설

현 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법률을 제정('13.6.4.)하면서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에 포함되는 주민공동이용 세부시설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하도록 위임
 - 금회 시행령 제정안에서 구판장·세탁장·화장실·수도·주차시설 등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구체화하는 규정을 마련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공동이용시설’의 정비 방향과 설치계획을 수립(법률 제5조·제6조)해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융자(법률 제39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 현황

구 분	세부내용
사업목적	▶ 농어촌마을의 주거 인프라 정비 및 마을 내 가용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재배치 → 지속가능한 농어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농어촌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
사업기간	2013~2014(2년간)
총사업비	158억원(보조81 / 융자40 / 지방비35 / 자부담2)
사업대상	전국 4개 마을(서천-송림마을, 순창-방축마을, 진도-안농마을, 영주-두산마을)
지원내용	▶ 보조 : 기반시설정비, 공동생활형 홈 조성, 영유아보육시설, 에너지 효율화 등 ▶ 융자 : 개별 주택개량(5천만원 한도)
추진역할	▶ 농식품부 : 기본계획 수립 및 국고 지원 ▶ 지방자치단체 : 마을별 사업계획 수립, 지방비 확보 등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총괄 지원 및 사업시행 등 ▶ 지연주민 : 주택개량 및 공동생활형 홈에 대한 입주자 선정 등
추진절차	사업공모·접수(농식품부·시군)→대상지 선정(농식품부)→기본계획 수립(시군)→정비 구역지정(시군)→공사시행(사업시행자)→준공(시군)

*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문제점

-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추상적·다의적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분별한 재정신청 및 지원 등이 우려
 - 시행령 제정안 제2조제5호에서 “제1호~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이라는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공동이용시설’ 규정 마련으로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의 무분별한 재정지원과 집행 우려

농림보조사업 신청·관리 부실 사례

- ① 강릉 모 어촌계장 김모씨는 어촌마을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민회관과 공동작업장을 건축할 의사가 없음에도 강릉시에 건립하겠다고 토지매입비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았으나, 시설 준공 전 임의적으로 매각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12억원을 편취. (2012. 2. 6. 강원도민일보)
- ② 전남도가 2월 중순부터 한 달 남짓 22개 시·군 중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최근 6년간 농림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이 중복·편중·특혜 지원되거나, 지원시설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10건의 크고 작은 위반 사례 적발. (2013. 4. 9. 뉴시스)



- ※ 법률 제39조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융자할 수 있는 비용을 ①정비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비용 및 보상비, ②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규정,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마을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로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
-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사업시행자 등이 시설의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추가적인 법령 해석이나, 설명 등이 필요한 불확정개념으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이 우려

개선의견

- ‘공동이용시설’의 범위(종류) 명확화·구체화 규정 마련
- 불명확하게 규정된 제정안 제2조제5호 삭제 또는 정비사업을 실제로 관리·집행하는 지자체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공동이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례로 시설의 범위를 구체화 하도록 규정

【 예 시 】

제정안	개선의견
제2조(공동이용시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4. (생략) 5. <u>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u>	제2조(공동이용시설) (제정안과 같음) 1. ~ 4. (제정안과 같음) [제1안] 〈삭제〉 [제2안] 5. <u>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u>

7

접근성과 공개성

❖ 사례 1 :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13조(입학전형) ① 국악·전통학교의 입학전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및 제7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교 교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방법, 절차, 시기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학교 교장이 정한다.

현 황

- 국립 국악·전통예술중고교 학교운영의 효율성과 특성화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 등의 권한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
- 이관과 동시에 국악·전통예술학교의 독자적인 입학전형 실시 등 핵심권한을 교장에게 부여하여 유능한 국악전통예술분야 인재 발굴 도모

※ 이관 대상(4개 학교)

내 용	학교명	학 과	학생수
고등학교	국립 국악고등학교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정가, 판소리, 민요, 무용	450명
	국립 전통예술고등학교	무용, 성악, 기악, 음악, 연극, 창작연희, 연희극	535명
중학부	국립 국악학교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정가, 판소리, 민요, 무용	316명
	국립 전통예술학교	한국음악, 한국무용, 음악연극	176명



〈 주요 변경사항 〉

내 용	기 준	변 경
학교 운영	교육과학기술부 관리·감독	문화체육관광부 관리·감독
교장, 행정직원 임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무원 정원·직제	교육과학기술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 직제
입학 전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입학전형 실시	국악·전통예술학교 특성을 반영하여 독자적 입학전형
입학 전형권자	시·도 교육감	교장
영재 교육	미 실시 (영재교육진흥법령 준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승인 후 실시 가능

문제점

- 기존 교육감이 담당했던 입학전형권을 해당 학교 교장에게 일임함으로써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한 학생선발의 특례를 부여코자 하나,
 - 지원 자격 및 방법, 성적산출 및 평가 등 학생선발 방법 등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과 관련한 규정이 누락되어 학생, 학부모 등 국민의 예측가능성 저해
 - ※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맡고 있는 타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교, 과학고 등은 매년 다음연도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중에게 공고하고 있음
 - 특히 예술계 학교의 입시 관련 편법 입학 등 비리행위가 다수 발생하는 점을 고려, 자의적 학사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보공개 기제 필요

관련 사례

- 서울국악예고(現 국립 전통예술고) 교장이 신입생 선발시험에서 합격권이 아닌 학생 3명의 점수를 뒤바꿔 합격시키고 원본채점표를 폐기하는 등 입시 비리
(MBC뉴스, '08. 2. 26.)
- 국립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동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 평가 등에 직접 참여하는 등 부정입시 의혹
(문광위 국정감사, '09. 10. 6.)

개선의견

- 국악·전통예술학교 입시와 관련한 지원자격 및 방법, 학생선발방법, 전형일정 등이 담긴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방안 명시

【 예 시 】

제정안	개선의견
〈신설〉	제13조의2(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월 ○일까지 국악·전통학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 학생선발 방법, 전형일정, 변경 사항 등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그 실시기일 3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일시, 원서접수 및 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전형요강 등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사례 2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13조(지원사업의 절차 등) ① (생략)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원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예상 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3.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4. 사업장소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의 변경

③ ~ ⑤ (생략)

현 황

-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관계법령에 따라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 받은,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업승인 여부 결정(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업승인(변경승인 포함) 내용 등 고시

【사업승인에 따른 제출서류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출서류(9종)	중요한 사항(5종)
1. 지원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 3. 예상 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4.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장소(위치도 포함) 6. 토지가 소요될 경우 확보방안 7. 지원사업의 효과 8. 관계도면 9. 그 밖에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1. 지원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예상 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3.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4. 사업장소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의 변경

문제점

- 지원사업의 시행승인(중요한 사업의 변경승인 포함) 시에는 이를 고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가장 근본이 되는 중요 사항인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서 제외되어 있어
- 이해관계인 입장에서는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정보의 변경사항 등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공개성이 확보되지 못함

개선의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를 추가하여 이해관계인의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공개성 확보
- 2. 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
- 2.~5. ⇒ 3.~6.으로 변경



【예시】

개정안	개선 의견
제13조(지원사업의 절차 등) ① (생략)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원사업의 명칭 및 목적 ③ <u>신설</u> 2. 예상 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3.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4. 사업장소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의 변경 ③~⑤ (생략)	제13조(지원사업의 절차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원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u>지원사업의 내용과 규모</u> 3. 예상 사업비의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4.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5. <u>사업장소</u> 6.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의 변경 ③~⑤ (개정안과 같음)

8

예측 가능성

❖ 사례 1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26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① 한국임업진흥원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품질 인증 신청을 받으면 품질인증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을 신청한 품목을 생산한 업체에서 그 시료(試料)를 직접 채취하여 검사한다. 이 경우 그 채취와 검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결정하면 별지 제35호서식의 품질인증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품질인증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품질인증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현 황

- 법 제21조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고, 이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 가능
- 한국임업진흥원장은 품질인증 신청을 받으면 품질인증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그 인증 여부를 결정



문제점

-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품질인증의 절차에 따르면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한국임업진흥원은 품질인증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는 의무 규정은 있으나 그 평가결과를 언제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지의 기한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평가기한이 미 규정되어 신청인은 자신의 처리 결과를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공무원 접촉 가능성 및 처리 결과를 빠르게 받아 보려는 경우에는 급행료 지급 등 부패 발생 우려

개선의견

- 품질인증의 결과 통지 기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토록 개선

【 예 시 】

제정안	개선의견
제26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① 한국임업진흥원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을 받으면 품질인증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u>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26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① 한국임업진흥원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 신청을 받으면 품질인증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u>○○일 이내에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이 경우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 ③ (제정안과 같음)

❖ 사례 2 :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19조(계약요소)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절감유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계약금액(확정부분 및 불확정부분 구분)
2. 3. (생략)
4. 목표이익(목표원가에 계약 시 적용된 계약업체의 이윤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정산방법 및 기준
6. 기타 필요한 사항

현 황

- 현재 예정가격 산정이 가능하고, 사업의 특성상 원가절감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계약의 경우 유인부확정계약으로 시행(현재 규정 제17조)하고 있으며, 그 세부 운영에 관하여는 방위사업청 지침(유인부계약제도 운영지침)으로 규정하여 운영
 - ※ 유인부확정계약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원가절감유인계약으로 변경
- 원가계산 가능 비목은 예정가격을 기준, 곤란 비목은 개산가격 및 분담비율 100% 등

문제점

- 계약서에 명기하는 사항을 적시하면서 ‘6.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계약상대자의 예측가능성 저하
 - 계약담당 직원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계약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불명확성 등 부패유발요인 상존

개선 의견

-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조문 추가
 - 예)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기타 필요한 사항 등



9

이해충돌 가능성

❖ 사례 1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① 위원회, 전문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전문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위원회, 전문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의결 안건(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신청인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회, 전문위원회, 소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사유로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현 황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 실시(「의료법」 제53조)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의료법」 제54조)
 - 위원은 보건의료 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
- 평가위원회는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여부, 신의료기술의 평가방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전문위원회의 검토결과,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 전문적인 안전 검토·심의를 위해 평가위원회 내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내과계/외과계/내·외과계 외/치과/한방) 설치
 - 또한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 시 전문위원회 대신 소위원회(10인 이내)를 구성하여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검토 가능

문제점

- 개정안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안전 심의를 위해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소위원회에 이해충돌방지장치를 설정하고 있으나
 - 심의안전의 이해당사자인 위원회 제척 및 기피제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원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를 회피하거나 이해관계 등으로 회피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촉하는 규정이 누락
- 따라서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를 자신에게 보다 유리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학연, 지연, 혈연 등을 통해 부패행위를 할 개연성 내재

개선 의견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전문위원회, 소위원회 포함)에 회피제도 마련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전문위원회, 소위원회 포함)에 해촉규정 신설



❖ 사례 2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6조(철도산업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4. 철도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현 황

- 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철도산업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번 개정안에 5개 분과위원회를 설치
 1. 철도정책조정분과위원회, 2. 철도안전분과위원회
 3. 철도건설분과위원회, 4. 철도운영분과위원회
 5. 도시철도분과위원회
- 위원 중 철도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위원(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또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명확화
 - ※ 기 운영중인 철도산업위원회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미설정

문제점

1. 위촉위원의 장기연임에 따른 특혜 등 부패발생 가능성
 - 위원의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특정위원의 장기 연임 등으로 인한 이해

관계자 불법 로비 및 유착 가능성 내재

※ ○○시 모 대학교수는 도시계획, 건축, 투자심사 등 ○○시 산하에 있는 자문위원으로 활동, 막강한 위원회에 4년 이상 연임한 위원이 60% 넘고, 10년 이상 위원도 15%에 달해(TBC-TV, 2006.2.12)

2.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미설정으로 위원회 운영 혼선 예상

- 기 운영 중인 철도산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미설정하고 있어 예측가능성 저해

※ 새로이 설치되는 철도정책조정 분과위원회 등 5개 분과위원회는 설정

3. 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과 이해관계에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 불공정하게 운영될 우려

- 기 운영 중인 철도산업위원회 및 신설되는 철도정책조정 분과위원회 등 5개 분과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조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가 불공정하게 운영될 가능성 내재

개선의견

1. 위촉위원의 장기연임 배제를 위한 연임 횟수 제한
2. 철도산업위원회의 보궐위원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규정

【 예 시 】

개정안	개선의견
제6조(철도산업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③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철도산업위원회의 구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u>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략)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개선 의견
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위원회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 심사에 직·간접적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을 배제하는 이해 충돌방지장치(예, 제척·기피·회피)를 법령에 규정

【 예 시 】

개정안	개선 의견
제11조의2 <신설>	제11조의2(철도산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위원회·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심사대상 사업과 관련된 해당 기관·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간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기관·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 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절

행정내용별 사례

- 
1. 인·허가 등 수익적 처분
 2. 취소·정지 등 불이익 처분
 3. 정부업무의 위임·위탁
 4. 행정위원회
 5. 재정지원

제2절은 자주 지적되는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행정내용별로 분류한 것으로, 문제점 도출을 위한 착안 포인트를 함께 수록하여 부패영향 평가 업무를 처음 접하는 신규 업무자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수록



1

인·허가 등 수익적 처분

❖ 사례 1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28조(연구시설 허가기준 및 준수사항) ① 법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시설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시험에 필요한 설비·기술능력·인력 및 자체관리 규정이 있을 것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환경위해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기술능력·인력 및 자체안전관리규정이 있을 것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현 황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시설(이하 “연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법 제22조제1항),
 - 연구시설 허가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법 제22조제7항).

문제점

- 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허가기준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 개정안 제28조제1항은 법 제22조제7항에서 위임한 연구시설의 허가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 연구시설의 허가기준으로 ‘설비·기술능력·인력’이 있을 것을 요구하면서, ‘설비·기술능력·인력’에 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시험에 필요한’(제1호) 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환경위해성을 방지할 수 있는’(제2호) 등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 조항은 ‘설비·기술능력·인력’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연구시설의 허가 시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 등 과도한 재량권 행사 우려



문제점 도출을 위한 착안 Point

- ① 인·허가 등 수익적 처분 관련 규정이 있는가?
- ② 있다면, 인·허가의 기준·절차 및 방법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개선의견

- 연구시설의 허가기준(설비·기술능력·인력)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정



❖ 사례 2 :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14조의2(격리 기간 동안의 다른 사람과의 접촉)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격리 기간 중 다른 사람과 접촉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접촉 허가 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예측가능성(3-2)

현 황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 조치 가능
 - 검역감염병환자는 격리 기간 동안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과 접촉 불가
- 검역법상 격리조치는 국민의 중요한 권리 침해가 수반되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되고, 접촉허가처분은 권리 제한의 해제와 관련됨

행정상 즉시강제

- ▶ 의미 :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 장애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해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 ▶ 종류 : 「경찰관직무집행법」(불심검문, 보호조치, 장구·무기사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강제격리, 강제건강진단, 교통차단), 「마약법」(강제수용), 「식품위생법」(물건의 폐기·압수) 등

- 개정안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려는 검역감염병환자의 접촉 허가 절차를 신설

문제점

- 개정안은 격리된 검역감염병환자의 접촉 허가 여부를 검역소장이 결정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허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화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 검역소장의 자의적인 판단과 재량에 의해 격리감염병환자의 신체의 자유 등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 또한, 검역감염병환자의 접촉 허가 관련 세부사항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검역감염병환자의 정보 접근이 차단되어 접촉 허가결정 여부에 대한 사전 예측이 곤란



문제점 도출을 위한 착안 Point

- ① 인·허가 등 수익적 처분 관련 규정이 있는가?
- ② 있다면, 인·허가의 기준·절차 및 방법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개선 의견

- 접촉 허가와 관련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하도록 의무화

【 예 시 】

개정안	개선 의견
제14조의2(격리 기간 동안의 다른 사람과의 접촉)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격리 기간 동안의 다른 사람과의 접촉)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되, 허가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개정안	개선의견
〈신설〉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별지 제○호의 서식에 따른 이의 신청서를 해당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취소·정지 등 불이익 처분

❖ 사례 1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57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57조제1항 관련)

가.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현 황

- 문화재매매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거래 장부 기록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 거래사실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장부를 파기·양도한 경우에는 2년간의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기준을 달리하고 있음



문제점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일을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로 하고 있으나 최초 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의 경우 기준일이 명확하지 않아, 법령을 위반한 문화재매매업자의 행정처분을 늦추기 위한 로비 소지가 있음



문제점 도출을 위한 착안 Point

- ① 특정기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불이익 처분이 있는가?
- ② 있다면, 위반 횟수 산정의 기준일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개선 의견

- 위반 횟수의 기준이 되는 기준일 명확화
 - 1차 위반 시 기준일은 ‘행정처분을 한 날’, 2차 이상 위반 시 기준일은 ‘동일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로 규정

【예시】

개정안	개선 의견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57조제1항 관련) 가.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별표 5] 행정처분기준(제57조제1항 관련) 가.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사례 2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가대상 조문

제7조(제조업 허가의 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조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임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변경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휴지(休止)한 경우

제15조(제조 수량의 허가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 수량의 허가 또는 제10조에 따른 증량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허가 수량을 줄일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을 한 수량을 줄일 수 있다.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현 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물질 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 허가를 받은 경우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 수량의 허가 또는 증량허가 및 파괴확인을 받은 경우 허가 취소 및 증량 및 확인 수량 감축을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문제점**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증량허가 및 파괴확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중대한 위법 사유에 해당되어 당연취소로 규정하여야 함에도,
 - 개정안은 임의적 취소로 하고 있어 법령 담당자 등에 의한 자의적 집행 가능
 - 취소대상 업체에 의한 로비 등 부패행위 발생 우려
- 다른 법령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록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적 취소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와 비교해 볼 때도 부적정

**문제점 도출을 위한 착안 Point**

- ① 허가·인가·등록 등에 대한 취소 규정이 있는가?
- ② 있다면,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와 같이 당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취소규정이 있는가?
- ③ 동 취소 규정에 처분권자의 재량이 반영될 여지가 있는가?

개선의견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당연취소 규정 마련

【 예 시 】

개정안	개선의견
제7조(제조업 허가의 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조업의 허가를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제7조(제조업 허가의 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조업의 허가를 취소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개정안	개선의견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임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변경하면 <u>그러하지 아니하다</u>. -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휴지(休止)한 경우 제15조(제조 수량의 허가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 수량의 허가 또는 제10조에 따른 증량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허가 수량을 줄일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을 한 수량을 줄일 수 있다.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임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변경하면 <u>그러하지 아니하며,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u>. -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휴지(休止)한 경우 제15조(제조 수량의 허가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 수량의 허가 또는 제10조에 따른 증량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허가 수량을 줄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을 한 수량을 줄여야 한다.



❖ 사례 3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별표 9]

행정처분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처분의 종류가 다른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으로 하고, 처분의 종류가 같고 기간만 다른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의 기간에 나머지 각 처분의 기간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다. (생략)

라. 같은 위반행위로 4차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4차 위반 시의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한다. 다만,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더 무겁게 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처분을 더 무겁게 하거나 가볍게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더 무겁게 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 1)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더 무겁게 하거나 가볍게 할 수 있다.
- 2) 영업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처분을 가볍게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으로 가볍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9호, 법 제43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법 제48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볍게 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생략)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현 황

- 시·도지사는 환경영향조사 대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주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처분(법 제17조제1항)
- 환경부장관은 샘플등의 증명표지 제조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법 제35조 제2항)
- 환경부장관은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처분 (법 제43조 제6항)
- 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증명표지가 없는 먹는샘물등을 판매하거나 수질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처분(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
 -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가중할 경우 정지기간은 6개월 초과할 수 없음

문제점

- 행정처분을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처분권자가 가중 또는 감경 사유를 자의적으로 정할 우려



- 행정처분의 가중을 피하기 위한 불법 로비 등 부패발생 소지
-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경우 동기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으나
 - 둘 이상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거나, 같은 위반행위로 5차 이상 위반할 경우 처분을 가중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가중이 중복될 가능성



문제점 도출을 위한 착안 Point

- ① 불이익 처분의 가중 또는 감경 규정이 있는가?
- ② 있다면, 가중 또는 감경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개선의견

-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예시)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경우 동기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는 규정 삭제

【 예 시 】

개정안	개선의견
[별표 9] 행정처분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라. (생략)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별표 9] 행정처분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 라. (생략)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개정안	개선의견
구분에 따라 그 처분을 더 무겁게 하거나 가볍게 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더 무겁게 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1)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더 무겁게 하거나 가볍게 할 수 있다. 2) 영업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처분을 가볍게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으로 가볍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9호, 법 제43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법 제48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볍게 할 수 없다. 〈신설〉 〈신설〉 〈신설〉 2. 개별기준 (생략)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볍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볍게 할 수 있고, 영업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처분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으로 가볍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9호, 법 제43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법 제48조제1항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볍게 할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제3자 또는 주변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0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 관련한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생략)



3

정부업무의 위임·위탁

❖ 사례 1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의 측정망 설치 및 상시 측정
2.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의 생략
3. (삭제)

②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③ (생략)

「소음·진동관리법」

제5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소음도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평가항목

-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2-2)

현 황

-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 ※ 제작차의 소음허용기준 인증 생략 등은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인의 교육업무는 환경보전협회에 위탁

문제점

-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사무)의 일부를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 이러한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등 수탁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 공공성을 해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성 확보 장치 미비
 - ※ 민간위탁 :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



문제점 도출을 위한 착안 Point

- ① 정부업무를 공직유관단체 또는 민간에 위임·위탁하는 규정이 있는가?
- ② 있다면, 위임·위탁의 법적근거, 요건,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③ 위임·위탁 받은 정부업무의 처리시 발생한 뇌물수수 등 범죄에 대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관리감독을 위한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는가?



개선의견

-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기관의 장 등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공무원 의제규정을 법률에 신설하여 공공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

【 예시 】

개정안	개선의견
제5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 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소음도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5조 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소음도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사례 3 :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4조(어촌특화시설의 관리·처분)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한국어촌어항협회”에게 위탁할 수 있다.

평가항목

-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2-2)

현 황

- 법 제24조에 따르면 어촌특화시설은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어촌특화시설관리자”라 한다)에게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경영의 위탁 가능
 - ※ 제12조(어촌특화사업 시행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특화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어촌·어항법」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어촌특화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특화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 및 보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등을 할 의무가 부여됨
- 대통령령 제13조는 어촌특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수립, 안전점검과



어촌특화시설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원상복구 등의 조치 의무 등 관리에 대한 내용만 규정

문제점

-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

- ※ 민간위탁 :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 ※ 「정부조직법」 제6조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 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단, 행정청의 권한은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권한의 위탁은 법률이 정한 권한의 분배를 대외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
- 어촌특화시설관리자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은 법률에 근거가 없이 위탁됨



문제점 도출을 위한 착안 Point

- ① 정부업무를 공직유관단체 또는 민간에 위임·위탁하는 규정이 있는가?
- ② 있다면, 위임·위탁의 법적근거, 요건,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③ 위임·위탁 받은 정부업무를 처리시 발생한 뇌물수수 등 범죄에 대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관리감독을 위한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는가?

개선의견

- 관련 조문 삭제 또는 위탁 근거를 법률에 마련토록 개선

【 예시 】

제정안	개선의견
제4조(어촌특화시설의 관리·처분) 어촌특화시설관리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한국어촌어항협회”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삭제)



❖ 사례 4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의 10제4항에 따라 법 제10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평가항목

-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2-2)

현 황

-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구조고도화를 통한 성장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법 제10조의7)
 -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등으로 마련되고,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과밀업종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지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등에 사용됨 (법 제10조의8, 제10조의9)
- 기금의 운용·관리 주체는 중소기업청장으로, 대통령령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법 제10조의10제4항)
 - ‘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육성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4에 근거하여 설립한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로부터 출연 또는 보조받고,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처리

문제점

- 법 제10조의10제4항에서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진흥공단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진흥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개정안 제10조제1항)
 - 정부업무위탁시 대상사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상위법에서 그 일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상위법 내용을 그대로 중복하여 규정
- 개정안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진흥공단에 위탁하도록만 규정하고, 위탁 후 업무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의 규정 미비하여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에 대한 통제수단 결여



문제점 도출을 위한 착안 Point

- ① 정부업무를 공직유관단체 또는 민간에 위임·위탁하는 규정이 있는가?
- ② 있다면, 위임·위탁의 법적근거, 요건,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 ③ 위임·위탁 받은 정부업무의 처리시 발생한 뇌물수수 등 범죄에 대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관리감독을 위한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는가?

개선 의견

- 진흥공단에 위탁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체적으로 규정
- 진흥공단의 기금 운용·관리 사무에 대한 관리·감독규정 마련



【 예 시 】

개정안	개선 의견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법 제10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신설〉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의10제4항에 따라 법 제10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 2. 기금재산의 취득·운영·처분 등 3. 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위탁받은 기금의 운용 현황, 기금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등을 포함한 월별 세부기금운용실적을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수입 및 지출계산서 5. 그 밖에 결산보고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④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4

행정위원회

❖ 사례 1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촉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⑧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8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평가항목

- 이해충돌 가능성(3-3)

현 황

-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심의위원회와 주무관청 소속 심의위원회로 구분
 - ※ 주무관청 :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
- 심의위원회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민간투자대상사업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민간투자사업 수행의 중요 사항을 심의
 - ※ 심의위원회 심의사항(법 제5조)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사업시행자의 지정, 부대사업의 시행,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등

문제점

-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중앙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경우
 -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장치(제척·기피·회피)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간투자사업 심의의 공정성·중립성 저해 우려
 - 심의위원회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등 위원의 해촉 규정 미비
- 주무관청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경우
 -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무관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시행령 제4조제9항),
 -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 운영 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
 - ※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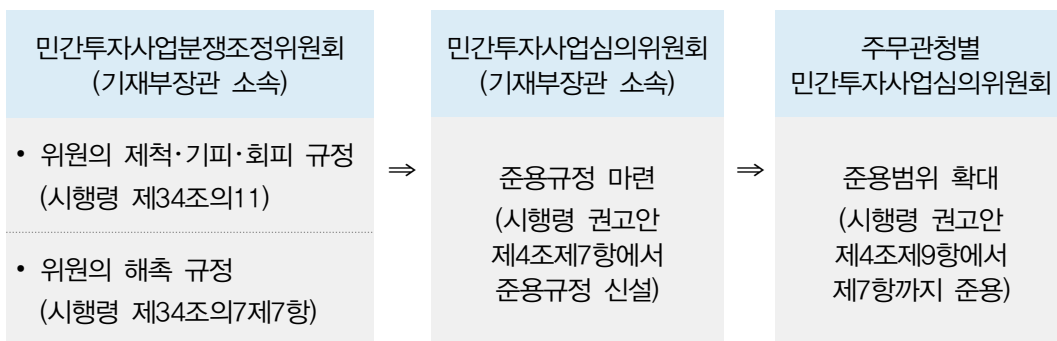


문제점 도출을 위한 착안 Point

- ① 심의·의결 사항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것이 있는가?
- ② 있다면, 구성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 ③ 제척, 기피, 회피 등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있다면,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해촉 규정은 있는가?

개선의견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준용규정) 마련
-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준용규정) 마련
- 동 규정이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에도 적용되도록 준용범위 확대





❖ 사례 4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6조(철도산업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 3. (생략)

4. 철도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④ (생략)

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평가항목

- 이해충돌 가능성(3-3)

현 황

- 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철도산업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번 개정안에 5개 분과위원회를 설치
 1. 철도정책조정분과위원회, 2. 철도안전분과위원회
 3. 철도건설분과위원회, 4. 철도운영분과위원회
 5. 도시철도분과위원회
- 위원중 철도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위원(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

문제점

- 위촉위원의 장기연임에 따른 특혜 등 부패발생 가능성
 - 위원회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특정위원의 장기 연임 등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불법 로비 및 유착 가능성 내재
 - ※ ○○시 모 대학교수는 도시계획, 건축, 투자심사 등 ○○시 산하에 있는 자문위원으로 활동, 막강한 위원회에 4년이상 연임한 위원이 60% 넘고, 10년 이상 위원도 15%에 달해(TBC-TV, 2006.2.12)



문제점 도출을 위한 착안 Point

- ① 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기규정은 있는가?
- ② 장기 연임에 따른 유착관계를 막기 위한 연임제한 규정이 있는가?

개선 의견

- 위촉위원의 장기연임 배제를 위한 연임 횟수 제한

【 예시 】

개정안	개선 의견
제6조(철도산업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③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철도산업위원회의 구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각 분과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각 분과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재정지원

❖ 사례 1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29조의2(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기준 등) ① 법 제63조의8 제1항에 따라 부지의 매입과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창출 효과
2. 인구유입 유발효과
3. 자원조달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4. 그 밖에 도시기능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평가항목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2-3)

현 황

- 행복도시 예정지역 입주 연구기관 등에 부지매입비 등 지원
 - 법률 개정('13.8.13)^{*}으로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을 지원토록 하고

- 구체적인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 행정중심복합도시법 제63조의9(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대학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신청기관의 고용창출 효과 등을 검토하여 지원 결정
 - 개정안은 행복도시 건설청장이 신청자(신청기관)의 고용창출 및 인구유입 유발 효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도시기능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등을 검토하여 부지 매입비 등의 지원 여부를 결정토록 함

문제점

- 입주기관 예산지원 기준이 주관적·추상적 임
 - 고용창출 효과, 인구유입 유발효과 등 예산지원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담당공무원 등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지원 결정이 가능하고,
 - 지원 신청기관의 지원 여부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하여 지원 신청기관의 로비 등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음
- ※ 골프접대 받은 후 12억 지원사업자 선정
 - 한국콘덴츠진흥원 직원이 중국 골프관광 접대를 받은 후 해당 업체를 12억원 규모의 콘텐츠제작지원 사업자로 선정 < 경제투데이, '11. 9. 28. >



문제점 도출을 위한 착안 Point

- ① 보조금, 출연금, 국·공유재산의 사용 등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② 있다면, 재정지원의 기준과 범위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개선의견

- 개정안 제29조의2제2항 각 호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하거나, 지원 대상 기관 결정 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



❖ 사례 2 :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평가대상 조문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생략)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 등 특기신장(特技伸張)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한 감면액이 5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생략)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게는 해당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한다.
- ③ ~ ⑥ (생략)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현 황

- 국립고등학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체육 등 특기신장 해당 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감액 또는 면제

문제점

- 국립고등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감액 또는 면제하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학교장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우려

- 또한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수업료 등을 면제하는데 있어 학교별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우려



문제점 도출을 위한 착안 Point

- ① 경제적 지원(부담의 감액·면제 포함)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가?
- ② 있다면, 지원 대상 선별기준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가?

개선의견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의 범위 명확화
 - 「초·중등교육법」이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수업료 등의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준용하거나,
 - ※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한 교육비 지원 대상(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 ▶ 해당 가구의 소득금액이 매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 보호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어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
 - ▶ 질병, 사고 또는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경제적으로 곤란하게 된 학생 등
 - 교육부장관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의 범위를 정하여 해당 규정 운영

【 예 시 】

개정안	개선의견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생략)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 등 특기신장(特技伸張)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한 감면액이 50 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생략) ② ~ ⑥ (생략)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에 따른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체육 등 특기신장(特技伸張)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한 감면액이 50 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개정안과 같음) ② ~ ⑥ (개정안과 같음)



❖ 사례 3 :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법률안

평가대상 조문

제31조(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자원순환사업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다.

1.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2. 관리대상자의 순환이용에 관한 사업
3.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순환이용 사업
4.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에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는 자원순환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자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원순환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평가항목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2-3)

현 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차관 알선 가능

자원순환사업의 종류

- ▶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 ▶ 관리대상자의 순환이용에 관한 사업
- ▶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순환이용 사업
- ▶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 ▶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자원순환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자금 등을 산업기반기술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이나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 가능

문제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업자에게 자금의 보조나 융자, 차관 알선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 구체적인 지원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하지 않아, 무분별한 지원 등 예산낭비 우려
 - 일부 사업자에게 자금 지원 편중 등 불투명하게 운영될 가능성

**문제점 도출을 위한 착안 Point**

- ① 보조금, 출연금, 국·공유재산의 사용 등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② 있다면, 재정지원의 기준과 범위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개선의견

- 자금의 지원방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규정



❖ 사례 4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가대상 조문

제8조2 (성과관리 및 평가업무 등에 대한 출연) 기획재정부장관은 동법 제8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재정업무, 동법 제38조와 제50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동법 제82조에 따른 기금평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부담금 평가, 보조금 관리에관한법 제15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평가,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2조에 따른 성과평가 등 재정사업 성과평가업무 및 타당성조사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평가항목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2-3)

현 황

-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사업 성과평가업무 및 타당성조사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성과평가업무 및 타당성조사의 종류

- 「국가재정법」 제8조 :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 「국가재정법」 제38조 : 예비타당성조사
- 「국가재정법」 제50조 : 타당성 재조사
- 「국가재정법」 제82조 : 기금운용의 평가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 : 부담금운용의 평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 : 복권기금사업의 평가

문제점

- 재정사업의 성과평가업무 및 타당성조사 등을 수행하는 전문적인 조사·연구 기관에 대하여 필요 경비 출연 등 예산이 지원됨에도
 - 구체적인 지정기준·절차 및 경비 출연 방법·절차 등을 규정하지 않아, 무분별한 지정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가능성
 - 자의적인 기관 지정 및 경비 출연 등으로 일부 연구·조사기관에 성과평가용역 등이 편중될 우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연구·조사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등의 제재규정이 없어,
 - 전문연구·조사기관 지정·운영 제도에 대한 사후통제 장치 미흡



문제점 도출을 위한 착안 Point

- ① 보조금, 출연금, 국·공유재산의 사용 등 재정지원 관련 규정이 있는가?
- ② 있다면, 재정지원의 기준과 범위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개선의견

- 전문조사·연구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 기준·절차 및 경비 출연 방법·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규정
- 부적절한 전문조사·연구기관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 성과평가업무 및 타당성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 구체적인 지정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정하도록 규정



【예시】

개정안	개선의견
제8조2 (성과관리 및 평가업무 등에 대한 출연) 기획재정부장관은 동법 제8조에 따른 성과 중심의 재정업무, 동법 제38조와 제50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동법 제82조에 따른 기금 평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부담금 평가, 보조금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평가,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2조에 따른 성과평가 등 재정사업 성과 평가업무 및 타당성조사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제8조의2 (성과평가업무 및 타당성조사 등에 대한 출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제38조와 제50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제82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평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의 평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에 따른 복권기금사업의 평가 등 재정사업 성과평가 업무 및 타당성조사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문조사·연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업무 및 타당성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조사·연구 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및 경비 출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참고의견 주요 사례



제3절은 제·개정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과정 중 발견된 법령상의 모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참고의견으로, 법령 입안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사례를 수록



❖ 사례 1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24조의2(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와 같다.

[별표 3]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4조의2 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생략)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 라. (생략)				
마. 체육지도자의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 제2항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바.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심판의 판정이 종목별 경기단체 심판위원회의 심사결과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고의적인 오심으로 확정된 경우	법 제12조 제2항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사.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격검정 시험위원이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 제12조 제2항	자격정지 4개월	자격정지 6개월	

현 황

-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받은 사람이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직무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1차 위반 시 2개월, 2차 위반 시 4개월, 3차 위반 시 6개월 자격정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본 개정안은 법 제12조 제2항을 근거로 ①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심판의 판정이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오심으로 확정된 경우, ②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격검정 시험위원이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4개월, 2차 위반 시 6개월 자격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제점

- 경기심판이 고의적 오심을 하거나 시험위원이 공정성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투명한 경기 운영 및 자격검정 제도 운영을 위해 적절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나,
- 경기 심판 업무 및 자격검정 시험위원 업무가 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체육지도자의 직무수행으로 보기 어려워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정의’ 규정에 따르면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 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 제2조(정의)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가. 스포츠지도사
- 나. 건강운동관리사
-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 시행규칙 개정안 제5조 ‘시험위원 자격’ 규정에 따르면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시험위원이 될 수 있음

※ 심판의 경우 업무 범위 및 자격 규정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시행규칙 개정안 제5조(시험위원의 자격 등) ①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영 제10조 제2항에 따른 필기시험 시험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체육 분야의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체육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 체육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그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하 생략)

- 또한 체육지도자 자격 소지 여부가 경기 심판 및 시험위원 자격의 필수요건이 아님에도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심판 및 시험위원에게만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

구 분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격검정 시험위원이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격검정 시험위원이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 재 정 도	위원 해촉 또는 다음 시험에서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음 + 체육지도자 자격 정지	위원 해촉 또는 다음 시험에서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음

참고의견

- 고의적 오심을 한 경기심판 및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규정 등을 위반한 자격검정 시험위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법률적 근거 마련
-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심판 및 시험위원이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에 대한 추가 제재방안 마련

❖ 사례 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23조의2(채불사업주 명단공개 제외대상) 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 채불사업주가 폐업, 도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채불사업주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일 전까지 채불임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4. 채불사업주가 채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채불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여 법 제43조의2제3항에 의한 임금 채불정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위원회가 채불사업주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 황

- '12. 2월 개정·공포된 「근로기준법」은 악의·상습 채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채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 도입

〈최근 5년간 채불금액 및 피해근로자 추이〉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채불액	8,400억원	9,500억원	1조3,400억원	1조1,600억원	1조900억원
피해근로자	19만명	25만명	30만명	27만6천명	27만8천명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채불사업주 명단공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채불사업주 사망 등과 같이 명단공개 of 실효성이 없어 채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제외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마련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상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문제점

- 개정(안) 제23조2 제2호는 ‘폐업’을 명단공개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습적·악의적 체불사업주는 폐업과 창업을 반복하는 등 위장폐업으로 임금 지급을 회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하고 위장폐업 후 체당금(사업체가 도산한 경우 퇴직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국가가 사업주 대신 하여 지급하는 제도)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려한 업체대표를 구속(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1.11.)
 - 단순히 체불사업주가 ‘폐업’만 하면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는 명단공개 제외대상으로 단순히 체불사업주가 폐업한 경우가 아닌 폐업으로 인하여 명단공개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 규정
 -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① (생략) 다만,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의견

- 체불사업주 폐업 등의 경우에는 법 제43조의2제3항에 의한 임금체불정보심의 위원회가 명단공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명단공개를 제외
- ※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 :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로 위원장(고용노동부차관) 1명을 포함한 11명 위원으로 구성

【예시】

개정안	참고의견
제23조의2(채불사업주 명단공개 제외대상) 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 채불사업주가 폐업, 도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채불사업주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일 전까지 채불임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4. 채불사업주가 채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채불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여 법 제43조의2제3항에 의한 임금채불정보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위원회가 채불사업주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의2(채불사업주 명단공개 제외대상) 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불사업주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2. 채불사업주가 폐업, 도산 또는 파산하여 법 제43조의2제3항에 의한 임금채불정보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가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채불사업주가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소명 기간 종료일 전까지 채불임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 4. 채불사업주가 채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채불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청산 계획 및 자금조달 방안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여 위원회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위원회가 채불사업주의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례 3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25조의4(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전문기업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자본금 변경
2. 등록 기술인력 변경
3. 설치에너지원 변경
4. 기업 명칭, 소재지, 주소, 대표자 변경

②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제2항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제25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현 황

-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 자본금 변경, 등록기술인력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게 변경신고 의무를 규정하였거나 변경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지는 아니함

문제점

- 법률에 근거 없이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게 변경신고 의무 부과
 - 국민에게 일정한 보고나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것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률에서 규정하거나 법률의 위임을 받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여야 하나,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 없이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게 변경신고 의무를 부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2조제3항에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신고기준 및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3년마다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변경신고 사항을 규정한 것은 아님
- 또한, 개정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은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전문으로 하려는 자(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이 되려는 자)’에게 자본금·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위임 근거 조항은 아님

참고의견

- 개정안 제25조의4(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전문기업의 변경신고)를 삭제하거나 법률에 위임근거를 규정한 후 개정안을 규정



❖ 사례 4 :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별표 1] 명예전역수당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6항에 따라 군인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조항은 군인 봉급표상 봉급액에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가 포함된 이후부터 시행한다.

현 황

-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으로서 현역정년의 잔여기간이 1년 이상 10년 이내인 자중 자진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 중장이하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에 대하여 명예전역수당을 지급(규정 제2조)
-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명예전역수당지급액 산정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 개정령 부칙 제5조제6항에 따라 군인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를 적용 운영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대통령령 제22617호, 2011.1.10.>

제5조(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략)

③ 공무원(검사는 제외한다)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 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로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봉급월액은 각각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국가공무원 명예 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봉급액[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를 말한다]의 68.54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1.6.〉

⑤ 감사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감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봉급표상 봉급액(해당 감사의 호봉이 13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호봉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1.3.15.〉

⑥ 군인의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에 따른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군인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을 설정 운영하고 있음

문제점

-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에서는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로 규정되어 있으나
- 본건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에서는 명예전역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을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로 개정하여 상호 괴리가 있음
 - ※ 공무원보수규정 : 봉급표상 봉급액의 81%
 -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개정: 봉급표상 봉급액의 68%

참고의견

- 본건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에서는
 - [별표 1] 및 부칙 개정사항은 삭제
 - 추후 군인 명예전역수당 월봉급액 산정기준 적용의 근거가 되는 안전행정부 소관 법령인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5조제6항 개정 이후에 그 개정내용에 따라 개정



※ 「공무원보수규정」 부칙의 “시행일 및 다른 법령의 개정” 안내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대통령령 제22617호,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으로 한다.

②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후단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으로 한다.

③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이 영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가. 위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위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7등급 이상 13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퍼센트(국립대학의 교원은 70퍼센트)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다. 위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검사의 월봉급액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④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 제6항에 따라 군인 봉급표상 봉급액의 81퍼센트를 적용한다.

⑤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육이수에 필요한 실비 등으로”를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로 한다.

❖ 사례 5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평가대상 조문

제17조의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 ② (생략)

③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현 황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채용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할 수 있고, 정부는 지정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활용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 평가대상 조문은 법 제18조제4항에서 위임받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문제점

-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재위임 금지에 해당
 - 개정안 제17조의2제3항은 법 제18조의2제4항에서 위임받은 사항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고시로 다시 위임하여 재위임 금지에 해당
 - ※ 헌법재판소 1996. 2. 29. 자94헌마213결정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이위임금지(履委任禁止)의 법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수권법의 내용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되고, 부령의 제정·개정 절차가 대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재위임에 의한 부령의 경우에도 위임에 의한 대통령령에 가해지는 헌법상의 제한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참고의견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서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에 대하여만 재위임

제3장

연행법령 평가 사례

제1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제2절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

제3절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제4절 민·관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강화

제5절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제6절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리 투명성 제고

청렴^韓
세상

청렴 韓 세상

Korea, a country of integrity

제3장은 2013년도 현행법령 평가 사례를 수록한 장으로, 사례 분석을 통하여 각 기관의 반부패·청렴업무 추진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과 동시에 권고대상 법령의 소관부처에 이행 협조를 당부하기 위함



제1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1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운영위원 구성방식 개선

❖ 평가대상 조문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 · ⑥ (생략)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 제58조·제59조·제6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위원의 정수·선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하 생략)

평가기준

- 특혜발생 가능성(1-3), 이해충돌 가능성(3-3)

문제점

- 학교측의 추천권 행사로 지역위원의 공정한 업무수행 저해
 - 학교행정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하는 지역위원 중 상당수가 교장·교감 등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됨으로써 학교장의 권한행사 통제 약화
 - ※ **참고1** '13.4.1. 기준, 전국 초·중·고교 516곳의 지역위원 1,002명 중 439명(43.8%)이 교장·교감 등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선출됨
【'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특히,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지역위원이 학교 측의 의사에 반대하기 어려워 안건 심의과정에서 지역위원의 대표성 및 심의의 공정성 저하 우려

〈 지역위원 추천에 대한 권익위 현장 의견수렴('13.4월) 〉

- ▶ 초등학교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장에게 대학입학 추천권 등이 있어 학부모가 교장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장과 인사권자인 교장의 통솔 하에 있는 교사가 지역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함으로써 학운위가 교장의 거수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 ▶ 교장·교감 등의 추천을 통해 선출된 지역위원은 친분관계로 인해 학교장의 의사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곤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 형식화 초래 (경기도 소재 교육지원청)

- 위원회의 연임제한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미비
 - 특정위원의 장기 활동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유착 가능성 내재 및 운영위원 활동 희망자의 피선거권 제한 등 문제 발생
 - ※ **참고2** '13.4.1. 기준, 전국 초·중·고교 516곳의 학교운영위원 5,541명 중 연임위원 수는 1,837명(33.2%) 【'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연임제한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현황〉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위원임기(년)	2	2	2	1	1	1	1	1	1	2	2	1	2	1	1 or 2	1 or 2	1
연임제한	○	○	○	×	×	×	×	×	○	○	○	×	×	○	○	○	×
이해충돌방지	×	×	○	○	×	×	○	×	○	×	×	×	×	×	×	×	×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학교급식 및 교복·체육복 선정 등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나, 이해충돌방지 규정 미비로 심의의 공정성 저해

개선방안

- 현행 교원위원의 지역위원 추천방식 개선
 - 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원위원이 지역위원을 추천하는 현행 선출방식 개선

방안예시

- ▶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위원 풀(pool)제를 운영하여 해당 학교에 복수추천 하는 시스템 도입 필요 ('13. 9월, 학교운영위원 및 전문가 간담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개정 〉

현 행	개선안(예시)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③ (생략)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⑥ (생략)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 (현행과 동일) ②·③ (현행과 동일)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관할청 장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 학교운영위원의 연임제한 및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위원의 연임횟수 제한 규정 신설 또는 정비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와 학연, 지연 등 이해관계로 공정한 심의가 곤란한 상황 사전 예방 및 투명한 업무수행 보장

〈 시·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조문 신설 〉

현 행	개선안(예시)
〈신설〉	제○○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신설〉	제○○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지위남용 행위 자격상실 의무화 및 자료확보 수단 마련

평가대상 조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 ~ ⑤ (생략)

⑥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조례 등에의 위임)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 제58조·제59조·제6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선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하 생략)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접근성과 공개성(3-1)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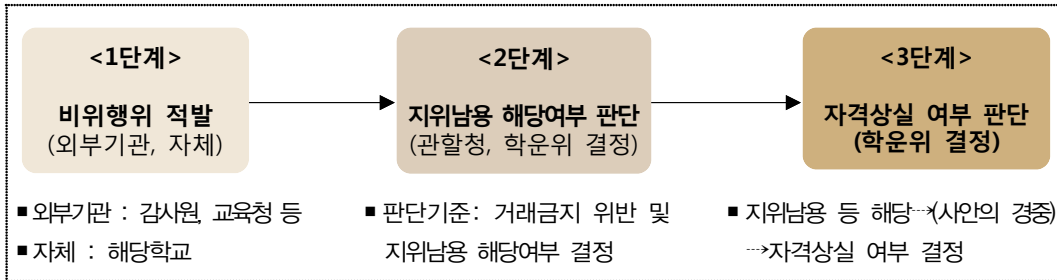
- 지위남용 운영위원 자격상실¹⁾ 관련 규정의 실효성 미약
 - 학교운영위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더라도 별도의 자격상실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합리 발생
 - ➔ 부패가 아닌 사유(소속 변경,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 불참 등)는

1) 교육비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학교운영위원의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자격상실' 규정 도입('11.3.18.)

당연 퇴직되는 것과 비교하여도 제재수준의 적정성 결여

- 특히, 지위남용 위원에 대한 자격상실 여부를 동일 소속 위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 저하

〈지위남용 운영위원 자격상실 절차〉



- ※ **참고3** 감사원이 처분 요구한 운영위원 469명 중 자격상실된 위원은 19명(4.1%)에 불과하고, 자진사퇴·임기만료로 처분 제외된 위원은 364명(77.6%) 특히, 자격상실 안건에 회부된 84건 중 65건(77.4%)이 직위유지 의결됨
【'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관련 사례

- ▶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를 진행한 학교운영위원장에 대해 전라북도 교육청이 '당연퇴직' 처분할 것을 해당 학교에 권고했으나 이같은 처분을 의결해야 할 학교운영위원장은 표적감사라며 자신의 당연퇴직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있어 논란 ('12. 11월, 노컷뉴스)
- ▶ ○○광역교육청은 지위를 남용한 7명의 비위행위 학교운영위원 중 5명에 대해 임기만료를 이유로 자격상실 등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음 ('13. 7월 권익위 실태조사)

● 지위남용 위원이 사전 자진사퇴·임기만료시 제재수단 불비

- 지위남용 위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거나 자진사퇴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문제발생시 자진사퇴하는 사례 발생
 - ※ 지위남용 위원에 대해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위원 469명 중 364명(77.6%)이 자진사퇴·임기만료로 처분대상에서 제외
- 지위남용 위원이 자진사퇴·임기만료로 퇴직 후, 해당학교 또는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재선출될 수 있는 문제 발생



● 심의 관련 자료확보 규정 미비

- 교육과정,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교복·체육복 선정, 방과후학교, 수학여행 등)은 엄격한 심의가 요구되나 학교 관계자의 비협조시 심의기능 저하
- ➔ 전체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류제출 요구권을 조례에 명문화한 곳은 14개 교육청

관련 사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수 200명 이상인 학교에 예결산소위원회 의무 설치, 심의의결과 직접 관련있는 서류및 자료 요청권 신설 등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담은 ‘인천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부결 처리해 논란 (뉴스1, '12. 6월)

개선방안

● 지위남용(거래금지 위반 포함) 행위 자격상실 의무화 【강행규정】

- 지위를 남용한 경우 학운위의 자격상실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연 자격상실 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 확보

● 지위남용 위원이 자진사퇴·임기만료시 제재방안 마련

- 운영위원이 재직 중 지위남용 행위를 하였으나 ‘자진사퇴’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에 일정기간 위원직 진입을 제한하거나 위원 선출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제재방안 강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63조 개정 〉

현 행	개선안(예시)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 ~ ⑤ (생략) ⑥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	개선안(예시)
〈신설〉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 (생략) ② 제58조·제59조·제60조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정수·선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하 생략) ③ ~ ⑤ (생략)	제59조의2(위원의 자격상실 등) ① 국·공립 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 ○○○은 제1항에 따른 자격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 즉시 자격상실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따른 통지를 받은 자격상실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58조·제59조·제59조의2·제60조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정수·선출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하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서류제출 요구권 마련

- 안전과 직접 관련있는 서류제출 요구 규정 신설 또는 정비

➡ 위원회는 의결(재적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의 찬성)로 학교장에게 요구

〈 시·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조문 신설 〉

현행	개선안(예시)
〈신설〉	제○○조(서류제출 요구 등)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전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학교운영위원 자격요건 강화 및 심의·자문절차 이행력 제고

평가대상 조문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법 제32조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공립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시정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학교발전 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생략)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문제점

- 자격상실된 지위남용 위원에 대한 선출자격 제한규정 불비
 - 비위 행위 등으로 자격상실된 자가 언제든지 계속 활동 가능
 - ➔ 계속활동 가능 사례 : 자격상실 후 당해 학교에서 다음임기에 재선출 또는 자녀의 학교 진학이나 전출로 소속 학교를 변경 등
 - 자격상실시 일정기간 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척기간이 없어 징벌 효과 미약

제척기간 입법례

「건축사법」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 3. (생략)

4. 건축사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감사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교수요원의 자격기준) ① (생략)

②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학교장의 심의·자문절차 미이행 등에 대한 통제장치 미흡

- 학운위 심의·자문 절차를 누락하거나 심의·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도 감사를 통한 사후적발과 처벌 위주의 소극적 통제에 그침

※ **참고4** 최근 3년간 전국 11,298개교에서 학교장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는 8건이며, 같은 사유로 감사처분을 받은 사례는 이보다 61배 많은 507건으로, 전체 515건의 시정명령·감사처분 사례 중 492건(95.5%)이 심의·자문절차 누락

【'13.7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학교장이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 또는 시행하지 않거나 심의·자문절차를 누락할 경우 학운위와 관할청에 대한 보고의무 부재

〈시정명령 사유 및 학교장의 사후보고 의무〉

시정명령 사유(시행령 61조·63조)	사후보고 의무 규정
•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	×
• 심의·의결결과 미시행	×
• 심의·자문 절차 누락	×

※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경우 : 사전보고 의무 있음(시행령 제60조 제1항)

개선방안

● 위원의 결격사유에 자격상실 이력 포함 및 결격기간 신설

- 지위남용 행위로 자격상실된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운영위원 선출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비위행위 위원의 진입 방지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2(결격사유) 개정 〉

현 행	개선안(예시)
제31조의2(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1조의3(결격사유 등) ① (현행 제31조의2와 같음) ② 학교운영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 행	개선안(예시)
당연히 퇴직한다.	당연 자격상실한다. ③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한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을 알선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직을 상실한 자는 그 직을 상실한 날로부터 ○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학교장의 사후보고 의무 명시 및 학운위에 시정명령 신청권 부여
 - 모든 시정명령 사유 발생시 학교장에게 관할청 및 학운위에 대한 사후보고 의무를 부과하여 심의·자문절차 이행력 제고
 - 학운위에 시정명령 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 서울시는 조례에 ‘시정명령 신청권’ 명문화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울특별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각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제61조 개정 〉

현 행	개선안(예시)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현 행	개선안(예시)
② ~ ③ (생략) 제61조(시정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1조(시정명령) ① (현행 제61조와 같음) ②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관할청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청의 장은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립학교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의 학교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심의·의결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현 행	개선안(예시)
〈신설〉 ⑤ (생략)	또는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관할청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청의 장은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현행 제63조제5항과 같음)

〈 시·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조문 신설 〉

현 행	개선안(예시)
〈신설〉	제○○조(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교육청 소속 각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청렴 韓 세상

Korea, a country of integrity



제2절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





1

보조사업 제한규정 위반 시 제재규정 신설 또는 제한규정 삭제

❖ 평가대상 조문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
2. 국고·광역자치단체 보조금에 따라 부담해야할 경비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문제점

- 보조사업 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미비
 -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지원 불가
 - 교육청·광역·기초지자체의 매칭을 통한 교육사업 추진, 타 지자체와의 지원액 비교 등의 사유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서도 법규를 위반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 2012년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41개 전 지자체에서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 : 70,805백만원(최고 5,392백만원, 최저 30백만원 지원)
 - ⇒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저해, 지자체와 교육기관(학교)간 갈등 및 법규위반 사례 발생

※ 【참고1】 교육환경 개선사업 매칭사업 추진 현황(2012년)

- ○○군의 경우 인건비 총당이 불가능한 지자체이나 연간 3,630백만원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매칭사업 부담금 1,145백만원, 군 자체사업 2,293백만원)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계	국비	교육청	광역	기초
	계	4,288	780	2,171	192	1,145
1	공공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1,000	300	500		200
2	○○고 강당 신축 지원	1,600	480	800		320
3	아토피친화학교 보조금	530		280		250
4	무료급식 지원	1,095		580	169	346
5	친환경쌀 지원	50		4	20	26
6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시범사업	13		7	3	3

* 광역지자체 매칭사업비 192백만원은 기초지자체에 보조금으로 지원·집행

※ 【참고2】 교육경비보조금 타 지자체와 비교 사례(언론보도 사례)

- ○○교육지원청 ‘시, 무상급식 등 교육투자 인색’ 서한문 물의 (경기일보 2013.4.8)
- 市 “사실왜곡 불신조장” 반발, 교장·운영위원장·지역정치인·단체장들에 발송 일파만파

개선방안

- 보조사업 제한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시 제재규정 신설 또는 실효성 없는 보조사업 제한규정 삭제

전문가 자문결과

- 지방교부세 감액 등의 벌칙규정의 제정이 필요
 - * 위반시 제재방안은 과태료, 재정적 제재(지방교부세 배분 등에 불이익)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을 위반한 처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청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므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불요하다는 의견 1명



2

보조금 교부 제한 기준인 인건비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

❖ 평가대상 조문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2. (생략)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문제점

- 보조금 교부 제한기준이 되는 인건비 개념의 모호
 -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를 금지하고 있으나,
 - ‘인건비’ 개념이 불명확하여, 제한 경계선에 있는 지자체에서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조금 교부

※ 【참고1】 “인건비” 개념의 다양성

- i) 지방예산지표 상 인건비: 보수(101-01)+기타직보수(101-02)+무기계약근로자 보수(101-03)
- ii) 예산편성목 상 인건비(101): 보수(101-01)+기타직보수(101-02)+무기계약근로자 보수(101-03)+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 iii) 총액인건비: 인건비(101)+직급보조비+성과상여금+연금부담금+건강보험금 - 기간제 근로자등보수(101-04)

*규모 : 총액인건비> 예산편성목 상 인건비> 지방예산지표 상 인건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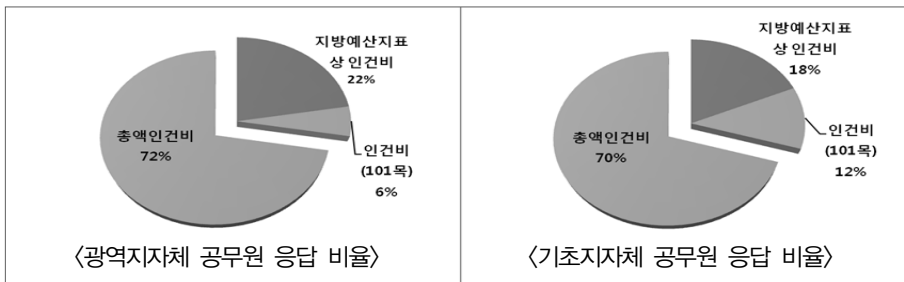
제2절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규를 자의적 해석하여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재정건전성 악화 초래

※ 【참고2】 “인건비” 개념 해석 관련 설문 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규정의 ‘인건비’ 해석과 관련하여
 - 전체 응답자 341명 중 241명(70.7%)은 ‘총액인건비’로 해석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 100명(29.3%)은 ‘지방예산지표 상 인건비’나 ‘예산편성목 상 인건비(101목)’로 해석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

구 분	지방예산지표 상 인건비	인건비(101목)	총액인건비	무응답
합계	65명	35명	241명	134명
광역지자체	16명	4명	52명	47명
기초지자체	49명	31명	189명	87명



(광역·기초 지자체 소속 공무원 설문조사결과 - 권익위 '13. 5월), (*무응답 제외 비율)

개선방안

- 인건비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교부 제한의 기준이 되는 인건비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지자체별 자의적 해석 방지

전문가 자문결과

-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는 불확정 법률개념으로서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객관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해석기관간의 견해차이가 발생하여 기관간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인건비 개념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



3

전출금 전출 시기·규모 등 전출방법 명문화

❖ 평가대상 조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생략)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생략)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생략)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평가기준

- 예측가능성(3-2)

문제점

- 현행규정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대상 세입항목과 항목별 전출 비율 등 전출금 산정기준에 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전출시기 및 규모 등 전출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 미비
 - 이로 인해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정당이나 교육이념을 달리하는 경우나, 지자체의 예산운영 상황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 시기와 규모를 임의적으로 조정·운영하고 있는 실정
 - ⇒ 전출금 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저하되어, 교육예산의 계획적인 집행 곤란 및 지원 시기·규모와 관련 지자체·교육청간의 갈등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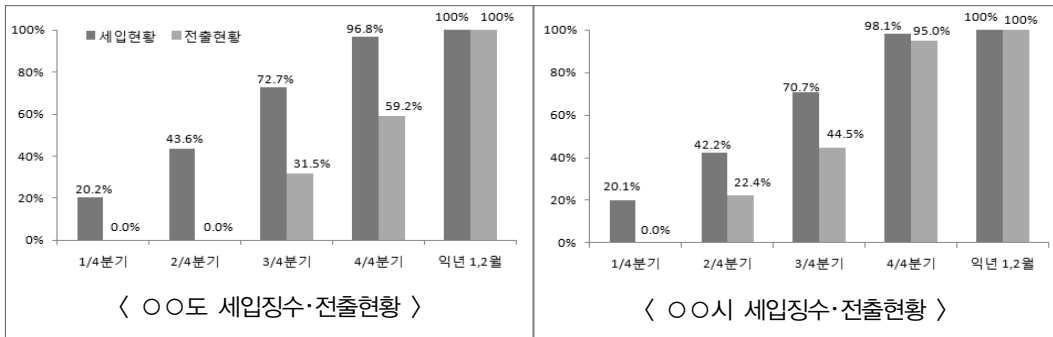
※ 【참고1】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방법 임의 운영사례(2012년)¹⁾

- ○○도의 경우 1~2분기에는 전출이 없다가 3~4분기에 59.2%, 익년에 40.8% 전출

1) 지방세 수납결과가 익월에 정리되므로 세입현황과 전출현황 사이에는 1개월의 시차가 있음

제2절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

－ ○○시의 경우 1분기에는 전출이 없고 4분기에 50.5% 전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실태조사 결과 - 권익위 '13. 5,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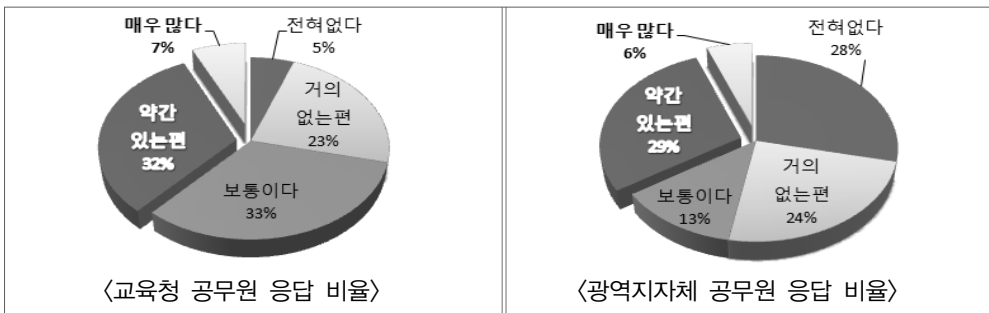
※ 【참고2】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관련 지자체·교육청 간 갈등 사례(언론보도 사례)

- － 서울시·市교육청 이번엔 전출금 신경전(서울경제 2011.3.31)
 - “재정건전성 고려해 지급” “법정 비율대로”
- － 충북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려 필요”, 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제정촉구(국민일보 2013.1.21)

※ 【참고3】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관련 지자체·교육청 간 갈등에 대한 설문결과

- － 지자체의 법정 전출금 전출방법(전출시기 및 시기별 전입규모 등)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143명 중 52명(36.4%)가 상호 이견이나 갈등이 있다고 응답

구 분	전혀없다	거의 없는편	보통이다	약간 있는편	매우 많다	무응답
교 육 청	4명	17명	24명	23명	5명	26명
광역지자체	20명	17명	9명	20명	4명	7명



(광역지자체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결과 - 권익위 '13. 5,7월), (*무응답 제외 비율)



개선방안

● 전출금 전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 지자체 세입현황을 감안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 시기 및 시기별 규모 등을 관련 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명문화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영의 예측가능성 제고

※ 【참고4】 전출방법 규정 조례 제정·운영 사례('13.9월 기준)

구분	서 울	경 기	부 산	인 천	광 주	전 남
근거	서울특별시 교육재정 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교육재정 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교육재정 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교육재정 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전출 방법	징수 세액의 90/10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도금고 입금액의 90/10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 세액의 80/10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 세액의 70/100 이상을 매 분기별	징수 세액의 90/10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 세액을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4

중복 지원 소지가 있는 세목에 대한 전출기준 명확화

❖ 평가대상 조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생략)

② 1. (생략)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평가기준

-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2-3)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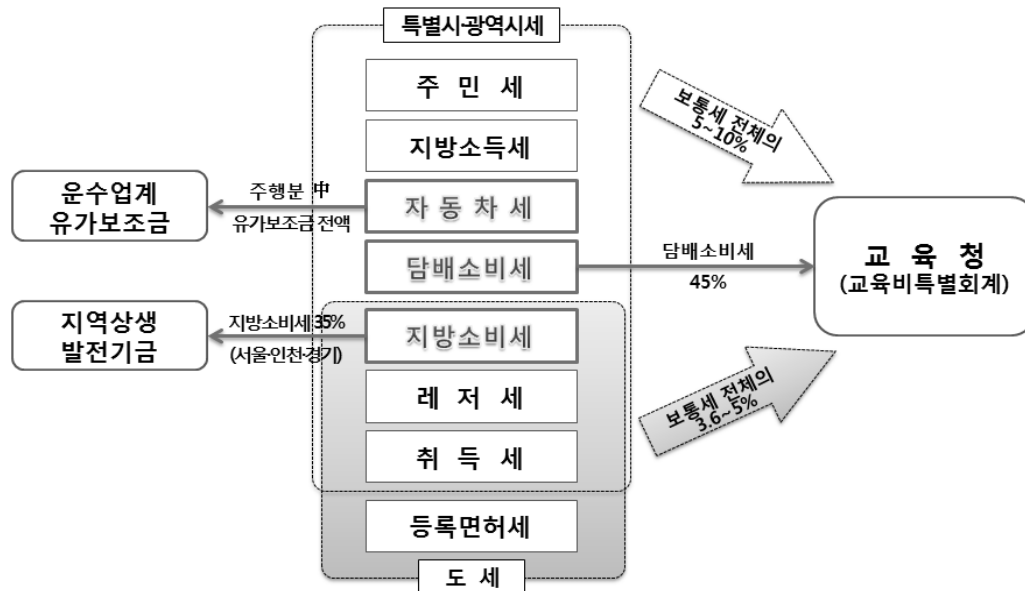
- 일부 지방세 전출세목 중 전출금 산정방법 모호
 - 동일 세목이 같은 법령 내 타 조문 또는 타 법령에 의거 이중으로 지원되는 경우 이에 대한 전출기준이 불명확하여 중복 지원분으로 계상될 우려가 있음
 - 현행법상 동일 세목의 동일법령 내 조문간 또는 타 법령간 중복된 세목

세목 및 비율	담배소비세 45%	자동차세 주행분 약 70%	지방소비세 35%
지원(전출)대상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유가보조금으로 지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해당 지자체	특별시·광역시	특별시·광역시	서울·인천·경기



⇒ 현행법상 전출 세목 및 요율만 규정,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어, 부처·지자체간 갈등 상존

【지방세 보통세 및 교육경비 전출 구조】



① 담배소비세(특별시·광역시의 경우)

관련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제11조제2항제3호
지원기준	담배소비세의 45%	보통세의 5~10%
지원대상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 담배소비세는 특별·광역시의 경우 시세 보통세

- 보통세²⁾ 총액의 5~10%인 추가 전출금 산정 시, 이미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한 담배소비세(45%)의 포함 여부 불명확

〈적용사례〉 담배소비세 세입이 2,000억원인 A광역시의 경우

2) 보통세 ① 특별시, 광역시 :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② 도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45% 전출액	보통세 5% 전출액	차 액
2,000억 × 45% = 900억	① 기 전출액을 포함한 경우 2,000억 × 5% = 100억	45억원
	② 기 전출액을 제외한 경우 (2,000억-900억) × 5% = 55억	

② 자동차세 주행분(특별시·광역시의 경우)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제2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
지원기준	자동차세 중 유가보조금 100%	보통세의 5~10%
지원대상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지원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 자동차세는 특별·광역시의 경우 시세 보통세

- 보통세 총액의 5~10%인 전출금 산정시 이미 지원된 자동차세 주행분 중 유가보조금 포함 여부 불명확

〈적용사례〉 자동차세 세입이 2,000억원(주행분 1000억)인 B광역시의 경우

유가보조금 지원금	보통세 5% 전출액	차 액
주행분 1,000억 중 유가보조금 700억 전액	① 유가보조금 지원액을 포함한 경우 2,000억 × 5% = 100억	35억원
	② 유가보조금 지원액을 제외한 경우 (2,000억-700억) × 5% = 65억	

※ 주행분중 유가보조금이 연도별로 약 70% 내외를 점유('08년 72%, '09년 74.3%, '10년 73.4%)

③ 지방소비세(서울·인천·경기의 경우)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
지원기준	지방소비세의 35%	보통세의 5~10%
지원대상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 지방소비세는 광역지자체의 보통세

- 보통세 총액의 5~10%인 전출금 산정시 타 법령에 의거 이미 지역상생발전기금³⁾으로 출연한 세액의 포함 여부 불명확

3)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설치. 발전기금은 지방채 인수·지방공기업 공사채 인수 및 지역발전을 위한 지자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 지원 용도로 사용



〈적용사례〉 지방소비세 세입이 2,000억원인 C광역시의 경우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보통세 5% 전출액	차 액
2,000억 × 35% = 700억	① 기금 출연금을 포함한 경우 2,000억 × 5% = 100억	35억원
	② 기금 출연금을 제외한 경우 (2,000억-700억) × 5% = 65억	

〈 종합 〉 ○○광역시 '12년 세입예산 대비 적용 사례

(단위:백만원)

지방세목	지방세액	전출금 산출액			비 고
		중복분 포함 (실 전출액)	중복분 제외	증 감	
계	551,678	95,613	85,340	△ 10,273	
담배소비세	151,175	75,588	72,186	△ 3,402	담배소비세 45%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자동차세	309,649	15,482	10,201	△ 5,281	
소유분	158,761	7,938	7,938	0	
주행분	150,888	7,544	2,263	△ 5,281	주행분의 약 70%인 유가 보조금 전액 운수업체지원
지방소비세	90,854	4,543	2,953	△ 1,590	지방소비세 35%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 중복분을 제외하여 전출액을 산정할 경우 103억원 차액 발생

개선방안

- 중복 지원 소지가 있는 세목에 대한 전출금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설정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내 조문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타 법령간 중복되고 있는 세목(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에 대한 전출금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전문가 자문결과, 유사입법례

[전문가 자문결과]

-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중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분, 지방소비세 중 지역상생 발전기금 출연금 재원은 이미 지출되었거나 지출될 예정이므로 전출금 산정기준인 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교육경비특별회계 재원을 보다 확충하고자 하는 입장이라면 중복하여 지출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 (단서조항 추가의견 1명)

[유사입법례]

- ※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자원) ① 교부세의 자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자원) ① (생략)
- ② 교부금의 자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5

경기도 제외 7개도 전출금 산정시 목적세 포함 여부 명확화

❖ 평가대상 조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생략)

② 1, 2 (생략)

3. -----,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평가기준

-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2-3)

문제점

- 경기도 제외 7개 도에서 전출금 산정 시 목적세 포함 여부 불명확
 - 특별시·광역시·경기도는 ‘목적세 제외’ 단서조항이 규정되어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2004.12.30.)시 경기도 이외의 도는 개정 전에 있던 단서규정이 삭제되어 해석상 문제 제기
 - 실제로는 경기도 이외의 도에서도 목적세를 제외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산정하여 전출하고 있는 실정

2004년 개정 전	2004년 개정 후	
시·도세 총액의 3.6% (단, 목적세 제외)	서울특별시	시세 10% (단, 목적세 제외)
	광역시·경기도	시·도세 5% (단, 목적세 제외)
	그 밖의 도	도세 3.6%

⇒ 경기도·광역시의 단서규정(목적세 제외)을 경기도를 제외한 도에도 적용되는 규정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기관간 갈등 발생

개선방안

- 전출금 산정시 목적세 포함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
 - 경기도를 제외한 7개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시 목적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여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 확보

전문가 자문결과 및 유사입법례

[전문가 자문결과]

- 목적세는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예정된 세금이라는 점에서,
- 목적세를 제외하여 총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 ※ 특별시·광역시·경기도의 경우에 명시적으로 제외하여 운영

[유사입법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재정 특례)

- 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전출금은 세종특별자치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2조(전출비용특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세총액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제2조(전출 비율)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교육경비 심의위원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및 외부위원 비율 확대

❖ 평가대상 조문 : 지자체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0명을 포함한 00명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 □□□,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 0명, △△△ 0명, ◎◎◎ 0명을 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0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평가기준

- 이해충돌가능성(3-3)

문제점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투명성 부족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보조대상사업 심의·선정, 우선순위 결정 등 공정성·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
 - 실태조사 결과, 일부 지자체의 경우 위원의 이해충돌방지규정도 없이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 저하
 - 또한, 지자체·교육청 공무원과 지방의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거나,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운영 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심의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음
- ※ 13개 지자체는 공무원·지방의원만으로 위원회 구성, 29개 지자체는 위원회 미구성
- ⇒ 지자체의 학교별 지원액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장치 필요

※ 【참고1】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 근거 : 지자체별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무상급식 관련 조례 등 활용)
- ▶ 구성 : 지자체 간부, 지방의회 의원, 교육청 교육공무원, 교육전문가, 교사, 학부모, 주민대표 등
- ▶ 주요 심의내용
 - ①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 선정 ②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 심의
 - ③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④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⑤ 대학입학사정 대상자 추천 ⑥ 기타 단체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 사항 등

※ 【참고2】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및 사례

구 분	계	공무원	지방의원	교육공무원	교육전문가	주민대표	교 사		학부모	
							대표	일반	대표	일반
인 원	2,236	768	376	316	290	220	40	79	117	30
(비율)	100%	34.3%	16.8%	14.1%	13.0%	9.8%	1.8%	3.5%	5.2%	1.3%
○○시	12	4	2	1	2	1	1		1	
○○구	13	3	3	1	3			1		2
○○구	9	4	3	2						
○○군	18	18								
○○도 ; 위원회 없음										

(지자체 제출자료 분석 - 권익위 '13.5월)

개선방안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및 외부 위원 비율 확대
 - 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중 외부위원(교육전문가, 지역주민, 학부모 및 교사대표 등)이 전체의 1/3이상일 수 있도록 위원구성 다변화 및 확대
- ※ 현재 심의위원회가 미구성된 지자체는 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구성



기타 참고의견

1. 교육경비보조금 합리적 지원규모(요율) 설정 검토

- 관련법령에 보조금 지원규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편차 및 지원규모 관련 기관간 갈등 발생
- ⇒ 교육지원경비의 형평성 제고 및 교육지원경비 관련 기관간 갈등방지를 위하여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규모(요율) 설정 방안 검토

2. 보조예산 포괄편성 금지 및 대상사업 조기 선정 검토

- 보조금 예산의 포괄 편성·운영 및 보조사업 확정시기의 불명확성으로 외부요인에 따라 지원액 편차 및 지자체·교육청간 중복지원 발생
-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및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교육기관 보조예산의 포괄편성 금지 및 대상사업 조기 선정 검토

3. 교육경비사업 예산 편성과목의 통합운영 방안 마련 검토

- 교육경비보조금 예산과목 설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지자체별 자의적인 편성·운영으로 교육경비 전체규모의 분석곤란 및 결산상 문제점 발생
- ⇒ 교육경비보조 사업에 대한 접근성·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하여 예산과목의 통합신설·운영 및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시 학교회계를 포함하는 방안 등 검토

참고의견

1. 교육경비보조금 합리적 지원규모(요율) 설정 검토

❖ 평가대상 조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⑥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평가기준

-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2-3)

문제점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모(요율) 미 규정
 - 관련법령에 보조금 지원규모(요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의 재정여건, 단체장의 교육철학 및 교육청과의 관계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 편차 발생
 - ※ 법령별 주요 내용
 - └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 근거(법률)
 - └ 보조사업 범위, 보조제한, 보조금 신청·집행(대통령령)
 -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는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등 외부지원금 유치 독려를 위하여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여,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 증가를 유도
 - ※ 재정여건상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는 지자체의 경우 교육부 및 교육청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초래
- ⇒ 지자체별로 공교육 분야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발생으로 지역 학생들의 교육의 형평성 논란 및 지자체 재정건전성 저해



※ 【참고1】 기초 지자체별 조례상 지원 요율 조사 결과

- 227개 기초 지자체 중 예산 범위 내 지원(62개), 지원규모 규정 없음(4개), 조례 미제정(16개) 등 지원 규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 82개
- 조례상 지원규모가 구체화되어 있는 145개 지자체도 지원요율이 최저 지방세의 0.5% 이상부터 최대 세외수입의 25%까지 다양

요율 \ 기준		지 방 세	지방세+세외수입	세외수입	일반회계
상한 규정	1.5% 이내	1			
	2%~4.9% 이내	29	8		2
	5% 이내	30	16		1
	6%~10% 이내	27	11		
	11%~20% 이내	9	1		
	25% 이내			1	
하한 규정	0.5%~1.0% 이상	2			1
	3% 이상	5			
	8% 이상	1			
계		104	36	1	4

(227개 기초 지자체 조례 전수조사 결과 - 권역위 '13. 9월)

※ 【참고2】 기초 지자체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모 조사 결과⁴⁾

- 편성규모('13년 기준) : 최저 1.5억원에서 최대 496.9억원까지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400억 이상	2	1	0	1	5
200억~400억 미만	1	1	9	9	8
100억~200억 미만	6	11	19	28	27
50억~100억 미만	24	28	47	47	45
30억~50억 미만	52	51	42	49	45
10억~30억 미만	91	89	76	65	63
10억 미만	48	46	34	28	34
미지원	3	0	0	0	0

(227개 기초 지자체 제출자료 분석 결과- 권역위 '13. 5월)

4) 지자체별 예산운영 과목·방식 상이하며,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를 통한 지원분 포함

※ 【참고3】 교육경비보조금 지역간 편차 발생 사례(언론보도 사례)

- 학생 1인당 교육경비 지원금 지자체별 최대 10배 이상(문화일보 2011.9.6)
 - 강원 33만원 - 광주 3만원 ... 서울 내 구별 편차도 커
- 충북도교육청 우수교육청 선정돼 370여억 교부금(경향신문 2013.7.11)
 - 기초학력 미달학생 감소, 지자체 교육투자 유치, 경상비 경비절감, 학교·학급 통합 지원 등 11개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

※ 【참고4】 외부지원금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관련 설문 결과

- 교육경비보조금 등을 유치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208명 중 70명(34%)이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

구 분	있 다	없 다	무응답
교육청	70명	138명	13명

(교육청 소속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결과- 권익위 '13. 7월)



(*무응답 제외 비율)

개선방안(참고의견)

● 합리적인 보조금 지원 규모(요율) 설정 검토

- 보조금의 경쟁적 유치를 위한 행정력 낭비와 기관간 갈등 방지 및 교육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규모(요율)를 설정하여 재정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 검토

※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근거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는 조례 제정

※ 【참고5】 보조금 지원 규모 설정 관련 설문결과

-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규모 설정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621명 중 466명(75%)이 상한선 또는 하한선 설정이 필요하다고 응답, 155명(25%)은 규정이 필요없다고 응답

구 분	상·하한선 모두 필요	상한선 필요 (하한선 불요)	하한선 필요 (상한선 불요)	필요없다	무응답
지자체	98명	178명	14명	110명	65명
교육청	60명	11명	99명	45명	6명

(광역·기초지자체 및 교육청·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결과, '13. 5, 7월 권익위)



참고의견

2. 보조예산 포괄편성 금지 및 대상사업 조기 선정 검토

❖ 평가대상 조문 :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 - 별표9

그룹	편성목	설정(통계목 포함)
300 경상이전		
	308 자치단체 등 이전	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비 2.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수산·농과생등의 지원비 3.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4. 도서관법 제29조에 의한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비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조(위원회의 구성 등) (생략)

제○○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평가기준

-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2-3), 접근성과 공개성(3-1)

문제점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의 포괄 편성·운영 및 보조사업 확정시기 불명확

제2절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

- 많은 지자체에서 예산편성 연도에는 포괄사업비로 편성 후, 다음연도에 교육경비심의회를 거쳐 사업을 확정하여 학교별로 지원
 - 지자체에서 학교별로 세부 지원사업 결정 시, 각종 외부요인에 따라 동일 지자체 내에 위치한 학교간에도 교육경비지원액에 많은 편차 발생
 - 심의위원회의 운영시기 등 세부규정이 없어, 지원대상 세부사업·규모 확정 시기가 불명확
 - 학교별 역점사업의 경우 교육청과 지자체에 중복하여 지원 요청하는 등 중복 지원된 교육경비의 반납 또는 사업계획 변경 발생
- ⇒ 구체적인 사업예산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나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중복지원으로 사업변경·반납 등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초래

※ 【참고1】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 포괄비 편성 사례(2013년)

지자체	포괄편성 사업비	비 고
○○시	78억41백만원	조례상 지원비율(지방세3%) 전체 포괄편성
○○시	40억	
○○군	17억59백만원	
○○군	13억원	
○○시	9억85백원	조례상 지원비율(지방세 결산액7%) 중 학교급식지원 금액(20억)을 제외한 금액 포괄편성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 - 권역위 '13.6)

※ 【참고2】 지자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운영시기 유형

운영시기	계	예산편성전	1~2월	3~5월	수시운영	기 타
지자체수	215	66	61	69	4	15

*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미 구성 29개 지자체(244개 지자체 제출자료 분석 결과 - 권역위 '13.5)



※ 【참고3】 국감 지적사항

- 46억 지원받은 학교 있는데 0원 학교 65곳('10년 ○○교육청 국감 지적사항)
-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 419개교 중 보조금을 받은 학교는 198개교, 이중 일부는 14번이나 지원

※ 【참고4】 사업비 반납 사례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지원액 반납현황			반납사유
	전입액	지출액	반납액	
체육관 신축공사(00초)	2,550	60	2,490	사업취소
급식시설설치(00중)	400	0	400	사업비 부족으로 미 실시
교내바닥포장공사(00정보과학고)	299	138	161	설계변경 및 신공법사용
학생 학예시청각교육 활동실 구축(00초)	98	5	93	사업취소
교실내부비품구입 (00중)	48	5	43	사업일부 완료 후 반납
냉난방기 교체(00중)	384	123	261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옥상방수공사(00초)	35	9	26	교육청 예산과 중복지원
합주단 조직 운영	25	0	25	사업취소로 미 집행

(지자체 및 교육청 제출자료 분석 결과 - 권익위, '13.7월)

※ 【참고5】 사업계획 변경 사례

(단위:백만원)

당초지원사업명	지원액	변경추진사업명	변경액	변경, 반납사유
운동장 개선사업(00중)	300	체육관 보수사업	120	체육관 노후화
방송시설 교체공사(00초)	50	전기설비 교체공사	20	전기설비 보완
연결통로공사(00초)	35	주차장포장공사	35	소요예산 부족
학교급식시설개선(00고)	64	기숙사 개.보수	64	시설개선사업 자부담

(지자체 및 교육청 제출자료 분석 결과 - 권익위, '13.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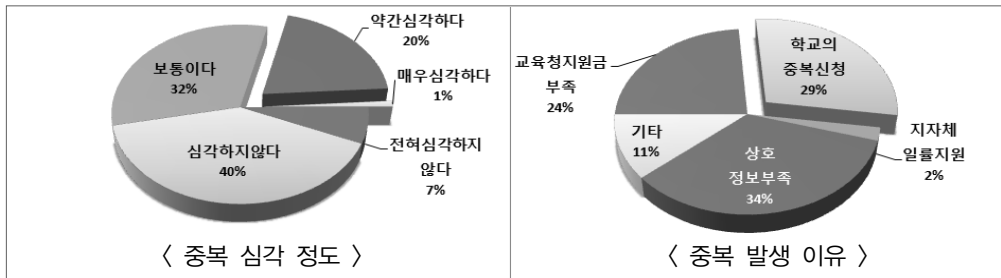
※ 【참고6】 교육경비 보조금 중복 관련 설문 결과

- 교육청과 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학교지원 중복 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 385명 중 82명 (21.3%)이 기관간 중복지원이 심각하다고 답변

구 분	전혀심각하지 않다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심각하다	매우심각하다	무응답
지자체	25명	155명	123명	78명	4명	80명

- 기관간 중복지원이 심각하다고 답변한 경우 중복투자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상호 정보부족 (34.1%), 학교의 중복신청(28.4%) 순으로 답변

구 분	교육청지원금 부족	학교의 중복신청	지자체 일률지원	상호 정보부족	기타, 무응답
지자체	21명	25명	2명	30명	10명



(광역·기초 지자체 소속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결과, '13. 5, 7월 권익위), (*무응답 제외 비율)

개선방안(참고의견)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의 포괄편성 금지, 대상사업 조기 선정 검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9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포괄편성금지를 명문화하는 방안 등 고려
 - 학교별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시기를 명문화하는 방안 등 검토

예) • 회의구성 : 정기회 연 0회 및 임시회로 구성

• 개최시기 :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이전 등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참고7】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편성 운영 수범사례(○○시)

사 업 명	산출근거	예산액
• 연합논술 아카데미 운영지원	290,000천원*1식	290,000
• 자율학습 지도수당 지원	50,000원*102명*65일	331,500
• 일반계 고교 학력증진 지원사업	25,000원*100개반*26일	65,000
• 특성화고 검정수수료 지원	36,000원*3,874명	139,464
• 특성화고 기능 영재반 운영 지원	56,000천원*1식	56,000
•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지원	43,700천원*40명	1,748,000
• 영어 특화 고등학교 운영	15,000천원*4개교	60,000
• 영어체험학습 참가자 지원	573,000천원*1식	573,000
• 영어 체험교실 구축 지원	25,000천원*4개교	100,000
• 방과후 교실 지원	187,050천원*1식	187,050
• 온종일 엄마품 돌봄교실 지원	12,500천원*6개교	75,000
• 농촌중학교 EBS방송 교재비 지원	35,926천원*1식	35,926
(이 하 생 략)		

※ 【참고8】 주민참여 예산사업 활용 수범 사례(○○구 학교 화장실 개선 공사)

사 업 명	예산액	사 업 명	예산액
• 청담초 화장실 개선공사	528,000	• 언주중 서관 화장실 보수공사	264,000
• 중동중 장애인 화장실 설치	9,000	• 중대부고 화변기 및 노후밸브 교체	23,000

참고의견

3. 교육경비사업 예산 편성과목의 통합운영 방안 마련 검토

❖ 평가대상 조문 :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편성목·통계목) - 별표9

그룹	편성목	설정(통계목 포함)
300 경상이전		
	308 자치단체 등 이전	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비 2. 국고보조금으로 지운되는 자영수산·농과생등의 지원비 3.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4. 도서관법 제29조에 의한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비
700 내부거래		
	703 교육비특별 회계전출금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 등에 따른 부담금 - 대학설립과 관련된 재원지원은 국립일 경우 국가가 시·도립일 경우 시도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군·자치구에 부담시킬 수 없음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특례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학교 용지매입비 부담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등 산출근거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경비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부담액 산출근거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한 후 예산에 반영해야 함

평가기준

- 접근성과 공개성(3-1), 예측가능성(3-2)



문제점

-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과목 설정기준의 불명확, 교육경비 지원액의 결산상 문제점 노출
 - 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사업 운영여건·방법 등에 따라 지자체별로 자의적으로 예산과목을 해석 운영
 - 동일 예산과목에 경상적 사업(300목)과 자본형성적 사업(400목)이 혼재되어 편성·운영
 - 지자체별로 교육경비 지원대상이 상이(단위학교, 교육청)하여, 단위학교 지원 분은 교육청 결산대상에서 제외되어 결산상 차액발생
- ⇒ 교육경비보조 사업에 대한 공개성·접근성 저하 및 사업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 곤란으로 교육사업의 예측가능성 저하

※ 【참고1】 광역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 과목별 예산편성 현황(본예산)

(단위:백만원)

연도별	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	조례상 전출금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민간위탁	기타
2009년	293,788	95,915	42,011	105,716	15,656	5,019	29,471
2010년	318,555	100,105	54,639	102,483	19,687	6,994	34,647
2011년	644,282	262,217	163,365	173,794	9,666	7,541	27,699
2012년	796,480	362,873	117,007	269,622	9,798	7,770	29,410
2013년	887,229	391,902	146,033	311,680	10,902	6,869	19,843

* 단, 법정전출금 제외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 - 권익위, '13.8월)

※ 【참고2】 예산과목 자의적 편성·운영 사례

- 친환경 급식(무상급식) - 광역지자체

00도	00시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703-01)

- 우수농산물(쌀, 친환경 부식 등) 차액 지원

00시	00시	00시
재료비(206-01)	기타보상금(301-12)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8-06)

제2절 지방자치단체 교육이전경비 투명성 제고

- 우수학생 해외(어학체험)연수 지원 사업

00군	00군	00군	00군
민간인국외여비 (301-07)	출연금 (306-01)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8-06)	국외경상이전 (310-01)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 - 권익위, 13.6월)

※ 【참고3】 경상적 사업과 자본형성적 사업 혼재 편성 사례(○○시)

(단위:백만원)

경상이전(300그룹) 성격의 예산		자본지출(400그룹) 성격의 예산	
농산어촌 및洞지역 방과후 학교 지원	1,100	○○중 외 1개교 다목적실 개축	650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	435	○○여중 외 6 급식소개축 및 환경개선	1,954
행복○○ 미래인재육성 드림프로젝트	600	○○초 환경개선 사업	105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 - 권익위, '13.6월)

※ 【참고4】 교육이전경비 결산관련 통계자료

(단위:백만원)

지자체일반·특별회계 결산자료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자료		
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교육기관에 대한보조금	계	법정 이전수입	비법정 이전수입
10,341,200	8,097,687	2,243,513	8,522,273	7,834,973	687,300

(안전행정부 2011년도 결산자료)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조2,435억원중 4,246억원은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이전수입으로, 1조 8,189억원은 학교회계예산에 편성 운영되어 각종 통계작성시 제외

개선방안(참고의견)

- 교육경비보조사업 예산편성과목 통합·운영방안 마련 검토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교육이전 경비 관련 예산과목을 통합하여 신설(경상이전, 자본지출로 구분)·운영하는 방안 등 고려



방안 1) 경상이전(300)과 자본지출(400)로 구분하여 예산과목(편성목)을 신설하고, 각 편성목에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의적으로 해석·운영되고 있는 통계목을 포함·신설하여 통합 관리 방안 검토

방안 2)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308-06)을 경상보조금과 자본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예산과목(통계목)을 분리하고 교육경비 지원 관련 예산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 설명에 세부적으로 규정 방안 검토

-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시 학교회계를 포함하여 결산하는 방안 등 검토



제3절

지방의외 의사공개 활성화





1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규정 마련

❖ 평가대상 조문

○○의회 회의규칙

〈2013. 8월 현재, 평가 대상 조문 미제정〉

평가기준

- 접근성·공개성(3-1)

문제점

- 회의 공개 방식을 회의록 공개, 방청허가 등 전통적 방법 위주로 한정·운영함으로써 의사공개 효과 미흡

〈공개수단별 회의공개 현황〉

공개수단	회의록공개	방청허가	인터넷중계 범위	
			본회의만	모든회의
실시현황	100%	100%	24.5%	15.8%

- 지방의회와 주민 간 효율적 의사소통을 위하여, 모바일·인터넷 등을 활용한 새로운 의사중계 방식 요구

〈위원회 설문조사('13.7월) 결과〉

- 회의록, 방청 등을 통한 공개방식의 효과성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53.5%(1,921명)가 미흡하다고 응답
- 지방의회 회의의 인터넷 중계 필요성에 대하여 85.7%(3,089명)가 필요하다고 응답

- 지방의회 회의규칙은 적극적 의사공개 수단으로서 인터넷 의사중계 관련사항을 규정하지 않음

〈의사공개 관련 회의규칙 규정 현황〉

공개방법	회의규칙(표준안)	규정내용 및 공개현황
회 의 록	제53조(회의록 공개)	원칙공개, 비밀유지 등 필요시 비공개
방 청	제83조(방청의 허가)	원칙금지, 방청권 소지 등 예외적 허가
녹음·녹화 등	제88조(녹음·녹화 등)	원칙금지, 의회 등록기자 등 제한적 허용
자체 방송	근거규정 없음	채널확보 등 어려움, 자체방송 없음
인 터 넷	근거규정 없음	일부 지방의회 자발적 중계 실시

- 중계대상 회의의 범위 등 중계 기준이 의회별로 자의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전체적인 공개수준의 의회별 격차 심화
(모든 회의 중계 의회 15.8%, 모든 회의 미중계 의회 52.2%)
- 기존 공개방식 외에 추가로 인터넷 중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의 오해와 불신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 필요(부패유발요인의 사전차단 기능 강화)

개선방안

-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각 지방의회별 「회의규칙」에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 규정 신설, 기존 회의록·방청 위주에서 탈피 인터넷을 통한 의사공개 방안 마련
 - 광역의회는 위원회 개선권고 후 6개월 이내에 회의규칙 반영·시행
(기 시행중인 경상남도 의회는 제외, 16개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근거규정 신설 및 정비 권고)
 - 기초의회의 경우 의원 수, 상임위 설치 현황, 재정자립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시행대상과 시행시기 별도 검토



〈광역·기초의회 제반여건 비교('12년말 기준)〉

구분	의원정수 (평균)	의원 수 10인 이하 의회 수	상임위미설치 의회 수	재정자립도 (평균)	의원1인당 경비(만원)	의원1인당 인구수(평균)
광역	52명	—	—	시 : 69.1% 도 : 34.8%	개인 : 5,346 운영 : 6,100	59,568명
기초	12.7명	109개 (48%)	63개 (27.8%)	시 : 37.1% 군 : 16.4% 자치구 : 36%	개인 : 3,479 운영 : 4,800	17,467명

(자료 : 행정안전부 「후반기 지방의회 현황」,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규정예시】 ○○의회 회의규칙

현 행	개정(안)
〈신설〉	제○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 방송하여야 한다.

2

인터넷 의사중계의 범위 확대

❖ 평가대상 조문

○○의회 회의규칙

〈2013. 8월 현재, 평가 대상 조문 미제정〉

평가기준

- 접근성·공개성(3-1)

문제점

-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전에 각 소관 상임위 또는 특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실질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 그러나, 인터넷 의사중계가 본회의 위주로 이루어짐에 따라, 상임위, 특위 회의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가 제한
(상임위 중계 의회 18.5%, 특위 중계 의회 20.7%)
 - ※ 위원회 설문조사('13.7월) 결과, 지방의회 회의의 공개정도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67.1%(2,433명)가 '보통이하'로 응답
- 따라서, 지방의회가 '폐쇄적 회의운영'이라는 비판을 극복하고 의사운영의 공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임위·특위에 대한 의사중계 확대 필요



〈상임위·특위 비공개 관련 부적정 보도사례〉

- 소관 상임위 업무와 관련하여 “○○시 의원 11명이 공사 참여 업체로부터 3백만~1천만원을 수수”(연합뉴스, '13.4.15.)
- A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씨, 택시요금을 심의·의결하는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택시조합으로부터 1천만원을 금품을 받고 택시요금 인상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B시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씨, 시내 야간 경관조명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나(법률신문, 2013.4.16.)

개선방안

● 인터넷 의사중계 범위 확대

- 현재 본회의 위주로 운영되는 의사중계 범위를 상임위, 특위까지 전면 확대 시행
-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 외에 공청회, 청문회, 행정사무 조사·감사 등 중요 사안을 의사중계 대상에 포함하도록 회의규칙에 명시

【규정예시】 ○○의회 회의규칙

현 행	개정(안)
〈신설〉	제○조(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청문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③ 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연설, 예산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시정연설, 공청회, 청문회, 중요안건의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절

민·관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 전달체계 강화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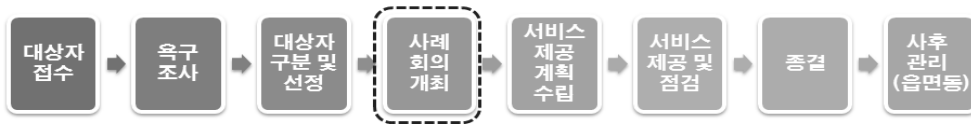
대상자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한 민·관의 사례관리 협력 강화

❖ 평가대상 조문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통합사례관리사업 〉

IV 사례회의 개최



1. 개 념

- 사례관리 가구*로 결정된 대상가구에 대해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시(욕구조사를 기초로 하되, 필요시 자산조사 결과도 활용)

* 서비스연계 가구로 결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사례회의(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생략

- 그 밖에 사례관리가 진행된 이후 대상 가구의 욕구 변화 및 문제해결 정도, 서비스 제공 점검 검토, 주 사례 관리자의 개입방법, 사례관리 종결 등을 협의 하기 위하여 수시 개최

참고 : 담당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

-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해결을 위한 주요 강점은 무엇인가?
- 사례회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무엇인가?
-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서비스제공 관련 내용은 무엇인가?
- 기존의 지역내 공공-민간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2. 수행 주체 : 통합사례관리조정자 + 사례관리자 전원

3. 시 기 : 사례관리 가구 결정 후 10일 내 서비스제공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회의 개최(그 밖에 대상자 선정 등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

4. 수행 방안

- 사례회의 참석 범위 : 대상가구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통합사례관리조정자와 팀원(사례관리자)은 전원 참석 원칙
 - 읍·면·동 담당공무원 : 의뢰가구의 경우
 - 자활관련 사업팀(직업상담사 등) : 자활대상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 그 밖에 대상가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보건소(방문건강관리사업팀 등), 공공·민간의 유관기관 등의 참여 고려
 - 전문가의 슈퍼비전¹⁾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참여 요청
- 정보공유 범위
 - 사례회의에 외부 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조정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범위를 정하여 대상자 정보공유를 결정
 - * 단, 대상자가 공유하기를 꺼려하는 민감한 사항은 공유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

5. 서식 활용 및 시스템 등록 (이하 생략)

평가기준

- 접근성과 공개성(3-1)

문제점

- 사례관리 서비스의 중복 및 조정 미흡
 -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와 민간 복지기관의 사례관리 대상자가 중복되고

1)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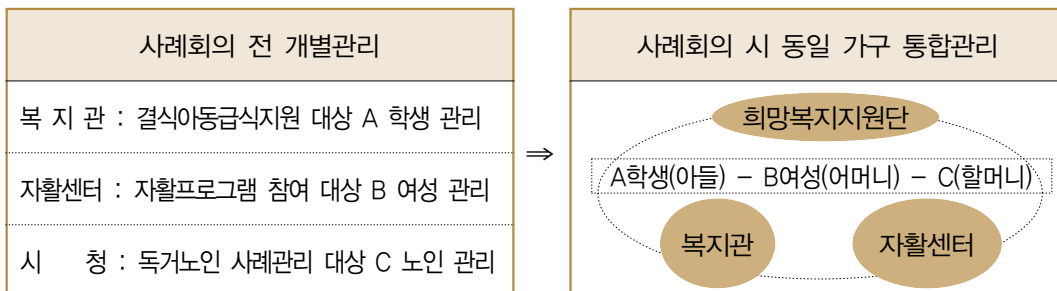
기능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복지자원 누수

- ※ 시·군·구 개최 사례회의 과정에서 다른 기관이 동일 대상자에 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8.3%, 사례회의를 통해 회의참석 기관 간 서비스 조정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45.8% ('13.6월 권익위 전국 복지관 설문조사 결과)

〈 사례관리 현황에 대한 권익위 현장 의견수렴('13.6월) 〉

- ▶ “시·군·구와 기존 기관에서의 사례중복으로 인해 사례관리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현재 시·군·구에서는 중복관리에 대한 개념 및 확인 절차를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음. 서비스를 의뢰할 경우 본 기관의 대상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부산광역시 소재 복지관)
- ▶ “공적부조를 받고 있는 이용자에 대하여 공공기관과의 사례회의를 통하여 효과적인 사례 관리 운영이 필요함. 민간이 참여하는 사례회의의 실시를 활성화하여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원 연계가 절실히 필요함.”(서울시 소재 복지관)

〈 동일가구 개별 사례관리 관련 권익위 실태조사('13.6월) 〉



● 대상자에 대한 정보취득 제약으로 민간의 사례관리 서비스 품질 저하

- 민간 복지기관의 사례관리 수행 시 지자체에 대상자의 복지수급 정보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걱정만 서비스 제공 곤란
- ※ 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시 대상자에 대한 복지수급 관련 정보를 취득·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5.7%, 시·군·구청에 복지수급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경우 정보 취득이 잘 되고 있다고 보지 않은 응답이 62.7% ('13.6월 권익위 전국 복지관 설문조사 결과)

정보취득 관련 권익위 현장 의견수렴('13.6월)

- ▶ “원활한 사례관리를 위해 대상자의 복지수급 관련 정보제공이 반드시 필요함. 현장에서는 복지 수급 정보확인이 불가능하여 대상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시·군·구에서 정보를 공유하면 좋겠음.”(서울시 소재 복지관)
- ▶ “지자체와는 달리 일반 사회복지기관은 대상자와의 상담 내용만을 토대로 조사하다보니 사실과는 큰 차이가 있게 되고, 사회복지기관이 지자체에 정보를 요구할 때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경상북도 소재 복지관)

개선방안

- 민·관 사례회의 정례화 및 중복 대상자 조정
 - 민간의 사례회의 참여를 정기적으로 보장하고, 사례회의를 통해 민·관이 중복하여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규정 마련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보건복지부 지침) 개정

- ❖ (신설) 민관 합동 사례회의 정례화
 - 지역 내 사회복지관 등 민간 사회복지기관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사례회의를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례관리분과를 통한 정례 사례회의 개최 가능)
 - 민관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대상자 정보 공유
 - 중복되는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합동으로 주 사례관리 기관 및 서비스 조정을 논의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방안 협의 및 결정
 - 민관 합동 사례회의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정보 공유

-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대상자 정보열람 요청 근거 마련
 - 대상자 보호 및 민·관 간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 기관이 복지수급 정보 열람을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민·관의 사례관리 칸막이 제거



〈 사회복지사업법 조문 신설 〉

현 행	개정(안)
〈신설〉	제3장 사회복지시설 제○조(보호대상자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요청) ①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위기가정 등 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33조의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사회복지시설 부정행위에 대한 합리적 제재

❖ 평가대상 조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2. 개별기준”에 의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하 “처분기준”이라 한다)은 최근 3년간(제2호 개별기준의 제9호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 일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나. 동시에 2종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다. 위반행위가 4종 이상 또는 시설거주자에 대한 학대·성폭력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라. 위반행위가 “2. 개별기준”에 의한 시설장 교체 또는 시설폐쇄 명령의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시설장 교체에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폐쇄에 갈음하여 시설장 교체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1. ~ 3.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의2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의2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다. 기타 회계 및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가 발견된 때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의2	개선명령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라.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40조 제1항 제4호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5. ~ 10.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51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도·감독을 실시한 후 제26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 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⑥ (생략)

평가기준

- 제재 규정의 적정성(1-2)

문제점

- 시설장의 보조금 횡령 등 부정행위에 대한 불합리한 제재

- 사회복지시설 내의 시설장에 의한 보조금 횡령 등 중대한 법규위반이 발생하더라도 1차 위반의 경우 제재처분 기준은 개선명령에 불과

감사결과 사후조치에 대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13.7월)

-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이 인건비 횡령을 목적으로 본인 또는 장녀의 지인 16명으로부터 차명 계좌 통장 18개를 제공받아 사용하면서 약 4년 6개월간 허위 종사자 16명의 인건비 4억 5천여만원을 횡령('13년, 감사원 ○○군 감사결과)
- ⇒ 상기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이행 실태조사 결과, 횡령 액수가 4억원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이라는 이유로 관련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개선명령 처분

● 보조금 반환명령의 적정성 미흡

-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 환수 사유 발생 시 반환 명령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
- 반면, 국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일반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유 발생시 반환을 명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시·군·구청장의 제재처분 공표 권한 부재

- 시·군·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개선명령·시설장교체 등 제재처분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시·도지사와 달리 처분 관련 정보의 공표 권한이 없어 공표 제도의 실효성 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51조(지도·감독 등)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도·감독을 실시한 후 제26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 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선방안

● 부정행위에 대한 합리적 제재규정 마련

- 보조금 횡령 등 중대한 부정행위시 1차 위반에도 시설장을 교체하도록 제재 기준 정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신설) 시설의 장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때	법 제40조 제1항제4호	시설장 교체	<u>시설폐쇄</u>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후원금을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법 제40조 제1항제3호의2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나. 회계장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법 제40조 제1항제3호의2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장 교체
다. ~ 라.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 보조금 반환 명령 강행규정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사유 발생 시 반환 명령 의무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개정 〉

현 행	개정(안)
제42조(보조금 등) ①·② (생략)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42조(보조금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명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 시·군·구청장에게 처분 공표 권한 부여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제재처분 시 시·군·구청장도 처분 관련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개정 〉

현 행	개정(안)
제51조(지도·감독 등) ① ~ ④ (생략)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도·감독을 실시한 후 제26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⑥ (생략)	제51조(지도·감독 등) ① ~ ④ (생략)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 ----- ----- -----. ⑥ (생략)



3

복지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수급자 등의 언어·신체적 폭력 등 악습 개선

문제점

- 현장 종사자의 폭행피해 노출 등 신변 불안으로 복지서비스 기반 약화
 -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공무원 등이 폭행을 당하는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신변보호를 위한 제도적 수단 미비
 - ※ 대상자로부터 직접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95%, 민간 사회복지사의 6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12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 폭력 발생 이유는 ①서비스 탈락 불만, ②정신이상·알콜, ③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의 순으로 나타남('12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담당자 피해 사례

- ▶ 자활센터 복지프로그램 신청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담당자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12년 4월, 대구광역시 ○○구)
- ▶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에서 탈락되었다는 이유로 담당자에게 가스총 5발 발사('10년 6월, 제주도 ○○시)
- ▶ 사회복지급여가 줄었다는 이유로 담당자에게 돌을 던져 상해('09년 2월, 제주도 ○○읍)
- ▶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급된 생계비에 불만, 담당자에게 화분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06년 2월, 부산광역시 ○○구)

개선방안

-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신변보호 규정 등 참고·활용
 - ※ 향후 민간에 의해 유발되는 공무원 폭행 등은 부패악습으로 규정, 별도의 대책 강구 예정

〈 사회복지사업법 조문 신설 〉

현 행	개정(안)
〈신설〉	제○조(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신변보호) 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대상자의 음주 등으로 인하여 상담, 지도 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거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절을 이유로 대상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청렴 韓 세상

Korea, a country of integrity



제5절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1

임상연구비의 예산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운영

평가대상 조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칙」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①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해당 국립정신병원장·국립소록도병원장·국립결핵병원장·국립의료원장 또는 국립재활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 되는 경우에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한다.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칙」

제5조(연구비 지급 대상자 결정) 경찰병원장은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계획서를 승인하고 그에 따라 연구비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 지침」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① (생략)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을 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할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평가기준

- 재정지원 기준의 명확성(2-3),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문제점

- 임상연구 성과와 관계없이 동일한 연구비 지급
 - 임상연구비 지원 대상자 결정 기준이 모호하고 세부 지급 기준이 부재하여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연구자 모두에게 동일한 연구비가 지급되고 있어 임상연구비가 정액화된 수당처럼 변질

제5절 국립병원 임상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 ※ 권익위 실태조사('13.5월)
 - ○○기관은 임상연구계획서를 제출한 모든 의사에게 연구과제의 심사 절차도 없이 매월 76만원씩 지급
 - 국립○○병원은 2012년 임상연구 과제 8건(2인 공동연구)에 대해 연구 주제가 모두 다름에도 연구과제별로 14,428천원의 동일한 임상연구비 지급
 -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12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08~'12년 기간 동안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의사 모두를 임상연구비 지급대상자로 결정

- 임상연구비 구성의 인건비 편중 현상 심각
 - 임상연구비의 90% 이상이 인건비로 구성되고 실제 연구에 필요한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은 소규모 금액만 계상되어 임상연구비의 연구개발 목적에 의문
 - ※ '12년 한국○○기관의 연구용역 중 40,000천원 미만의 참여연구자 2인 이하의 인건비 구성 비율은 연구과제별로 10~70% 수준¹⁾(13.5월 권익위 조사)

〈기관별 임상연구비 중 인건비 구성 비율('08~'12년)〉

(단위 : 천원)

병 원	임상연구비(A)	인건비(B)	인건비 비율(B/A)
국립○○병원	885,492	681,408	77%
국립○○병원	414,892	372,110	90%
국립○○병원	423,800	371,444	88%
국립○○병원	232,895	226,675	97%
국립○○병원	445,900	416,560	93%
국립○○병원	372,960	349,624	94%
국립○○병원	473,146	463,299	98%
국립○○병원	334,158	326,148	98%
국립○○병원	535,000	384,295	72%
○○병원	914,503	369,138	40%
○○병원	4,168,113	4,168,113	100%
○○병원	2,019,907	2,019,907	100%

(13.5월 권익위 실태조사)

1) 해당 연구는 연구기관의 신진 비정규직 과학자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개최하는 신진연구로 통상 타 연구 용역보다 인건비 비율이 높은 편임



개선방안

- 임상연구의 성과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기준 마련
 - 임상연구과제의 중요도, 연구의 필요성, 연구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도, 연구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 임상연구의 성과에 따라 연구비가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임상연구비 지원 기준 마련
 -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에 논문 게재 시 인센티브 방안 마련
 - ※ 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의 정기적 평가에 따라 등재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미등재 학술지로 구분

【규정 예시】임상연구 성과 등에 따라 연구비 차등 지원

제○조(연구비 지급 기준)

- ① 연구비는 연구계획서의 창의성 및 충실도,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개발 결과의 파급 효과 및 활용 가능성, 연구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미리 임상연구관리위원회(또는 평가단)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임상연구비의 인건비 구성의 적정성 확보
 - 임상연구비 중 과도하게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을 축소하고 재료비, 연구 활동비 등 연구에 필요한 비목 계상 확대
 -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기준 준용

임상연구비 지원 관련 면담 사항

- 면담대상 기관 :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립재활원, 국립춘천병원
- 면담일시
 - 보건복지부 : '13. 6. 17.(월), 15:00
 - 법 무 부 : '13. 3. 19.(화), 14:00
 - 국립재활원 : '13. 3. 13.(수), 14:00
 - 국립춘천병원 : '13. 4. 4.(목), 14:00
- 면담내용 - 임상연구비 지원 목적의 유래

- 임상연구비 지급 초기에는 의사의 수가 적어 실력 있는 의사를 채용하기 위한 인센티브 목적도 일부 있었음
- 현재는 민간병원과의 급여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역할도 일부 하고 있음

〈국립병원 의사와 민간병원 의사의 보수 비교〉

(2010년 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의사 보수 ²⁾	비율(A/B)
국립병원(A)	78,804	67.3%
민간병원(B)	117,174	100%

○ 면담결과 - 임상연구비의 개선 방향

- 국립병원 의사들 처우개선의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이나, 임상연구 목적으로 지급된 연구비가 연구의 성과 등과 무관하게 정액 수당처럼 운영되는 것 또한 개선 필요
- 따라서 본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는 예산의 목적에 따라 임상연구비가 적정 사용되도록 관련 법령 개선 방향 제시

2) 국립병원 의사 보수 : 2010년 연말정산자료(국립서울, 부곡, 마산, 소록도병원 의사 32명에 대한 연평균 임금)
 민간병원 의사 보수 : 2009년 민간병원 전문의 임금의 평균치에 임금상승율(0.7%)을 적용하여 환산한 수치(자료출처:중소병원의 경영현황과 정책과제, 좌용권 외, 2009년)

2

임상연구 과제 선정 및 평가절차의 공정성 미흡

평가대상 조문

「국립서울병원 임상연구협의회 규정」

제2조(임상연구협의회) ① 임상연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서울병원 임상연구협의회를 둔다.

② (생략)

③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정신과 임상진료과장이 된다.

「국립재활원 임상연구 규정」

제4조(임상연구관리위원회) ① 임상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립재활원 임상연구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원부장이 되고, 위원은 임상연구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2인 이상을 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국립춘천병원 임상연구협의회 규정」

제5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임상진료 각 과장 및 약제과장이 된다.

③ (생략)

「국립마산병원 임상연구 규정」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하며 각호의 자가 된다.

1. 흉부내과장, 흉부외과장, 임상연구소장

2. 그 외 병원장이 위촉한 자

③ (생략)

「국립목포병원 임상연구 규정」

제4조(임상연구관리위원회) ①임상연구 등 업무의 적정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해 국립목포병원 임상연구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흥부외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장급 의사 또는 공중보건 의사 중 위원장이 임명하는 2인
2. 약제과장
3. 의료·연구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2인

평가기준

- 이해충돌가능성(3-3)

문제점

- 임상연구관리위원회가 내부위원 중심으로 구성·운영
 - 임상연구 과제를 선정·평가하는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이 임상연구용역에 참여한 내부 의사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임상연구 과제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담보 곤란

〈기관별 내·외부위원 구성 규정 현황〉

위원 구성 규정	내부위원으로만 구성	외부위원 위촉		위원회 규정 없음
		외부위원 2인 포함	외부위원 수 미규정	
대상기관 수	3개	5개	3개	1개
대상기관 명	국립○○병원 국립○○병원 국립○○병원	국립○○병원 국립○○병원 국립○○병원 국립○○병원 ○○기관	국립○○병원 국립○○병원 ○○기관	○○기관



- 외부위원이 위촉된 위원회의 심의 기능 형식적
 - 외부위원이 위촉되어 운영되는 위원회도 임상연구과제 100% 심사 통과 및 연구결과 평가도 모두 동일하여 임상연구 과제 심의 기능 유명무실
 - ※ 위원회가 운영되는 11개 기관 중 10개 기관의 위원회가 '10~'12년 동안 제출된 연구 계획서 모두를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평가결과 미흡 등으로 연구비를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한 사례가 없음('13.5월 권익위 실태조사)
 - ※ 임상연구 과제의 100% 심사 통과 등 인건비 보전 성격으로 보이는 임상연구비의 나눠 먹기식 관행 개선 필요('10년 국정감사)
 - 규정상 외부위원을 위촉하여야 함에도 내부위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심의의 공정성 저해
 - ※ 외부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된 8개 기관 중 5개 기관은 규정과 달리 외부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내부위원만으로 위원회 구성·운영('13.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임상연구 과제 선정 등을 기관장 단독으로 결정
 - 임상연구 과제의 선정 및 평가 등을 전문가의 심의 없이 기관장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어 임상연구의 전문성 저해
 - ※ ○○기관은 제출된 연구계획서 100여건을 소속 기관장의 단독 검토 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상연구비 지급 대상으로 결정하고 매월 일정액 지급('13.5월 권익위 실태조사)

개선방안

-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 확대
 -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의 외부위원 구성 비율을 확대하여 임상연구 과제 심의의 공정성·객관성 담보
 - ※ 예시)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
- 임상연구관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확보
 - 병원 내 의사들의 임상연구 분야가 다양한 점을 고려, 여러 분야의 전문가(전문의)를 위촉하여 위원의 전문성 강화

【규정 예시】 임상연구 평가 절차의 공정성 강화

제○조(임상연구관리위원회구성 및 기능)

- ① 임상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 임상연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상연구계획서 및 임상연구 결과의 평가
 2. 임상연구 결과 등의 평가에 따른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
 3. 임상연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연구비의 반납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임상연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 ④ 위원회는 3개 분야 이상의 전문의를 포함한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임상연구 결과 공개 장치 미비

평가대상 조문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제11조(연구결과의 활용) 경찰병원장은 임상연구 결과를 관련 분야의 의사들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의료처우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

제9조(연구결과 활용) 법무부장관은 각 소속기관의 임상연구 결과를 관련분야 소속 의사들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수용자 의료처우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국립재활원 임상연구규정」

제16조(임상연구 결과 배포 및 공유) 위원장은 임상연구 결과를 관련기관에 배포한다.

「국립목포병원 임상연구규정」

제17조(임상연구 결과 배포 및 공유) 위원장은 임상연구 결과를 관련기관에 배포한다.

「국립나주병원 임상연구규정」

제16조(임상연구 결과 배포) 원장은 임상연구 결과를 관련기관에 배포한다.

「국립부곡병원 임상연구규정」

제14조(임상연구 결과 배포 및 공유) 위원장은 임상연구 결과를 관련기관에 배포한다.

평가기준

- 접근성과 공개성(3-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문제점

- 임상연구 결과 공개규정이 불명확하고 기관별로 상이
 - 임상연구 결과의 공개규정이 관련기관 배포, 관련분야 의사 공유 등으로 불명확하고, 기관별로 상이하여 공개수준이 낮아져 임상연구 성과물 공유에 한계

- ※ 임상연구를 실시하는 국립병원 등 12개의 기관 중 1개 기관만이 연구내용 전체를 홈페이지에 공개, 3개 기관은 연구목록만을 홈페이지에 공개, 8개 기관은 연구결과를 홈페이지에 미공개('13.5월, 권익위 조사)

〈기관별 공개규정의 공개방법, 공개장소 구분〉

공 개 규 정	관련기관 배포	관련기관 배포 및 홈페이지 공개	관련분야 의사 공유	공개규정 없음
대상기관 수	4개	4개	2개	2
대상기관 명	국립○○병원 국립○○병원 국립○○병원 국립○○병원	국립○○병원 국립○○병원 국립○○병원 ○○기관	○○기관 ○○기관	국립○○병원 국립○○병원

● 공개규정과 공개현황이 불일치

- 규정상 홈페이지에 연구결과를 공개해야 함에도 실제로는 비공개하여 임상 연구 운영의 투명성 저해
- ※ 국립○○병원과 국립○○병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 업로드 등을 통해 임상연구 결과를 공유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홈페이지에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13.5월 권익위 조사)

개선방안

- 임상연구 결과의 공개장소, 공개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전문가간의 임상 연구 성과 공유 강화
 - (공개장소) 해당기관 홈페이지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공개대상) 임상연구 최종보고서
 - ※ 국가R&D 사업 결과물을 해당 사이트에 등록하고 검색할 수 있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규정 예시】 임상연구 결과 공개 강화

제○조(연구결과의 공개) 기관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연구 결과물(최종보고서)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에 등재한다.



4

부당연구 등에 대한 제재조치 미약

평가대상 조문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 임상연구비 지급 규칙」

제6조(연구비의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등)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당해 연구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 지침」

제7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연구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그 연구비를 당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될 때에는 기관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세부 규정」

제19조(연구 중단) 국군의무사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 또는 반환 시킬 수 있다.

1. 연구비를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2. 연구자가 연구수행을 중도에 포기한 때
3. 연구진행이 중단되어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
4. 장기과제의 경우 중간평가 결과 연구중단으로 결정되는 때
5. 연구자들이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목의 연구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 가. 연구자 자신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 나. 연구자 자신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 다.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행위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문제점

- 부당연구 등 방지를 위한 제재수단 미비
 -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거나, 논문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준이 미비하여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기관별 부당연구에 대한 제재 규정〉

구 분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국군의무사령부
①목적 외 사용 연구비 환수	규정	규정	규정	규정
②연구결과물 미제출 연구비 환수	규정	규정	규정	미규정
③연구논문 표절 등 부정연구 연구비 환수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규정
①②③의 경우 연구참여 제한	미규정	미규정	③의 경우 미규정	②의 경우 미규정

- ※ ○○기관은 '08년부터 '10년까지의 연구과제 중 12개 과제에 대해서 이미 연구비는 집행하였으나 연구 결과물이 미제출 되었음에도 연구비 환수 등의 제재는 없었음('13년 감사원 감사결과)
- ※ '08년 ○○기관 A는 타 학회에 발표했던 논문을 표절하여 임상연구 논문으로 제출하고 연구비 수령('13.5월 권익위 실태조사)

- 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 계속적 발생
 - 연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차년도 임상연구 참여에 제한이 없어 동일 사례 반복
 - ※ '08년 국립○○병원 B는 임상연구비로 개인적 용도의 노트북(758,000원)을 구입하였으나 해당 노트북을 국유재산으로 등재하는 조치 외에 추가 제재조치는 없음('13.5월 권익위 실태조사)
 - ※ '10년 국정감사 시 일부 국립병원의 임상연구비 정산 영수증에 학원비나 의류구입, 노래방과 온천 등에서 사용한 영수증이 포함되어 있어 연구비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 제기('10.10월, YTN뉴스)



개선방안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

- 연구논문을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연구비 환수와 일정 기간 연구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 마련

※ 연구부정행위 시 제재 사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부정행위 시 사업비 환수,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 부당한 연구자에 대한 참여 제한 기준 마련

- 연구비 목적 외 사용, 연구결과물 미제출 등의 부당한 연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연구 참여를 제한하여 부당연구 반복 방지

※ 연구개발비 등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시 제재 사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용도의 사용시 사업비 환수,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 국가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시 환수, 일정 기한 보조금 지급 정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규정 예시】 부당연구 등에 대한 제재 강화

제○조(연구비의 회수 및 제재 조치)

① 기관장은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비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일정기간 연구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연구비를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자가 연구수행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연구자 자신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변조하거나 그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한 경우
5. 연구자 자신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6. 그 밖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연구 사업의 참여 제한 및 연구비 환수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③ 기관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사유의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향후 ○년 동안 연구사업의 참여를 금지시켜야 한다.



제6절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리 투명성 제고





1

연구과제 선정 과정 불투명

❖ 평가대상 조문 : 평가위원 구성·운영, 이의신청 관련 규정

기본법령

「과학기술기본법」 → 평가위원 구성·운영 및 이의신청 규정 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하 ‘공동관리규정’) → 이의신청의 세부절차·방법 등에 대한 규정 없음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세부기술별로 적정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는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 ⑧ (생략)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선정결과, 중간·최종 평가결과, 참여제한)를 운영할 수 있다.

⑩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평가위원 제외대상)과 같다.

⑪ (생략)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 ⑨ (생략)

⑩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등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한 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전공
3. 연구분야
4. 논문실적
5. 평가 이력 사항

6. 그 밖에 평가위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

⑪ ~ ⑲ (생략)

⑳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관리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㉒ ~ ㉔ (생략)

개별법령

〈평가위원 구성·운영〉 → 개별법령 8개 중 3개 법령에서 규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89조

「농림수산물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제9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6조

〈이의신청〉 → 개별법령 8개 중 3개 법령에서 규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5조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의2

행정규칙

〈평가위원 구성·운영〉 → 부처별로 절차와 방법 등을 달리 규정

〈이의신청〉 → 부처별로 대상과 신청기한 등을 달리 규정



평가기준

- 접근성과 공개성(3-1), 이해충돌 가능성(3-3)

현 황

- 각 전문기관은 신규과제 선정 시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정평가단 구성 및 이의신청 제도 운영
 - (평가위원 후보단 관리) 각 부처는 평가단을 구성함에 있어 NTIS의 평가위원 후보단(이하 “pool”)을 활용하고, 미래부는 각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평가위원 pool을 NTIS에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법률적 근거 없음)
 - (평가위원 구성·운영 등) 각 부처는 평가위원 구성·운영, 이해관계 개입 방지 장치 및 권리구제 절차 등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제 각각 규정(기본법령, 개별법령, 행정규칙)

문제점

- NTIS상의 평가위원 Pool 미활용으로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저해
 - 과제선정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각 전문기관은 NTIS를 활용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 하도록 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 전문기관마다 평가위원 pool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평가위원을 구성하다 보니 협소한 pool로 인해 전문성 확보 곤란
 - 또한, 평가위원 pool의 승인권을 전문기관이 갖고 있어 필요시 평가위원을 추가 등록할 수 있고, 평소 업무관계 있는 전문가를 특별위원 형식으로 위원에 포함시키는 등 자의적인 위원구성으로 평가의 공정성 저해

〈 전문기관에서 독립적으로 평가위원 pool을 운영·관리하는 이유 〉

- ① 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에서 정한 기술표준분류체계¹⁾가 서로 맞지 않아 NTIS 미활용
- ② 연구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NTIS 연계) 거부로 자체pool을 활용
- ③ NTIS의 pool자료는 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정도의 기본정보만 입력되어 있어 실제 전문기관에서 평가위원 구성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부족
- ④ NTIS 활용시 절차가 복잡하고, 재검증·확인 절차가 별도 필요하여 불편

전문기관별 평가위원 구성방식 등 실태

〈 2013.8~9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구 분	예기평	해양원	환경원	콘텐츠	산기평	중기원	재 단	국토원	보건원	농기원
① 평가위원 구성시 NTIS활용 여부	미활용	활용	미활용	미활용	미활용	미활용	미활용	미활용	미활용	미활용
② 자체관리 중인 평가위원 pool(명)	10,589	2,829	7,086	8,675	23,764	11,712	67,689	2,561	23,922	8,661
③ 평가위원 pool 승인권	부처	전문 기관	전문 기관	전문 기관	부처	부처	전문 기관	전문 기관	전문 기관	전문 기관
④ 특별위원 구성규정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없음

- '12년 기준 NTIS평가위원 pool은 30,212명으로 전문기관은 이를 활용하지 않고 독립적인 평가위원 pool을 운영·관리하여 평가위원을 구성(기본법률 상에 위원 구성 관련 근거 규정 부재)
- 독립적 운영에 따른 협소한 평가위원 pool로 인해 전문성 확보가 곤란함에 따라 특별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음
- 또한 전문기관은 평가위원 pool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어 필요에 따라 평가위원 pool에 특정 전문가를 추가할 수 있는 구조
- 전문기관이 5인의 평가위원을 구성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 pool에서 3~4인과 pool 이외의 외부 전문가(특별위원 규정) 1~2인을 구성

1) 기술표준분류체계 :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체계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정보의 관리·유통, 인관관리의 효율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기획·관리를 위한 국가 표준 분류틀로 각 부처별로 연구개발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분류체계를 운영·관리하고 있음



평가위원 구성·운영 부적정 사례

- ① 전문기관별로 자체관리 중인 평가위원 pool 상에서 제재 중에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pool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원, ○○원, ◇◇원, ▽▽원의 경우 pool 상에 제외하지 않거나 제재정보가 미등록된 상태로 관리(권익위, 2013.08~09.)
- ② △△원이 자체관리 중인 평가위원 pool은 '13.8월 현재 5,706명으로 이중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1,264명(전체 22%),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기업에 종사하는 자가 391명(31%)으로 자체관리 중에 있는 평가위원 pool의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기업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권익위, 2013.08~09.)
- ③ ○○원 평가팀장 ○○○는 신규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7명을 선정하면서 NTIS에 의한 자동선정 절차가 있음에도 평소 자신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이 수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 4명을 임의적으로 구성하여 △△△대학을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감사원, 2011.06.)
- ④ ㉠㉠원은 '09년 신재생㉠㉠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평가에 따른 평가위원 구성시 B업체의 경쟁사 임직원(정○○, 김△△) 및 전문성이 부족한 평가위원(신◇◇)을 구성·평가하여 A업체를 선정 하였으나, B업체의 평가위원 구성에 대한 이의제기로 평가결과가 번복되어 결국 B업체가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권익위, 2013.08.)
- ⑤ ▽▽원은 '11년 “탄소저감 ○○전략, 녹색지수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6건의 과제 평가 과정에서 특별위원을 위촉하는 결정이 없는데도 평가위원 pool 상의 전문가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도시계획분야(2명), 환경분야(1명) pool에 없는 외부전문가를 구성하여 과제평가(권익위, 2013.08~09.)

● 과제선정 과정에 이해관계 개입 및 부실 평가 가능성 상존

- 신규과제 공고 전 과제기획을 통해 사업 제안서가 작성되는데 그 과제기획에 참여한 자(기획연구자·기획위원)가 본 과제의 수주를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과제를 선정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선정과정의 공정성 미흡
 - ※ 과제 공고 후 사업계획서 제출기한은 통상 1개월로 짧아 관련정보를 사전에 습득한 연구자(기획위원 등)가 본 과제 수주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
- 또한, 신규과제를 평가하는 위원의 이해관계 개입 등 부정행위를 차단·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평가 업무의 공공성·책임성 확보 곤란

전문기관별 과제기획위원의 본 연구 참여 등 실태

〈 2013.8~9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구 분	에기평	해양원	환경원	콘텐츠	산기평	중기원	재 단	국토원	보건원	농기원
① 기획위원 본과제 참여 사례	-	있음	있음	있음	-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② 기획위원 본과제 참여 제한규정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서약서)
③ 평가위원 제재 현황	사업 참여제한 및 처벌 등 제재 규정 부재 (경고 및 평가위원 pool에서 제외 하는 정도)									
④ 이해충돌방지 규정	제척 회피 기피	제척	제척	제척	제척 회피 기피	제척	제척	제척	제척 회피	-

- 전문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전문가 pool의 한계(협소)로 기획위원의 본 과제의 참여를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농기원의 경우 서약서 징구 이후 기획위원 본과제 참여율 감소)
- 평가위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보니 모든 전문기관에서 법률적 효력이 미약한 부정·부당한 평가 금지 서약서 징구 및 평가위원 pool에서 제외하는 수준의 제재가 전부이며, 이해충돌방지 장치도 제 각각 운영

기획위원 등이 본 연구과제 수주 사례

- ① 정부출연연구소의 A연구원은 과제기획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연구 분야와 맞아 떨어지는 과제가 발주되도록 담당 공무원을 만나 로비 및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사 등을 대신 하며 300억원이 넘는 신규 과제를 따냄 (매일경제, 2013.04)
- ② ∇∇원이 '11년 “○○○ 제동장치 정비·시험 인프라 기술개발”(정부출연금 7,088백만원 / '11.12~'13.9)의 과제 시행자로 선정된 (주)◇◇박○○는 본 과제 공모 전 기획연구의 최초선정 및 최종평가에 참여한 기획위원으로 과제선정에 탈락한 (재)△△△ 권●●이 신규과제 선정평가의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 하였으나, ∇∇원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 (권익위, 2013.08~09)

● 신규과제 선정 탈락자를 위한 권리구제의 형평성·실효성 미흡

- 기본법령에서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전문기관 별로 이의신청 대상과 기한 등을 제 각각 정함으로써 권리구제의 형평성 저하
- 과제선정 평가를 했던 위원이 이의신청위원회에 다시 참여하여 심의하거나, 탈락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별도 기구의 심의 없이 담당자가 자체 종결하는 등 권리구제의 공정성·실효성 미흡



전문기관별 이의신청 제도 운영 실태

〈 2013.8~9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구 분	에기평	해양원	환경원	콘텐츠	산기평	중기원	재 단	국토원	보건원	농기원
① 신청대상	평가,제재	평가,제재 해약	평가,제재 정산	평가,제재	평가,정산	평가, 제재정산	평가,제재	평가,제재 ,해약	평가,제재	평가,제재 정산,해약
② 신청제외	-	-	-	선정평가, 위원선정	-	-	위원선정	-	-	위원선정
③ 신청기한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	통보 받은 후 15일 이내	-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
④ 이의신청 현황(반영)	19건 (5건)	13건 (1건)	366건 (0)	3건 (0)	127건 (5건)	417건 (36건)	608건 (46건)	7건 (0)	12건 (4건)	175건 (84건)
⑤ 이의신청 위원구성	선정평가 위원중심	-	선정평가 위원우선	-	선정평가 위원중심	-	pool내 자동추출	선정평가 위원중심	-	pool내 자동추출

- 선정평가의 중요 절차인 평가위원 선정 관련 사항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없게 규정을 운영 하는 등 (콘텐츠, 재단, 농기원) 이의 신청 대상을 제한하고, 이의 신청 기한도 최소 7일에서 최장 15일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운용
- 이의신청위원회가 선정평가위원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우 반영률이 낮음
- 전문기관이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선정평가에 참여한 위원 위주 또는 기관 내부 임·직원으로 구성하여 심의하거나, 별도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내부검토로 종결처리 하는 등 재평가의 실효성 결여

이의신청 제도 운영 실효성 저해 사례

●●원은 2011년 융복합기술개발사업 및 2011년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5차사업에 대한 신규과제 선정평가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재평가를 진행하면서 재평가위원 구성시 선정 평가에 참여한 위원 및 위원장을 참여 시키는 등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 미흡 및 평가의 공정성 저해(권익위, 2013.08.~09.)

개선방안

- NTIS의 효율적인 공동 활용을 통한 평가위원 Pool 통합관리
 - 기본 법률에 NTIS 자료입력·연계를 의무화 하고, 의무 불이행시 제재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든 전문기관이 NTIS를 활용하여 평가위원 Pool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강구(법률적 근거 마련)

【예시】 → 「과학기술기본법」 및 공동관리규정
(NTIS 구축·운영 등 근거 법령 상향)

현행	개선안
〈신설〉	제○○조(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 등 포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 등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고 2. 평가위원 후보단 및 평가결과 3. 진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과제의 정보(연구원 참여정보 포함) 4. 연구비집행기준 및 연구비사용내역 5.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관리(불용·폐기·양도 등 변경 승인사항 포함) 6. 연구개발결과 공개 및 실패한 연구개발 과제 정보 7.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사업 참여 제한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협의(승인)를 받아 별도의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관리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야 한다.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등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출 또는



현행	개선안
〈신설〉 →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 등	정보시스템의 상호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 등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연구시설·장비 활용 및 관리 포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가진 전문관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입력, 활용 등에 관한 실태를 평가하여 제12조의2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및 정보의 구축범위, 운영절차와 재정상의 인센티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조(제재조치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가입하지 않거나 관련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반기관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 중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해당 제재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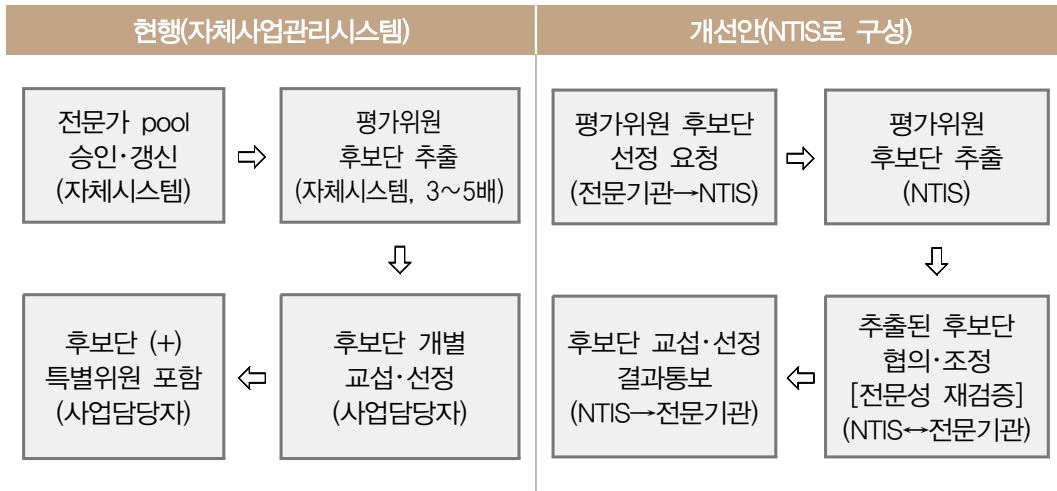
※ 각 부처 및 전문기관은 NTIS 상의 과학기술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입력·연계 및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와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예산심의·편성시 실적에 따라 기관 운영비 가·감 등)를 제공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

〈 평가위원 pool 등록·관리 절차 개선안 예시(공동관리규정 및 지침) 〉

현행(pool 등록·관리 창구 이원화)	개선안(pool 등록·관리 창구 일원화)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신청·승인 (연구자→미래부·NTIS) ↓ 전문가 pool 등록 [경력 및 연구실적등] (부처·전문기관 자체시스템) ↓ 전문가 pool 승인 (부처·전문기관) ↓ 전문가 pool 활용·관리 및 pool자료 갱신·보완 (부처·전문기관)	전문가 pool 등록 [경력 및 연구실적등] (연구자→미래부·NTIS) ↓ 등록신청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미래부·NTIS→부처·전문기관) ↓ 표준분류코드 및 전문가 등록여부 등 의견회신 (부처·전문기관→NTIS) ↓ 등록자료 보완요청 및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부여·승인 (미래부·NTIS→연구자) ↓ 전문가 pool 활용, pool자료 갱신·보완 및 갱신자료 NTIS 통보 (부처·전문기관↔미래부·NTIS)

※ 기본법령 및 개별법령에서 표준기술분류체계를 맞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기관별로 기술 분류체계 서로 다르게 운용, 기관별로 전문가 pool의 기술분류 코드가 맞지 않아 NTIS의 통합 관리·활용이 어려운 실정

〈 평가위원 추출·구성과정 개선안 예시(공동관리규정 및 지침) 〉



※ 특별위원 구성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국방·국가안보 또는 국외전문가를 평가위원에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음.

● 연구과제 선정평가 참여 위원들의 공정성 강화

- 평가 참여 위원들의 이해관계 개입 차단을 위하여 이해충돌방지 장치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평가위원 구성의 법률적 근거 마련)
- 평가위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 마련
- (참고의견) 신규과제 기획에 참여한 연구자 및 기획위원이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강구

【예시】 → 「과학기술기본법」 및 공동관리규정
(평가위원 이해충돌방지 장치 및 제재 규정)

현행	개선안
〈신설〉	제○○조(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위원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등을 위해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선정 2. ~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등에 관한 세부 사항(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관리규정」 제7조 관련〉	〈대통령령〉 제○○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0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연구비 횡령·유용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현행	개선안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연구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예 시 】 → 「과학기술기본법」(평가위원의 불법행위 방지 장치 규정)

현행	개선안
〈신설〉	제○○조(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회의 위원 - 제○○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위원회의 위원 ~ (생략)

- 연구과제 평가결과 등에 대한 불복절차 명확화 및 체계화
 - 연구과제 선정에 탈락한 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절차 마련
 - 전문기관별로 제 각각 정하고 있는 이의신청 절차, 방법 등을 통일하여 기본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

【예시】 → 「과학기술기본법」 및 공동관리규정 제7조 관련

현행	개선안
〈신설〉	제○○조(이의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대한 평가 결과 2. ~ (생략)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규정	제◇◇조(국가연구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 ① 제○○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분쟁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본법령에서 이의신청 대상 및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의신청 심의 기구를 전문기관이 아닌 부처·미래부 등 제3의 기관에 두는 것이 권리구제 장치의 실효성 확보 가능



2

연구개발비 집행·관리기준 불명확

❖ 평가대상 조문 : 연구원 참여율 관리, 정부출연금 부담, 연구장비 활용·관리 관련

기본법령

「과학기술기본법」 → 연구원 참여율 관리 및 정부출연금 부담기준 규정 없음

제28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① 정부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 등을 늘리고 현대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생략)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고도화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비집적시설의 운영 및 공동활용의 촉진 등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 ⑨ (생략)

「공동관리규정」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 ② (생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생략)

2.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

3. ~ 4. (생략)

5.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타당성

6. ~ 11. (생략)

④ ~ ⑪ (생략)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 ② (생략)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별표 1의4에 따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별표 1의4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1의4]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라.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 마.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 바.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비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 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 4. (생략)
	학생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 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 ② (생략)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중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사용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원래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2. ~ 5. (생략)

④ ~ ⑨ (생략)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 ⑨ (생략)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 시스템에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제2항에 따라 정산할 때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⑪ (생략)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① ~ ③ (생략)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정보, 참여연구원의 정보, 평가위원 및 평가 결과, 연구성과, 실패한 연구개발과제 정보 등 모든 연구개발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의 유휴·저활용, 불용, 폐기 및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가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등록·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장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⑧ ~ ⑫ (생략)

⑬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를 논문, 특허,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 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한다.

⑭ ~ ⑮ (생략)

⑯ 제4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략)

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 인적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 정보, 과제별 참여율, 주요 연구실적 및 연구논문 발표실적

4. ~ 5. (생략)

⑰ ~ ㉔ (생략)

제28조(전문기관의 업무)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관리·감독

9. ~ 11. (생략)



개별법령

〈연구원 참여율 관리, 정부출연금 부담기준〉 → 관련규정 없음

〈연구장비 활용·관리〉 → 개별법령 8개 중 2개 법령에서 규정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

행정규칙

〈연구원 참여율 관리〉 →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사용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

〈정부출연금 부담기준〉 → 부처별로 부담기준을 달리 규정

〈연구장비 활용·관리〉 → 부처별로 장비관리 절차 및 방법 등을 달리 규정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2-3)

현 황

-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연구 참여 정보를 관리하여 과제별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 지급
 - 각 부처는 연구원의 연구 참여 정보를 자체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NTIS에 연계하도록 규정 (기본법령, 행정규칙)
 - ※ 참여율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참여율을 모두 합산, 130%를 넘지 않는 범위)
- 전문기관별로 구매 장비 등을 공동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통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해 장비 등록·관리제 운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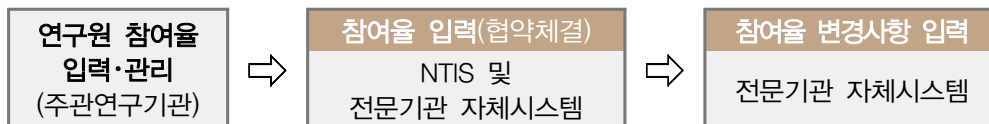
- 전문기관은 과제선정 시 연구장비 구입 타당성 및 공동활용 여부를 검토하고, 구입된 장비는 NTIS에 등록 및 주기적 조사·점검하도록 규정(기본법령, 개별 법령, 행정규칙)

문제점

- 전문기관 간 참여율 정보공유 장치 미흡으로 연구비 낭비 소지
 - NTIS를 활용해 연구원의 참여율 정보를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한 규정과 달리 전문기관은 자체 시스템에만 활용 가능한 참여율 정보를 등록·관리
 - 인건비 지급에 활용 가능한 정보 및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대한 전문기관 간 정보공유 장치 미흡으로 인건비 과다 지급 등 연구비 낭비 원인 제공

전문기관별 연구원 참여율 정보 입력·관리 실태

〈 2013.8~9월, 권익위 실태조사 〉



- 참여율 관리는 최초 협약단계에서는 NTIS와 전문기관 자체사업관리시스템에 동시에 입력·관리되지만, 협약이후 변경되는 사항이 NTIS에 업데이트 되지 않고, 전문기관에서만 관리 되고 있어 전 부처의 개별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부처별로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알 수 없는 구조



연구원 참여율 관리 부실로 발생한 부패 사례

- ① ○○원은 2009년도에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인건비 76억원을 재원으로 특별상여금 21억원을 전 직원 370명에게 지급하는 등 연구직 직원 273명의 인건비가 2010년도에 2008년 대비 40.5% 인상
- ② ◇◇원 등 15개 연구기관과 협약 체결한 5,086개 국가연구개발 과제에 대하여 15개 연구기관이 인건비를 해당 연구원 급여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 하였는지 확인한 결과 362개 연구개발 과제에서 연구원 급여의 100%를 초과하여 14,911백만원이 더 지급된 것으로 확인 (감사원, 2011.06.)
- ③ 인건비 부당집행 및 횡령·유용 사례 (권익위, 2013.08.~09.)
 - ◇◇원이 '09년도에 추진한 “포맷지원 중심의 스토리 저작도구 개발” ('09.3.1.~10.15. 정부출연금 598백만원) 사업에서 주관연구기관인 (주)△△의 이○○은 598백만원 중 41백만원을 실제로 과제 수행에 참여하지 않은 31명의 외부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부당 집행
 - ◇◇원이 수행한 “친환경 다기능 미니 건설장비 개발” ('08.08.1.~'10.07.31. 정부출연금 890백만원) 사업에서 주관연구기관인 △△(주)의 조○○은 890백만원 중 450백만원을 자신의 동생 업체(협력업체로 위장)로 송금 후 연구원 5명의 인건비 등으로 횡령·유용

● 전문기관별 정부출연금 부담 기준 모호

- 전문기관별로 참여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부담기준이 달리 운영되고 있고,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출연금 부담기준이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어 재량에 따라 형평에 맞지 않게 지원될 우려
- ※ 예시 : 참여기관을 3개로 가정할 때, ①(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50%가 지원되고, ②(대기업+중견기업+중견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이 2/3이상이므로 60~75%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

전문기관별 정부출연금 부담기준 운용 실태

〈 2013.8~9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구 분	예기평	해양원	환경원	콘텐츠	산기평	중기원	재 단	국토원	보건원	농기원
대기업	50%이하	50%이내	50%이내	50%이내	50%이하	별도공고	50%이내	50%이내	50%이내	50%미만
중견기업	75%이하	60%이내	60%이내	60%이내	75%이하	별도공고	60%이내	60%이내	60%이내	60%미만
중소기업	75%이하	75%이내	75%이내	75%이내	75%이하	75%이내	75%이내	75%이내	75%이내	75%미만
중견+중소	75%이하	60%이내	60%이내	60%이내	75%이하	별도공고	-	60%이내	60%이내	60%미만
3개이상 중견2/3	75%이하	60%이내	60%이내	60%이내	75%이하	별도공고	-	60%이내	60%이내	60%미만
3개이상 중소2/3	75%이하	75%이내	75%이내	75%이내	75%이하	75%이내	75%이내	75%이내	75%이내	75%미만
그 밖의 경우	50%이하	50%이내	50%이내	50%이내	50%이하	별도공고	50%이내	50%이내	50%이내	50%미만

→ 동일한 목적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나 전문기관별로 정부출연금 부담기준을 제 각각 적용하고 있으며,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역차별 발생

● 연구장비의 등록·관리체계 미흡에 따른 공동 활용 저해

- 정부는 중복적이고 불요불급한 장비구입의 억제를 통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사업 추진과정에서 구입한 연구장비의 체계적인 등록·관리 및 부처 간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 전문기관별로 구입된 장비에 대한 통계파악 및 주기적인 점검·관리 소홀 등 연구장비의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 공동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임대 장비에 대한 관리책임 소재 모호 등으로 시설·장비의 기관 간 공동 활용을 꺼리고 있어 연구기관별로 불요불급한 장비의 중복적 구입으로 예산낭비 발생



전문기관별 연구장비 관리제도 운영 실태

〈 2013.8~9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구 분	에기평	해양원	환경원	콘텐츠	산기평	중기원	재 단	국토원	보건원	농기원
① 사전구입심사규정	있음	있음	있음	-	있음	있음	있음	있음	-	-
② 주기적 관리규정	-	있음	있음	-	-	-	있음	있음	-	-
③ 불용 등 승인규정	-	있음	-	-	-	-	있음	있음	-	-
④ 장비 통계관리 실적	없음	329건	129건	없음	5,958건	없음	2,910건	421건	312건	17건
⑤ 과제종료 후 관리	미관리	미관리	미관리	미관리	미관리	미관리	미관리	미관리	미관리	미관리
⑥ 공동활용·이용 규정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⑦ 공동활용 실적	없음	5건	1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9건

- 전문기관별로 연구장비의 통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전 구입심사·주기적 관리·장비구입 이후 불용·폐기 등 변경승인의 세부 절차와 방법을 달리 적용·운영
- 정부에서는 구입된 장비에 대한 공동활용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전문기관별로 공동활용 실적이 없거나 극히 저조한 실정

연구장비 구입에 따른 예산낭비 및 장비 등록·관리 부실 사례

- ①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33개 연구기관이 2007.1.~2010.7.까지 구매한 연구장비 중 사용기간이 짧은 장비를 대상으로 임차비용과 취득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 임차시장이 활성화된 스펙트럼분석기 등 16개 품목의 계속기에 대한 분석결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2,235백만원 상당의 연구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확인 (감사원, 2011. 6.)
- ② ○○원은 '09년 이후 구입한 3천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총 75개의 연구장비 중 46개만이 NTIS에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30일을 초과하여 지연 등록한 건수가 38건임. (△△대학 부속 ○○병원 책임연구자 이◇◇의 경우 연구장비 구입 후 486일 경과 후 등록) △△원·◇◇원·㉠㉠원은 구입한 연구 장비에 대하여 통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권익위, 2013. 9.)

개선방안

- 연구원 참여율에 대한 통합관리 방안 강구
- 기본 법률로 NTIS에 참여율 정보를 의무적으로 입력·연계하도록 규정하는 등 연구원 참여율에 대해 통합적으로 활용·관리하는 방안 마련

【예시】 → 「과학기술기본법」(NTIS 구축·운영 등 근거 법률 마련)

〈 연구자 참여율 관리 방안 개선안 예시(공동관리규정 및 지침) 〉



● 부처간 서로 다른 정부출연금 부담기준 통일

- 전문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연구비 지원 방지를 위해 정부출연금 부담 기준을 구체화

※ 정부출연금 부담기준 중 부처별 특성을 반영해야할 사항은 미래부와 각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

● 연구시설·장비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 기본 법률로 NTIS에 등록·관리 정보를 의무적으로 입력·연계하도록 규정하는 등 연구장비를 체계적으로 활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예시】 → 「과학기술기본법」(NTIS 구축·운영 등 근거 법률 마련)

〈 연구장비 관리체계 개선안 예시(공동관리규정 및 지침) 〉

현행	개선안
일정규모 이상 사전 구입심사 [예산증액, 구입변경 등 포함] (주관연구기관↔전문기관) ↓ 구입한 연구장비 등록 [3천만원 이상, 공동활용 가능 장비] (주관연구기관→자체시스템·NTIS) ↓ 연구장비 구입·사용내역 확인 [사업정산시 NTIS등록 확인 등] (전문기관, 협약기간 중) ※ 전문기관은 연구장비의 소유권이 주관연구기관에 있다는 이유로 구입된 장비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관리 소홀로 인해 공동활용 실적이 전무하고, 협약종료 이후 구입된 연구장비 관리시스템과 인센티브제도 시행 부재	일정규모 이상 사전 구입심사 [예산증액, 구입변경 등 포함] (주관연구기관↔전문기관) ↓ 구입한 연구장비 등록 [3천만원 이상, 공동활용 가능 장비] (주관연구기관→자체시스템·NTIS) ↓ 구입된 연구장비 통계 정보제공 및 통합관리 (통합장비관리단↔NTIS) ↓ (분기/반기별)연구장비 사용실태 점검 (불용,폐기,양도 등 변경사항 포함) [점검결과 등 통보→통합장비관리단] (협약기간 중 : 전문기관 관리·점검 주관) ↓ (분기/반기별)연구장비 관리·활용실태 점검 (불용,폐기,양도 등 변경사항 포함) (과제 종료 후 : 통합장비관리단 관리·점검주관) ※ 장비공동 활용에 따른 운반비·유지보수비등 지원, 장비 구입 예산절감액 만큼 전문기관 및 통합관리단에 성과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

3

연구개발비 정산제도 운영 부적정

❖ 평가대상 조문 : 정산범위 설정 및 위탁정산 관련

기본법령

「과학기술기본법」 → 관련 규정 없음

「공동관리규정」 → 위탁정산 규정 없음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 14. (생략)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생략)

1. ~ 2.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일부를 추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에 정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전부에 대하여 정산할 수 있다.

③ ~ ⑪ (생략)

개별법령

관련 규정 없음

행정규칙

부처별로 정산범위 설정 및 위탁정산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달리 규정



평가기준

-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1-2),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2-3)

현 황

- 기본법령에서 각 부처 소관 연구사업의 기획·관리·정산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전문기관은 연구사업이 종료되면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 연구과제 일부를 추출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집행한 연구비 사용내역의 적정여부 등을 정산
 - 각 부처는 전문기관에게 정산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행정규칙으로 제 각각 규정

문제점

- 정산업무 위탁에 따른 예산낭비 발생
 - 각 부처는 위탁정산기관의 부실정산 등에 대한 책임성 확보 장치 없이 전문기관이 정산업무를 민간 회계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정산의 및 예산낭비(정산수수료)의 원인 제공
- ※ 전문기관의 정산업무 위탁사유
 - ① 전문기관이 연구비 정산업무에 필수적인 지식, 인력 등을 갖추지 못함
 - ② 국회 및 감사원 등은 매년 시행되는 연구과제 전체에 대한 정밀 정산을 요구
 - ③ 전문기관별로 정산인력 대비 정산 업무량이 과다하고, 시기적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전체 과제에 대한 정확하고 철저한 정밀정산 곤란

전문기관별 정산제도 운영 실태

〈 2013.8~9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구 분	에기평	해양원	환경원	콘텐츠	산기평	중기원	재 단	국토원	보건원	농기원
① 정산범위 설정	전체 과제	일부 추출	일부 추출	-	전체 과제	전체 과제	5%추출	일부 추출	-	-
② 정산방식	위탁	위탁	위탁	위탁	위탁	자체정산	자체정산	위탁	위탁	위탁

→ 기본법령에서 전문기관이 연구과제의 일부를 추출하여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기관별로 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정산범위를 설정 하다 보니 정산 업무량 과다 등을 이유로 회계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정산

정산업무 위탁에 따른 위탁정산기관 정산 부실 사례

- ① ○○원은 “다기능 고효율 직접제강 공정기술개발” 과제에 대하여 정산 승인을 하면서 주관연구기관이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된 시설공사비를 정부출연금으로 사용한 820백만원을 회계법인이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정산 검사한 내용을 별도의 검증·확인 절차 없이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최종 정산 승인 후 회계법인에 정산검사 수수료를 지급 (감사원, 2011.06.)
- ② △△원은 연구개발사업의 정산 승인을 하면서 ●●대학 책임연구원 최○○가 '09~'10년까지 연구비에서 인건비, 시험분석비, 재료비 등 173백여만원을 목적 외로 사용 하였는데도 회계법인은 적정하게 연구비를 사용한 것으로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였고, △△원도 회계법인의 정산검사 결과를 그대로 승인처리. 이후 '11.8월 외부기관의 감사로 정산부실이 확인되었으나, 정산검사를 한 회계법인에 대한 별도의 제재조치 등이 없이 제4기 위탁정산기관으로 재선정 (권익위, 2013.08.)

● 위탁정산기관의 독립적 정산업무 추진과 책임성 담보 장치 부재

- 정산업무 위탁에 따른 정산수수료는 정산주체인 전문기관이 지급해야 하나, 피정산기관인 주관연구기관이 연구비에서 정산 수수료 지급(서로 다른 수수료 지급기준 운용)하고 있어 위탁정산기관의 독립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한 구조
- 위탁정산기관의 부실정산에 대해 수수료 환수나 정산업무 위탁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정산업무의 공공성과 책임성 담보 곤란



전문기관별 위탁정산 제도 운영 실태

〈 2013.8~9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구 분	에기평	해양원	환경원	콘텐츠	산기평	중기원	재 단	국토원	보건원	농기원
① 정산수수료 지급	주관연구 기관	주관연구 기관	주관연구 기관	주관연구 기관	주관연구 기관	자체정산	자체정산	주관연구 기관	주관연구 기관	주관연구 기관
② 정산 수수료 (천원)	457,449	407,196	745,494	225,030	8,886,000	-	-	1,111,223	2,081,398	50,576
- 건당 1억 이상	1,304	630	711	840	1,185	-	-	599	495	599
- 건당 5억 이상	1,812	900	1,225	1,080	1,647	-	-	1,000	858	944
- 건당 10억 이상	2,030	1,080	1,403	1,500	1,845	-	-	1,199	979	1,080
③ 부실정산 제재규정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	없음	없음	없음

→ 위탁정산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주관연구기관이 지급('09~'11년, 140여억원)하고 있고, 연구비 규모에 따라 전문기관별로 서로 다른 수수료 지급 기준을 운용(에기평의 경우 他전문기관에 비해 2배 이상 수수료를 지급)

→ 부실정산을 한 위탁정산기관에 대한 제재규정 부재

개선방안

- 정산업무 위탁의 제도화 및 위탁기관에 대한 책임성 확보 장치 마련
 - 전문기관의 효율적·체계적 정산업무 수행·관리를 위해 정산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위탁 받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행정규칙이 아닌 기본법령이나 개별법령에 마련
 - ※ 전문기관의 정산업무 인력 한계와 정산 과제 수 과다 및 정산시기 집중에 따른 물리적 한계로 인해 관행화된 현행 업무시스템을 양성화·제도화
- 위탁기관의 정산업무 독립성 강화 및 부실정산에 대한 제재 규정 등 마련
 - 업무위탁 수수료를 전문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주관연구기관과 위탁기관의 이해관계를 차단함으로써 정산업무 독립성 강화
 - 위탁기관의 정산업무 수행에 공공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부실 정산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운영

【예시】 → 기본법령 및 개별법령

(위탁정산 책임성 및 독립성 강화 장치 마련)

현행	개선안
〈신설〉 → 공동관리규정 상향 입법 등	제○○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공동관리 규정 제19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업무를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정산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부실 정산기관에 대하여는 위탁 계약을 취소하거나 위탁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제3항에 따라 위탁 한 경우 해당 위탁기관의 장의 보고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일정기한을 정하여 이를 증빙할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당해 연구개발비의 사용을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제출받은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	개선안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정산액을 확정·통보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정산업무 추진과 업무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요건, 수수료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3항에 따라 정산업무를 위탁하는 법인 등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4

연구개발비 환수·제재 규정 불합리

❖ 평가대상 조문 : 연구개발비 환수, 환수금 징수절차, 참여제한 규정 관련

기본법령

「과학기술기본법」 → 환수금 징수절차 규정 없음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의 구체적 기준 및 사업비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동관리규정」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 ③ (생략)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종료된 후에 연구개발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사용잔액이 있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의 보고내용에 대한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⑤ ~ ⑪ (생략)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2년 이내
- ② ~ ⑧ (생략)

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⑩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5]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

환수사유		환수기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기술료 금액 이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개별법령

〈연구비 환수〉 → 개별법령 8개 중 6개 법령에서 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제12조 등 6개 법령

〈환수금 징수절차〉 → 관련규정 없음

〈참여제한〉 → 개별법령 8개 중 5개 법령에서 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9조 등 5개 법령

행정규칙

부처별로 연구개발비 환수, 환수금 징수, 참여제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을 달리 규정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현 황

- 전문기관은 연도별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및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주관연구기관 등에 지원한 출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
 - 기본법령으로 환수 대상과 수준을 정하고 개별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세부적인 환수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 부처가 시행하는 연구사업에 따라 환수대상과 수준 등이 서로 상이

〈 각 부처별 환수수준 등 규정 현황 〉

구 분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복지부	문체부	환경부	중기청
① 정산금 회수기한 규정									
－ 불량실패	해당년 전액	해당년 전액이내	해당년 전액	해당년 전액이내	해당년 전액	해당년 전액이내	해당년 전액	전체 출연금	전체 출연금
－ 과제포기	전체 출연금	전체출연금 이내	전체 출연금	전체출연금 이내	전체 출연금	해당년 전액이내	전체 출연금	전체 출연금	전체 출연금
－ 용도외 사용 (30%초과)	해당년 전액이내	전체출연금 이내	해당년 전액이내	해당년 전액이내	해당년 전액이내	－	해당년 전액이내	해당년 전액이내	해당년 전액이내
② 정산금 회수기한 규정	즉시납부	1개월내	－	30일내	－	－	－	－	－
③ 환수금 납부기한 규정	30일내	30일내	30일내	30일내	30일내	30일내	30일내	30일내	－
④ 미납자에 대한 제재규정	없음	없음	없음	신규과제 선정감점	없음	없음	기관 등 제재	신규과제 참여제한	신규과제 참여제한
⑤ 부도·폐업 등에 따른 미납금 추적관리 규정	없음	5년간 추적관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5년간 추적관리

● 또한, 연구개발비 목적 외 사용 등 연구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5년 범위 내에서 연구사업 참여 제한 가능

- － 기본법령으로 참여제한 대상과 수준을 정하고, 각 부처가 시행하는 연구사업에 따라 개별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참여제한 대상과 수준 등을 제 각각 규정

〈 각 부처별 참여제한 규정 현황 〉

구 분	미래부	산업부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복지부	문체부	환경부	중기청
① 성실실패	단축/면제	면제	단축/면제	1년	단축/면제	면제	단축/면제	2년/면제	1년/면제
② 과제포기	3년	면제~3년	3년	3년	3년	면제~2년	3년	3년	면제~3년
③ 기술료미납	2년	1년~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1년~2년	1년~2년
④ 용도외 사용									
－ 금액기준	20~30%	20~30%	20~30%	20~30%	20~30%	－	20~30%	20~30%	20~30%
－ 행위기준	횡령,유용	－	－	－	－	횡령,유용	－	－	횡령,유용
－ 일시전용	－	경고	－	－	－	2년	－	－	－
⑤ 협약,규정위반	2년이내	1년~2년	2년이내	2년이내	2년이내	1년~3년	2년이내	2년이내	면제~3년



문제점

● 연구개발비 환수규정 불명확

-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환수대상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부처별로 환수 대상·수준을 세분화 하여 제 각각 규정하고 있어 환수의 형평성 저해

※ (예시)기본법령과 개별법령의 환수대상 비교

- ① 연구결과 실패과제 : 기본법령) 해당년도 출연금 전액 환수
개별법령) 해당년도 출연금 일부 환수
- ② 연구비 목적 외 사용 : 기본법령)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출연금 환수
개별법령) 횡령·유용 등 행위를 기준으로 출연금 환수

〈 기본법령과 개별법령 상 환수대상 및 수준 비교 〉

기본법령 (미래부)	개별법령·행정규칙 (각 부처)
① 연구결과 실패(불량) [해당년 전액 환수]	(+) 성실실패, 성과활용부진, 부도등 중단, 협약위반 과제중단 등 [면제·해당년 전액 이내 환수 ~ 출연금 전액 환수]
② 연구내용 국내외 유출 [출연금 전액 환수]	(+) 보안, 비밀, 청렴의무 위반 [출연금 전액 이내 환수 ~ 출연금 전액 환수]
③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 포기 [출연금 전액 환수]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연금 전액 미납 [없음 ~ 출연금 전액 이내 환수]
④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 미납 [미납 기술료 이내 환수]	(+) 경영악화의 경우, 납부계획서 미제출 [없음 ~ 미납 기술료 이내 환수]
⑤ 연구비 용도외 사용 (20%이하 ~ 30%초과) [해당년 전액 이내 환수]	(+) <u>1회전용 후 재입금</u> , 시설장비 임의처분, 횡령, 편취, 유용 등 [없음 ~ 출연금 전액 이내 환수]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결과 출원·등록	좌동
⑦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선정·수행 [해당기간 전액 이내 ~ 출연금 전액 이내 환수]	→ 위조, 변조, 표절,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구체화 [해당기간 전액 이내 ~ 출연금 전액 환수]
⑧ 그 밖에 협약·규정 위반 [경위·사유 등을 고려한 금액 환수]	→ 각종 보고서 미제출·허위제출, 부담금 미부담 등 구체화 [없음 ~ 출연금 전액 환수]

제6절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리 투명성 제고

● 환수금의 임의적 감면과 납부지연에 대한 제재 규정 미흡

- 주관연구기관의 부도·폐업 등으로 정부출연금 환수가 어려운 경우 소멸시효(5년¹⁾) 기간 내에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미납금을 감면·면제 할 수 있도록 규정
- 장기 체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환수가 곤란하고, 환수금 납부기간이 기관별로 달라 형평성 저해

전문기관별 환수금 징수관리 실태

〈 2013.8~9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구 분	에기평	해양원	환경원	콘텐츠	산기평	중기원	재 단	국토원	보건원	농기원
① 정산확정에 따른 회수기한	1개월내	-	-	-	1개월내	-	즉시납부	-	-	30일내
② 환수금 납부기한	30일내	30일내	30일내	30일내	30일내	-	30일내	30일내	30일내	30일내
③ 환수금 미납 ('09~'11년 사업중)	427건	106건	사	사	459건	사	139건	62건	사	229건
- 1개월 이상~3개월 이하	58건	64건	업	업	270건	업	112건	48건	업	132건
- 4개월 이상~6개월 이하	51건	31건	별	별	143건	별	18건	6건	별	61건
- 7개월 이상~12개월 이하	313건	11건	관	관	25건	관	9건	6건	관	22건
- 12개월 초과	5건	1건	리	리	21건	리	-	2건	리	14건
④ 미납자에 대한 제재 등	-	-	신규과제 참여제한	기관등 제재	-	신규과제 참여제한	-	-	-	신규과제 선정감점
⑤ 미납자 5년간 추적관리규정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	없음	없음	없음
⑥ 미납금 감면·면제절차	전문기관 장이 감면·면제 결정 → 부처 사후 보고									
⑦ 미납금 감면사례 ('09~'11년)	-	-	있음	-	있음	있음	-	-	-	-

→ 과제 정산에 따른 환수금 등의 납부기한 설정이 불명확하여 전문기관별로 미납 사례가 많이 발생(환경원, 콘텐츠, 중기원, 보건원→미납금 징구관리체계 미정립)되고 있고 미납자에 대한 제재 수준이 경미하거나 규정되지 않아 환수금 납부자에 대한 형평성 저해

→ 미납자에 대한 추적·관리규정이 불명확하고, 전문기관이 임의로 미납금에 대한 회수를 종료('09~'11년까지 49억여원 면제)할 수 있는 구조

1) 정부채권 소멸시효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 채무의 소멸시효)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환수금 부당 감면 사례

- ① △△원에서 2006.7.27. 경영악화 사유로 정부출연금 200백만원을 면제해 준 (주)○○○의 경우 2008.12. 제10회 부산수출대상에서 1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감사원, 2011. 6.)
- ② ◇◇원에서 2009.3.6. 폐업 했다는 사유로 정부출연금 73백만원을 면제해 준 (주)△△△의 경우 회생절차를 거쳐 2011. 1. 현재 일반과세자로 정상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감사원, 2011. 6.)

환수금 징수관리 부적정 사례

- 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채익 의원은 지경부 산하 연구 전문기관이 2007년부터 2011년 까지 최근 5년 간 감독한 연구개발사업 중 총173건 467억원에 이르는 연구비가 다른 용도로 유용되거나 횡령됐으나 환수금액은 315억원으로 전체 67%에 불과 (뉴스1, 2012. 10.)
- ② ‘최근 3년간 국토해양부 소관 R&D과제 수행내역’에 따르면 연구비 부당집행, 연구비 횡령 등의 사유로 총 14건 R&D과제에서 30억6,700만원의 환수금이 발생, 이중 9건은 회수 됐고 5건은 미회수된 상태로 국가R&D 예산에 대해 부당사용 요건과 제재규정 강화 필요 (조세일보, 2011. 9.)

●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대상과 수준 상이

- 기본법령 등에서 제재의 대상과 수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제재조치평가단에서 확정함에 따라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제재가 결정될 우려(기본법령)
- 전문기관별 서로 다른 제재대상과 수준으로 동일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다르게 적용하는 등 제재의 공정성과 일관성 결여(개별법령·행정규칙)
- 연구비를 횡령한 자에 대한 제재수준을 횡령한 행위가 아니라 횡령금액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재의 형평성·실효성 저해

※ 부처 내에서도 개별법령과 행정규칙이 서로 다른 제재수단 및 수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 체계상 참여제한과 사업비 환수규정은 법령에 두는 것이 타당

전문기관별 제재수준 적용 실태

〈 2013.8~9월, 권익위 실태조사 〉

① 참여제한

구 분	예기평	해양원	환경원	콘텐츠	산기평	중기원	재 단	국토원	보건원	농기원
① 성실실패	면제	단축/면제	2년/면제	단축/면제	면제	1년/면제	단축/면제	단축/면제	면제	1년
② 과제포기	면제~3년	3년	3년	3년	면제~3년	면제~3년	3년	3년	면제~2년	3년
③ 기술료미납	1년~2년	2년	1년~2년	2년	1년~2년	1년~2년	2년	2년	2년	2년
④ 용도의 사용										
- 금액기준	20~30%	20~30%	20~30%	20~30%	20~30%	20~30%	20~30%	20~30%	-	20~30%
- 행위기준	-	-	-	-	-	형령,유용 (개별법령)	형령,유용 (개별법령)	-	형령,유용 (행정규칙)	
- 일시전용	경고	-	-	-	경고	-	-	-	2년	-
⑤ 협약 등 위반	1년~2년	2년이내	2년이내	2년이내	1년~2년	면제~3년	2년이내	2년이내	1년~3년	2년이내

② 연구비 환수

구 분	예기평	해양원	환경원	콘텐츠	산기평	중기원	재 단	국토원	보건원	농기원
① 불량실패	해당년 전액이내	해당년 전액	전체 출연금	해당년 전액	해당년 전액이내	전체 출연금	해당년 전액	해당년 전액	해당년 전액이내	해당년 전액이내
② 과제포기	전체출연금 이내	전체 출연금	전체 출연금	전체 출연금	전체출연금 이내	전체 출연금	전체 출연금	전체 출연금	해당년 전액이내	전체출연금 이내
③ 용도의 사용	전체출연금 이내	해당년 전액이내	해당년 전액이내	해당년 전액이내	전체출연금 이내	해당년 전액이내	해당년 전액이내	해당년 전액이내	-	해당년 전액이내

→ 보건원을 제외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대상의 범위(주관연구기관, 책임연구자, 참여연구기관)가 불명확하고, 제재의 기준과 정도가 구체적이지 않고 상이하며 기본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정한 제재 수준 보다 낮게 설정하기도 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 확보 곤란

* 예시 : 총연구비 100백만원인 A사업과 총연구비 10백만원인 B사업 제재수준 비교할 때 B가 A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사용하고도 강한 제재처분 부과

제재수준	A 사업(총연구비 100백만원)	B 사업(총연구비 10백만원)
20%이하:3년	100백만원×20%=20백만원 이하 사용	10백만원×20%=2백만원 이하 사용
20%초과 30%이하:4년	100백만원×21%=21백만원 이상 사용	10백만원×21%=2.1백만원 이상 사용
30%초과:5년	100백만원×31%=31백만원 이상 사용	10백만원×31%=3.1백만원 이상 사용



개선방안

● 연구개발비 환수·제재규정 명확화

- 필요적 환수 대상(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에 선정되었거나, 연구 사업을 포기한 경우 등)과 임의적 환수대상을 구분하여 규정
-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환수·제재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예시】 → 「과학기술기본법」 및 개별법(필요적·임의적 환수대상 구분)

현행	개선안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추가)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제5호,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연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예시】 → 「공동관리규정」(환수·제재대상을 행위규정으로 구체화)

현행	개선안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세부 사유별 참여 제한 및 환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5년 이내 〈삭제〉

현행	개선안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6. ~ 8. (생략) ② ~ ⑩ (생략) 〈별표5〉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 (제27조제9항 관련) <table><tr><th>환수사유</th><th>환수기준</th></tr><tr><td>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td><td>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td></tr></table>	환수사유	환수기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6. ~ 8.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별표5〉 사유별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 (제27조제1항·제9항 관련) <table><tr><th>사유별</th><th>참여제한</th><th>환수기준</th></tr><tr><td>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td><td></td><td></td></tr><tr><td>①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 또는 유용한 경우</td><td>5년</td><td>횡령금 전액</td></tr><tr><td>② 인건비 편취, 참여연구원이 아닌자에게 인건비 지급, 연구 장비 거짓 구입, 비용과다 계상 및 지급한 경우</td><td>5년</td><td>유용금 전액</td></tr><tr><td>③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td><td>5년</td><td>부정 집행금 전액</td></tr><tr><td>④ 인건비 회수 재배분, 참여연구원이 아닌자에게 출장여비 지급,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연구 활동비를 지급한 경우</td><td>5년</td><td>지급금 전액</td></tr><tr><td>⑤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자</td><td>3년</td><td>전용금 전액</td></tr><tr><td>⑥ 기술기반 구축 사업에서 설비,</td><td>3년</td><td>처분금</td></tr></table>	사유별	참여제한	환수기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①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 또는 유용한 경우	5년	횡령금 전액	② 인건비 편취, 참여연구원이 아닌자에게 인건비 지급, 연구 장비 거짓 구입, 비용과다 계상 및 지급한 경우	5년	유용금 전액	③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5년	부정 집행금 전액	④ 인건비 회수 재배분, 참여연구원이 아닌자에게 출장여비 지급,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연구 활동비를 지급한 경우	5년	지급금 전액	⑤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자	3년	전용금 전액	⑥ 기술기반 구축 사업에서 설비,	3년	처분금
환수사유	환수기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사유별	참여제한	환수기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①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 또는 유용한 경우	5년	횡령금 전액																											
② 인건비 편취, 참여연구원이 아닌자에게 인건비 지급, 연구 장비 거짓 구입, 비용과다 계상 및 지급한 경우	5년	유용금 전액																											
③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5년	부정 집행금 전액																											
④ 인건비 회수 재배분, 참여연구원이 아닌자에게 출장여비 지급,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연구 활동비를 지급한 경우	5년	지급금 전액																											
⑤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자	3년	전용금 전액																											
⑥ 기술기반 구축 사업에서 설비,	3년	처분금																											

현행	개선안
	장비 등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⑦ 기술기반 구축 사업에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⑧ 사업비 사용실적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⑨ ~ (생략)
	4년 3년
	전액 목적외 사용 금액 거짓 작성된 금액

● 연구비 환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및 감면 규정 구체화

-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로 환수의 실효성 제고
- 환수금을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없도록 환수금 관리규정 마련 (국세징수 관리 수준)

【 예 시 】 → 기본법령 및 개별법령(환수금 지연납부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및 감면 규정)

현행	개선안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 ④ (생략) 〈신설〉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의 구체적 기준 및 사업비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된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의 구체적 기준 및 사업비의 환수·부과된 환수금의 감면·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산금·환수금 미납자에 대하여 폐업, 부도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강제 징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고, 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징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법적 조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등 검토를 거쳐 채무 면제 여부를 결정(중앙행정기관 사전 승인)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대상 및 수준 합리화

-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대상·수준 구체화 및 동일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 통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출연금 유용 또는 사용명세서의 거짓보고 시 유용·횡령한 금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방안 강구

【예시】 → 「공동관리규정」과 각 부처 개별법령 및 행정규칙(제재수준 통일)

개선방향	개선방향 마련 참고 법령·규정
① 제재대상 설정 구체화 : 연구자, 연구 기관, 참여기업(대표 또는 책임연구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표5
② 제재대상·수준 구체화 : 기본법령을 기준으로 ‘행정규칙’ 구체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3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별표3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③ 제재수준 통일 : 기본법령의 제재수준으로 ‘행정규칙’ 통일	「공동관리규정」

【예시】 → 「과학기술기본법」 및 개별법(부정행위자 제재부가금 부과)

- ※ 입법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제5항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제2항 참조



청렴 韓 세상

Korea, a country of integrity

제4장

자발적 개선 사례

제1절 중앙행정기관 행정규칙 개선 사례

제2절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 사례

제3절 시·도 교육청 자치법규 개선 사례

제4절 공직유관단체 사규 개선 사례

청렴
세상



청렴 韓 세상

Korea, a country of integrity

제4장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및
공직유관단체의 사규에 대하여 각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수록한 장으로, 각 기관의 자체 부패영향평가 시행 시 참고할 수 있는
타 기관의 우수 개선 사례 수록



제1절

중앙행정기관 행정규칙 개선 사례





❖ 규 정 명 :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제교류 지침

❖ 소관부처 : 문화재청

평가대상 조문

제10조(심사위원회의 업무)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교류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않는다

1. 기관을 대표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 이라 한다)과 그 수행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재연구소(본소 1개소, 지방연구소 5개소)에서 학술연구 등을 위해 수시로 발생하는 국제교류 추진 시 초청 및 참석여부, 인원, 예산 부담 등을 반드시 심사위원회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함에도 기관을 대표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불명확한 표현으로 임의판단을 통한 심사제외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악용하여 불필요한 회의 및 행사 참석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 부패발생 가능성 높음

개선방안

- 심사제외 대상을 ‘기관을 대표하여’라는 불명확한 표현 대신 심사에서 제외되는 기관을 대표하는 성격의 국제교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필요(학술대회, 국제회의 및 행사로 제한)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10조(심사위원회의 업무)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 교류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않는다 1. 기관을 대표하여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과 그 수행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제10조(심사위원회의 업무)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 교류에 대하여는 심사하지 않는다 1. 기관을 대표하여 학술대회, 국제회의 및 행사 등에 참석하고자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과 그 수행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 규 정 명 : 법제처 홍보업무 운영규정

❖ 소관부처 : 법제처

평가대상 조문

제6조(홍보물 제작) ① ~ ② (생략)

③ 각 부서의 장은 민간업체 등에 용역을 의뢰하여 홍보물을 제작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변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홍보물 제작 의도
2. 업체 선정 기준
3. 홍보물 제작 단가의 적정성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현황 및 문제점

- 민간업체와 홍보물 제작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함
- 다만, 수의계약은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바, 홍보물 제작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 없이 복수의 민간업체 견적을 의뢰하여 가격을 비교한 후, 계약상대방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개선방안

- 수의계약으로 홍보물 제작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복수의 민간업체 견적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6조(홍보물 제작) ① ~ ③ (생략) 〈신설〉	제6조(홍보물 제작)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각 부서의 장은 민간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홍보물을 제작하려는 경우, 복수의 민간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부서의 장은 대변인에게 적정 민간업체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규 정 명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평가대상 조문

제40조(사건조사결과에의 처리) 제5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인에게 이를 회시하고 내사 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신고내용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지시 전 신고인이 취하의사를 표시한 경우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현황 및 문제점

-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개정안에 의하면 신고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피해자의 조건부 처벌불원의사 표시는 무효로 내사종결(일반취하)할 수 있는 관련 근거가 폐지(제41조)되었으나,
 - 직무규정 제40조 제5항 제3호는 신고내용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지시 전 신고인이 사업주의 지급약속 등을 믿고 취하하는 경우에도 내사종결할 수 있도록 규정(미개정)된 것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고,
 - 신고사건을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감독관이 제40조 제5항 제3호 미개정으로 취하를 일반취하로 판단하여 시정지시 전 취하서를 제출받아 사건을 종결하는 재량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으며,
 - 행정종결사건 사례를 보면 ‘일반취하’ 종결사건은 '12~'13.4월간 전체 행정종결 사건 26,423건 중 6,182건(23.4%)에 달하는 실정으로 제41조 개정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 직권 종결 가능하여 부패행위 발생 개연성 높음

개선방안

- 집무규정 제41조(반의사불벌죄의 처리)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제40조(사건조사 결과의 처리) 제5항 제3호 규정 개선요구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40조(사건조사결과에의 처리) 제5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인에게 이를 회시하고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신고내용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지시 전 신고인이 취하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40조(사건조사결과에의 처리) 제5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인에게 이를 회시하고 내사종결 처리할 수 있다. 1. ~ 2. (개정안과 같음) 3. 신고내용 조사결과에 대해 범죄인지 전 신고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 규 정 명 : 호남지방통계청 자체 위임전결규정

❖ 소관부처 : 통계청

평가대상 조문

제3조(전결권자) 전결권자는 지방청 감사팀장, 본부 과장과 팀장, 사무소 소장과 팀장으로 한다.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2-2)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호남지방통계청은 통계청의 5개 지방통계청(경인, 동북, 호남, 동남, 충청)중 하나로 본부* 및 사무소**로 구성
 - * (본부 4개과) 조사지원과, 경제조사과, 사회조사과, 농어업조사과
 - ** (사무소 12개) 4급소장 3개, 5급소장 6개, 6급소장 3개
- 사무소의 장은 ‘소장’으로 사무소 업무를 관장*하는 한편 행정업무 및 각종 통계조사 현장 점검 등 관내·관외 출장 다수 수행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365호, 2013.9.26.)

제9조(지방통계청에 두는 사무소) ④사무소장은 지방통계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호남지방통계청 사무소장 근무지외(관외) 출장 현황〉

사무소명	목포	순천	여수	강진	해남	보성	전주	군산	정읍	남원	진안	제주
소장 직급	4급	5급	5급	5급	5급	6급	4급	5급	5급	6급	6급	4급
2011년 366건	35	27	33	32	26	31	34	32	31	36	29	20
2012년 386건	34	35	33	31	35	32	34	40	31	25	28	28

- (문제점) 호남지방통계청 자체 위임전결 규정(2012.12.7.)상 단위업무 중 복무의 “소속 사무소 직원의 근무지의 출장(관외)”에 대한 전결권자 지정시 사무소장의 경우 담당자가 출장을 기안하고 사무소장이 결재 (사무소장 관외 출장건수 : 2011년도 366건, 2012년도 386건)
- ⇒ 사무소장의 근무지의 출장시, 자신이 출장 기안하고 결재하는 구조로 복무 관리 취약 예상
- ※ 경인지방통계청의 경우, 4급 소장은 지방청장, 5급 소장은 조사지원과장으로 전결권자가 되어 있어 사무소장에 대한 복무관리 철저 및 무분별한 출장 사전 방지

개선방안

- 사무소장의 복무관리 철저 및 무분별한 출장 남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 필요
- 근무지의 출장시 4급 소장은 지방청장의 결재를, 5급 및 6급 소장은 지방청 본부 조사지원과장의 결재를 받음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3조(전결권자) 전결권자는 지방청 감사팀장, 본부 과장과 팀장, 사무소 소장과 팀장으로 한다. 〈신설〉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과장, 사무소장, 팀장으로 구분한다.
〈신설〉	② 사무소장은 [별표] 전결사항에 있어서 과장에 준하여 소관 업무를 전결하고, 사무소 팀장은 지방청 본부 팀장에 준하여 기안한다.
	③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전결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열거된 전결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소관 전결권자가 [별표]를 준용하여 전결할 수 있다.



[별표]

(변경 전)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지방 청장
			담당자		과장 (사무 소장)	
			실무자	팀장		
출 장	근무지외 출장	○ 근무지외 출장 명령 － 본 부 ·감사팀장 및 과장이상 ·담당사무관 이하 － 사무소	기안 기안 기안		○ ○	○

(변경 후)

단 위 업 무			기안자 및 전결권자			지방 청장
			담당	팀장	과장 (사무 소장)	
출 장	근무지외 출장	과장(목포·전주·제주사무소장)	기안			○
		5급이하 (단, 사무소장은 조사지원과장이 전결)	기안		○	
		해외출장	기안			○

❖ 규 정 명 : 징병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 소관부처 : 병무청

평가대상 조문

제9조(장비의 사용 등) ① 장비는 지정된 사용자 외에는 일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징병검사외에 다른 목적으로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현황 및 문제점

- 의료 장비(MRI 등)를 징병검사 목적 외로 직원 복지증진 차원에서 병무청 직원 등이 징병검사 이외의 시간에 무료로 이용

※ '의무장비 이용에 관한 자체 규정'(중앙신체검사소, '09.2.1)
- 직원 및 징병전담의사와 그 가족, 퇴직 직원과 그 배우자 등

〈MRI 촬영 현황〉

○ 병역의무자

(단위 : 명)

구 분	'12년(1대)	'11년(1대)	'10년(1대)
촬영 인원	2,915	2,349	1,962
검사 일수	194	184	182
1일 평균	15	13	11



○ '12년 직원 및 가족(1대)

(단위 : 명)

계	직원 본인	직원 가족 등	비 고
214	113	101	140일간 214명 촬영

- 병무청 직원들의 의료장비 무료 사용은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을 금지한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특히, 일반국민들은 병무청을 불신의 시각으로 볼 수 있음

개선방안

- 병무청 직원의 공용물 무료 이용은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로 특혜 논란 소지가 있으며, 바람직하지 않음
- 훈령에 징병신체검사 장비의 목적 외 사용대상을 명확히 규정 필요
⇒ 병무청 직원의 징병신체검사 장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규정의 명확화를 통한 부패발생 사전예방, 클린병무청 이미지 제고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9조(장비의 사용 등) ①장비는 지정된 사용자 외에는 일체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징병 검사외에 다른 목적으로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징병검사 목적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명시(병무청 직원 등은 제외)

❖ 규 정 명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 소관부처 : 문화재청

평가대상 조문

제17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생략)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 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평가항목

- 재량 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문화재연구소(본소 1개, 지방연구소 5개),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등은 주요 임무로 문화재 관련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직제상 문화재 관련 연구를 위한 학예직렬(석·박사 이상)이 별도로 존재함
- 이에 학예직들의 대학교 강의·강연, 각종 문화재 관련 위원회 참여, 문화재 관련 자문 등이 수시로 발생함에 비해 신고대상, 횟수, 직무관련성 인정 및 근무상황 처리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각 기관마다 외부강의 신고 및 근무상황 처리 등에 행동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등 부패 발생 개연성이 높음

개선방안

- 외부강의·회의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 등을 제시하여 신고대상,



횟수제한, 근무상황 처리 등에 대한 업무처리 통일성을 확보하고, 향후 위반 사항 발생 시 적발 및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동강령 위반사례가 없도록 함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17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 관련 외부강의·회의 등의 대가 등은 [별표2]와 같다.

※ 개정안 【별표】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7조 관련)

(단위 : 천원/ 1시간)

구분	장·차관급	과장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상한액	400(장관)·300(차관)	230	120	원고료·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	300·200	120	100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개선권고안 【별표2】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제17조 관련)

1. 대 상

-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 제1항에 명시된 외부강의·회의 등 대가
- 시험출제 및 감독 대가, 서면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심사, 자문, 감수 등의 대가
- 문화재 현장 해설 및 지도 대가, 외부강의·회의 등과 관련된 원고료
 - ※ 저작권료, 인쇄 등 부수적인 수입, 방송 및 신문·잡지 인터뷰 대가는 신고 제외

2. 횡수 제한 : 월 2회(연간 12회) 초과 금지

※ 겸직허가를 받은 강의 등의 경우 횡수 제한 적용 제외

3. 직무 관련성 인정 및 근무상황 처리 기준

직무 관련성 인정	근무상황 처 리
1. 담당직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을 시(업무분장 등 명시)	출장
2. 기관(부서)장이 해당 기관(부서)을 대표하여 공식적인 직무수행이라고 판단한 업무	
3. 담당직무 및 기관(부서)장이 해당 기관(부서)을 대표하여 공식적인 직무수행이라고 판단한 업무를 제외한 문화재청 소관 업무	연가

4. 직무 관련 외부강의·회의 등 대가 지급기준 금액

(단위 : 천원/ 1시간)

구분	장·차관급	과장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1시간까지 상한액	400(장관)·300(차관)	230	120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 시 시간당 금액	300·200	120	100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하는 직무 관련 외부강의·회의 등도 대가 지급기준 적용됨



정림 韓 세상

Korea, a country of integrity



제2절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 사례





❖ 규정명 :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평가대상 조문

관련 조문 없음

평가항목

- 이해충돌 가능성(3-3)

현황 및 문제점

- 해당부서(출산육아담당관)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는 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단순 1회성 평가위원회가 아니고, 지원대상과 시비 지원기준 및 범위에 대한 심의 등 예산의 보조·지원에 관한 심의의결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가 아닌 내부방침으로 규정하여 운영

⇒ 위원의 연임 차수 제한, 이해관계 충돌 시 제척·기피·회피 규정 미비, 불분명한 위원 자격요건 등으로 인해 투명성 저해 및 유착 가능성 우려

※ 출산육아담당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 위 원 수 : 위원장 포함 7명 내외 (위원장 1명, 위원 6명 내외)
- 위원임기 : 위촉일로부터 3년
- 개최일정 : 정기개최 및 사안별 수시 개최
- 주요역할 : 국공립확충 시설 심의 및 지원 결정
 - 자치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심의 : 필요성, 의지, 보육환경 등
 - 대상지역별 예산 신청 내역의 타당성 심의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지원 시설과 규모 선정
 - 기업, 재단, 단체 등 국공립 확충 연대 공모사업 심의 선정
 -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개선방안

- 본 조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위원회 관련 규정 마련
 -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제정하되 아래 사항 준수
 - ▶위원의 자격요건 및 필요 근무경력 구체화
 - ▶위원 위촉 전 부패전력 확인 및 청렴서약서 징구
 -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에 대한 배제
 - ▶위원으로 활동 시 비밀엄수, 정보이용 금지
 -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 특혜소지 차단을 위해 연임 차수 제한
 - ▶위원이 특정 사안의 이해관계 당사자인 경우 제척·기피·회피규정 명시



❖ 규정명 : 부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3조(위원의 선정 등)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후보자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등록관리대장으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 재량 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현황 및 문제점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후보자 및 예비위원을 발주부서에서 단독으로 선정함
- 그 결과 발주부서가 후보자나 예비위원을 선정할 때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과도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기 보다는 이해관계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에 의해서 불공정하게 선정함으로써 부패를 유발할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개선방안

- 발주부서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나 예비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반드시 감사담당관 및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발주부서의 재량권을 적절하게 감시·통제하고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개선하도록 함

개선결과

제3조(위원의 선정 등)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후보자를 감사담당관 및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감사담당관 및 계약부서와 협의를 거쳐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계약부서에서는 감사담당관 입회하에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등록관리대장으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 개최 전일(필요시 변경 가능)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위원 명부를 발주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규정명 :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평가대상 조문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6. (생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충청남도 광역정신보건센터 또는 법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평가항목

-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2-2)

현 황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는
 -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두거나, 정신 보건시설, 학교,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가능
- 현행 조례상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 등 수탁자 선정에 대한 규정은 없음

문제점

- 상위법령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센터에 두거나 기타의 시설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조례에서 정신보건센터 또는 법령이 정하는 민간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탁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의 혼란 초래, 예측가능성 불부합

- 민간위탁할 경우 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 등 수탁자 선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탁자 선정과정의 부패개연성 내재

개선방안

-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의 기준, 절차, 방법 등을 조례로 규정

개선결과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두거나 법령이 정하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규정명 : 자랑스러운 전복인대상 조례 등

평가대상 조문

2013. 3. 31.현재 협의회, 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전복인대상 조례 등 자치법규(총 593개/조례 319, 규칙 119, 훈령 124, 예규 31)

평가항목

- 이해충돌 가능성(3-3)

현황 및 문제점

- 우리 도는 2013. 3. 31.현재 총 593개(조례 319, 규칙 119, 훈령 124, 예규 31)의 자치법규를 운영하고 있음
- 이해충돌방지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자치법규는 전체 593개중 189개로 32.0%를 차지하고 있음
 - 위원회(협의회, 자문단 등 명칭 불문) 구성·운영을 목적으로 하거나 자치법규 안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자치법규별	본청	사업소	소방	총합계
조례	128	3	4	135
규칙	17	2	3	22
훈령	28	2	2	32
총합계	173	7	9	189

- 주요 평가 요소 :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여부
- 평가결과 : 누적 자치법규수 총 189개
 - ▶ 위원 자격의 구체적 기준 규정 미비 : 53개
 - ▶ 임기 연임 규정 및 연임횟수 제한 규정 미비 : 35개
 - ▶ 제척·기피·회피 규정 미비 : 157개

개선방안

- 2013년 자치법규 자체 부패영향평가(위원회 관련) 결과 통보 및 개정 촉구
(감사관-5478, 2013.7.8.)
-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과 병행하여 개정할 수 있도록 안내
- 권고대상 자치법규 개정시 부패영향평가 우선 실시

개정안	개선권고안
각 개별 자치법규 해당 조항	위원의 위촉 조건, 제〇〇조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제〇조의〇(위원의 해촉) 해촉규정 등 예시 제시 (2012년 부패영향평가지침 p159~161 참고)



❖ 규정명 : 전라남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보조금지원 조례

평가대상 조문

제3조(지원 대상사업)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0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도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평가항목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2-3)

현황 및 문제점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소요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산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특혜 의혹 제기
- 운송사업자 운송원가·운송수입금 산정 및 정산에 관한 검증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정지원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곤란
-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 및 운송원가 산정내역 등이 미공개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논란

개선방안

-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
- 운송사업자의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
- 운송사업자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제도 도입
-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 및 운송원가 산정내역에 대한 공개 의무화

개선결과

제3조(지원 대상사업)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0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환승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과 환승할인제 관련 사업
4.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제4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① 운송원가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인건비
2. 연료비
3. 차량 감가상각비
4. 차고지비, 정비·타이어 등 차량정비 관리비
5. 차량 보험료
6. 적정이윤 등 그 밖의 비용

② 감가상각비를 산정할 때에는 대·폐차 지원금, 저상버스구입 지원금, 천연가스버스 구입 지원금 등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연료비를 산정할 때에는 유가보조금·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 ③ 버스를 폐차할 경우 발생하는 폐차수입금은 일정 비율을 감가상각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④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 ⑤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외부회계감사)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사업에 대한 외부회계 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3.7.5)

② 제1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를 요구받은 운송사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회계감사인인 운송사업자별, 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3.7.5)

③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자손실액은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 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하되, 인력 및 기술 부족으로 회계감사를 사실상 받기가 어려운 운송사업자에게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줄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원가산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7.5)

제12조(정보공개)(신설 2013.7.5) ① 도지사는 매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한 보조금 지급내역,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내역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3.7.5)

② 도지사는 버스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을 경우 기업의 영업 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3.7.5)

❖ 규정명 :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23조(소장작품 수집방법) ① ~ ② (생략)

- ③ 공모제를 통한 소장작품 구입은 인터넷에 공고할 수 있으며, 공모에 접수된 작품은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한 수집위원회의 최종심의를 통하여 구입한다.
- ④ 수집위원회에서는 심의대상작품의 가격평가는 각 위원의 평가가격 중에서 최고, 최저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결정하며 채점제와 가부제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24조(수집작품추천회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 ② 제1항의 추천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1. 관장
 2. 학예연구실장
 3. 학예연구사

평가항목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2-3)

현황 및 문제점

- (도립미술관 작품 전시 현황) 도립미술관은 우리 도의 유용한 문화예술자원으로 도민의 문화향유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11~2013년간 전시·관람실적은 다음과 같음

연도	전시명	관람객수	누적관람객수	비고
2011	오늘의 아시아미술전 등 13회	217,121	-	
2012	세계미술거장전<나의사갈 당신의 피카소> 등 8회	268,912	486,033	
2013	<중국 강소성미술관소장품> 전 등 5회	192,734	678,767	



- (작품 추천 및 심사 관련) 작품수집 심의는 내부추천위원(관장, 학예연구실장, 학예연구사)의 자체 추천과 심의위원회 상정으로 진행
 - 최근 3년간 소장품 수집 현황 : 총 227작품/566백만원 상당
 - ※ 2010년 95작품/300백만원, 2011년 65작품/197백만원, 2012년 67작품/69백만원
 - (문제점) 수집작품 추천시 외부전문가 참여 실적이 전혀 없고, 심의대상가격 평정시 평가가격중 최고, 최저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심사과정의 불투명성과 작품 매입가격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음(2013년 사업소 감사시 지적, 언론 보도 등)

개선방안

- 심의 및 가격평가방식 변경으로 깊이 있는 작품 심의 및 적절한 매입가격 산정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
 - 심의방식 개선 : (당초) 내부위원 추천, 심의 ⇒ (변경) 자체추천시 외부위원 참석, 수집위원회의 최종심의
 - 가격평가방식 개선 : (당초) 평가가격중 최고, 최저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결정 ⇒ (변경) 전원 합의제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23조(소장작품 수집방법) ①·② (생략) ③ 공모제를 통한 소장작품 구입은 인터넷에 공고할 수 있으며, 공모에 접수된 작품은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한 수집위원회의 최종심의를 통하여 구입한다. ④ 수집위원회에서는 심의대상작품의 가격 평가는 각 위원의 평가가격 중에서 최고, 최저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결정하며 채점제와 가부제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23조(소장작품 수집방법)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공모제를 통한 소장작품 구입은 인터넷에 공고할 수 있으며, 공모에 접수된 작품은 공모에 접수된 작품은 작품추천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한 수집위원회의 최종심의를 통하여 구입한다. <개정 2013. 8. 9> ④ 수집위원회에서는 심의대상작품의 수집 여부는 가부제로 결정하며, 가격평가는 위원 전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개정안	개선권고안
〈신설〉 제24조(수집작품추천회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제1항의 추천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1. 관장 2. 학예연구실장 3. 학예연구사 〈신설〉	⑤ 작품수집심의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위원 중 관장이 선정하는 해당 전문가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수집작품추천회 설치 및 구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의 추천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장이 된다. 1. 관장 2. 학예연구실장 3. 학예연구사 4. 외부 미술전문가 5인 이내 (관련 대학·법인·학회 또는 국공립미술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



❖ 규정명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직영기업 회계규칙

평가대상 조문

규칙 제3조, 제14조, 제43조, 제75조

- 기업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 등 회계관직 공무원의 관직지정
- 회계직공무원의 장부기입상황 등 장부의 대사 및 검열에 관한 사항
- 지출원의 지출사항 심사 후 지급 등 지출 및 지급의 원칙
-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지급명령서, 지급명령서발행통지서 등의 대조 등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현 황

-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 읍·면 회계관직 공무원의 관직지정 중 분임기업출납원은 읍·면장, 분임지출원은 읍·면사무소 건설담당으로 함
- 규칙 제14조 제2항
 -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도록 함
- 규칙 제43조 제2항
 -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 법규 위반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 함
- 규칙 제75조 제1항
 -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방직영기업이 발행한 지급명령서의 제시 또는 그 밖의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서발행통지서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지급함

문제점

- 읍·면 분임지출원을 읍·면사무소 건설담당으로 지정함에 따라 사업 등의 발주 부서와 지출부서 일원화로 부패발생 유발요인 가능성이 높음
- 회계직공무원이 매월 회계장부의 대사 및 검열 시 장부기입상황만 검열하도록 되어 있어 공급계좌와의 인출 일치여부가 판단되지 않아 비리소지가 있음
- 지출원의 지출심사 시 지출사항의 회계관계 법규 위반여부를 심사하도록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지급절차 중 지급명령서와 지급명령서발행통지서 등만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출결의서를 받아 확인하는 등의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 제43조 제3항과 제112조의 규정과 불부합

개선방안

- 읍·면 분임출납원을 발주부서와 분류하여 읍·면사무소 일반회계 지출업무담당으로 변경
- 회계직공무원이 매월 회계장부 검열 시 상·하수도지급준비금계좌와 대조·확인하는 절차 명문화
- 지출원의 지출심사 시 지출원인행위 등 지급요건이 완성된 후 회계 관계법규 위반여부를 심사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 명문화
-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지급절차에 지출결의서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 명문화



❖ 규정명 : 부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3조(위원의 선정 등)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후보자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등록관리대장으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현황 및 문제점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선정과 관련하여 후보자 및 예비위원을 발주부서에서 단독으로 선정함
- 그 결과 발주부서가 후보자나 예비위원을 선정할 때 재량권의 행사범위가 과도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르기 보다는 이해관계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에 의해서 불공정하게 선정함으로써 부패를 유발할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개선방안

- 발주부서에서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나 예비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반드시 감사담당관 및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발주부서의 재량권을 적절하게 감시·통제하고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개선하도록 함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3조(위원의 선정 등)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후보자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등록관리대장으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의 선정 등)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후보자를 감사담당관 및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감사담당관 및 계약부서와 협의를 거쳐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등록관리대장으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규정명 :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평가대상 조문

제7조(민간위탁 적격심사 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사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들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 이해충돌 가능성(3-3)

현황 및 문제점

- 시정시책 추진에 대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게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공직 남용 사례를 통제하는 기능 미약
- 위원회의 위원이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위임받은 권한을 부당하거나 정당한 행사는 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
- 위원회의 부패 개념과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위원 스스로의 청렴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 부재

개선방안

- 위원회 위원 스스로가 명예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도록 청렴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청렴서약서 징구 필요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규정명 :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평가대상 조문

관련 조문 없음

평가항목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2-3)

현황 및 문제점

-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소재기업 등 국내기업의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보조금 지급의 타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 업체간 유착 등 부패개연성 내재
 ※ 외국인 투자유치 보조금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운영 (2000. 3. 10.)하고 있으나, 국내기업은 관련조례 없음
- 국내기업 투자유치 보조금 지급 후 도내에 정착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함에도, 보조금 수령 후 단기간 내에 타지역 이전, 폐업 등 보조 보조 사업의 목적 달성 곤란, 예산낭비 등 예상됨에도 관리 조례 없음

개선방안

-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사업의 적절한 추진절차 및 보조금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보조절차 등에 대한 규정 마련
- 보조금의 무분별한 지원 및 업체와의 유착방지를 위해 보조금의 지원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



- 투자유치 보조목적 달성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보조목적 미달성시 보조금 지원을 취소 또는 환수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개정안	개선권고안
〈신설〉	제○조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내기업 투자유치 사업에 관한 내용 2.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 및 지원규모(투자유치 보조금의 사후관리)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제△조 (보조금의 지원취소 및 환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호에 해당 될 경우 지원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 규정명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평가대상 조문

대상 조문 없음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현황 및 문제점

- 공동주택 관리 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각종 공사금액을 적정하게 산정 곤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공사의 경우에도 견적가격에 의존
- 입찰공고시 예정가격, 수량, 사업기간을 기재하지 않거나, 시방서 마저 없는 입찰공고가 대다수이며,
- 5인 이상의 지명경쟁입찰 방식 추진으로 담합, 공사비 부풀리기 등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
- 향후 정부에서는 전자입찰을 도입할 예정이나, 설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용지물

문제점

- 공사·용역을 위한 예정가격 결정시 설계에 의하지 않고, 견적에 의존함으로써 과다하게 공사비가 결정되어 장기수선충당금 등 주민들이 내는 관리비 부담증가
- 지명경쟁입찰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담합하여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전락하는 사례 발생



개선방안

- 공사·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도모를 위해 전문업체의 설계 및 원가계산에 의거 사업비 산정

개정안	개선권고안
〈신설〉	제51조 (공사·용역 계약 및 발주방법) ① 추정 금액 일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등 집행을 위한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 (입찰가격 상한)은 정부가 고시한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건축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인 건축사사무소,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설계 하거나 원가계산 하여 산출한다. ② 추정금액 2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 등 집행의 사업자 선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다.

❖ 규정명 :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평가대상 조문

제57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① 관리주체는 영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 영 제5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전기·수도 등의 사용료는 금융기관에서 자동 이체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및 선거 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에 따른다.

평가항목

- 접근성과 공개성(3-1), 예측가능성(3-2)

현황 및 문제점

-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비 납부 단가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하여 게시되며, 결산서는 공동주택단지 게시판에 형식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관리비 집행 세부내역은 미공개

문제점

-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세부 집행내역이 입주민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관리주체에 대한 견제 곤란
 -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CCTV설치, 운동기구 구입 등 전용(서울)
- 관리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더라도 결산서를 공동주택단지 게시판에 포괄적 내용으로 작성, 형식적인 공개로 사실상 면죄부
- 세부적 관리내용 확인 곤란하여 입주민의 관심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필



요한 사업추진, 과도한 사업비 집행 등 입주민 부담가중 및 부패개연성 내재
 ⇨ 입주민과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간 분쟁의 원인

개선방안

- 3만원이상 관리운영비 집행은 카드결제로 투명하게 관리
- 관리비, 공사·용역비, 잡수입등 관리상황을 공개하여 주민감시 유도 및 비리 개연성 차단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57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① · ② (생략) 〈신설〉	제57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집행)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관리비 항목 중 인건비,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공사·용역 계약에 의한 대금의 지급을 제외한 3만원 이상 운영비 등의 집행은 ○○아파트 법인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
〈신설〉	제58조의2 (관리정보의 공개) ① 관리주체는 예산서와 월별 집행실적(운영비, 공사·용역비, 잡수입, 사용료 등)을 건명, 집행액, 채주, 집행사유로 구분하여 익월 15일까지 세대별로 배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서에는 입주자대표 회장, 감사,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인을 첨부하여야 한다.

❖ 규정명 :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

평가대상 조문

제8조(지원취소 및 자금회수 등) ① 도지사는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어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평가항목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2-3)

현황 및 문제점

- 보조금 지원시 보조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뿐만이 아니라 지원에 관해서도 관련 법 및 조례를 적용하도록 명문규정 필요
- 보조금 지원시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특혜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 있음

개선방안

- 보조금 등의 지원시에 재정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한 절차에 의거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인 규정과 적정한 수준을 제시(단서조항 포함)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8조(지원취소 및 자금회수 등) ① 도지사는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원받은 귀어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신설〉	제8조(보조금의 지원 및 회수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보조금의 지원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시·도 교육청 자치법규 개선 사례





❖ 규정명 :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및 조례

평가대상 조문

제2조(징수금액)

3. 특수목적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자율학교·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별표]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제2조 관련)

(단위 : 원)					
학교별	적용지구 (급지별)		구 분	수업료	입학금
공·사립 고등학교	2급지 (가)	일반고	연 액	1,180,800	17,000
			분 기 액	295,200	
		특성화고	연 액	1,180,800	
			분 기 액	295,200	
	2급지 (나)	일반고	연 액	929,200	12,700
			분 기 액	232,300	
		3급지	연 액	700,000	12,300
			분 기 액	175,000	

3개월을
1분기로
한다

1. 이표에서는 (중략) 시내 일원을 말한다.
2. 이 표의 일반고는 일반·특수목적·자율고등학교를 포함한다.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현황 및 문제점

- 2급지인 기장군에 특성화고(가칭 시온식품과학고)가 설립 추진 중이나, 「부산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별표]의 2급지(나)에는 일반고의 금액기준만 있고 특성화고 금액 기준이 없어, 임의 적용으로 과다징수 우려

●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및 조례」

조문 중 [별표] 제2호 및 제2조 제3호 적용 대상학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의 적용으로 과다 징수 등 부패 우려

개선방안

개정안	개선권고안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별표]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제2조 관련) 2. 이 표의 일반고는 일반·특수목적·자율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개정규칙안의 별표 내용에 불명확한 개념이 존재 하여,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의 별표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제2호의 대상학교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문구 수정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징수금액) 3. 특수목적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자율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개정규칙안의 상위법규인 조례에 불명확한 개념이 존재하여,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대상학교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문구 수정

☞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의 관련 조항을 함께 개정함

개선결과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별표] 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제2조 관련)

2급지(나) 특성화고 수업료 및 입학금 명시

2. 이 표의 일반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에서 정하는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를 포함한다.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2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

3. 영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4.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5. 영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6. 영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 규정명 : 광주광역시방과후학교공익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평가대상 조문

제6조(재산 및 운영경비) 제3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평가항목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 출연금 지원 기준 누락
- 예측가능성 : 보조금 접수 근거 및 절차 누락
- 이해충돌 가능성 : 재단 임직원의 결격사유

현황 및 문제점

-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출연금 지원시 조례에는 업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의 선임, 이사장의 임면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 누락
- 조례 제6조 제3호의 출연금은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을 말하므로 개인,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기부금으로 표현
기부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 대상 및 절차가 정해져 있으므로 기부금 접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동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의 임직원은 공적인 업무를 하는데도 임직원의 채용 및 재직시 결격사유에 대한 퇴출 근거가 없음



개선방안

- 업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의 선임, 이사장의 임면 승인 등 예산지원의 근거 기준 마련
- 출연금 자구 수정 및 기부금 접수 절차에 관한 사항 추가
- 임직원의 결격사유 조항 추가 검토

제정안	개선권고안
〈신설〉	업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의 선임, 이사장의 임면 승인 조항 추가
제6조(재산 및 운영경비) 제3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제6조(재산 및 운영경비) 제3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신설〉	기부금 접수 및 처리 절차
〈신설〉	－ 제〇〇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② 재단의 임직원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규정명 : 대전광역시립학교급식소위원회 운영 규정

평가대상 조문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소위원회 설치) ① (생략)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구성·운영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생략)

「대전광역시립학교급식소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위원의 해촉) (생략)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이해충돌가능성(3-3)

현황 및 문제점

- 학교급식 특성상 업무관련자와 납품업자 등과의 관계에서 청탁, 뇌물수수 등 부패유발 요인이 상존하여 식재료 구매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으나, 급식추진 과정의 투명화가 부족한 실정
- 모학교 급식 분야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패 취약
 - 품의요구서 및 작업지시서의 물품과 다른 물품을 납품받아 사용한 의혹이 제기되었고, 식재료 재사용을 통한 부패 발생
 - 식재료 구입 시 규격을 특정업체 제품으로 지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특정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거래하였고, 의도적으로 특정 식단을 매년 대폭적으로 늘려 특정업체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패 발생
- 조례에 급식소위원회를 반드시 두고, 운영 등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관련규정 부재로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소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있는 수준으로 부패차단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위촉된 위원 등이 납품업체 평가, 특정제품에 대한 적정성 등의 평가 참여 시 해당 안전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제척 등을 통해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문 미비로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개선방안

- 학교급식이 교육수요자(학부모·학생)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고질적 부패 행태를 보이고 있는 바, 사전통제장치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학교급식소위원회 운영 규정 마련 권고
- 부패차단의 거름망 역할을 담당하게 될 위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제척 등의 조문을 마련하여 투명성·공정성 확보

개선결과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전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생략)

❖ 규정명 :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평가대상 조문

- 제6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② 위원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 영업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현황 및 문제점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위원회의 특성상 청탁 및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공정성 및 객관성이 저해될 우려가 크나 현행 규정상 부패공직자가 위촉될 수 있는 가능성 상존

개선방안

- 부패공직자에 대한 자격제한 요건 추가
- 제6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소속기관의 부패전력조회 결과 해당사항이 없어야 한다.

개선결과

제6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인 경우 소속기관의 부패전력 조회 결과 부패전력이 없어야 한다.



❖ 규정명 : 강원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평가대상 조문

제5조(실비징수)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수강료, 교재대 등 강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현황 및 문제점

- 기존 조례는 평생학습관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경비를 징수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개정조례에서 교육감의 승인을 제외하였는바, 평생학습관 운영자가 임의로 이용자에게 경비 징수를 결정할 경우, 경비 징수 근거 부재, 특혜발생 가능성, 징수된 경비에 대한 수입 및 지출 불명확 등의 문제점이 예상됨

개선방안

- 기존 조례와 같이 경비 징수시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개선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5조(실비징수)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수강료, 교재대 등 강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실비징수)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수강료, 교재대 등 강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개선결과

제5조(실비징수)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수강료, 교재대 등 강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 규정명 :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17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생략)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 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평가항목

- 재량 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외부강의·강연 시 대가 기준 상한액을 정확히 마련할 필요성 이 있음
- 문제점 : 외부강의·강연 시 대가 기준 상한액이 정확히 마련되지 않아 재량 규정의 구체성 및 객관성 저해

개선방안

- 외부강의 대가 수령기준(상한액)을 마련

개정안	개선권고안
② (생략)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외부강의 대가 수령기준(상한액) 마련

개선결과

제17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생략)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규정명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평가대상 조문

제3조(적용범위)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재량 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경북관내 파견된 공무원 수는 116명이며, 대부분 학교에서 근무
 -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공무원행동강령 적용범위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 되어 있어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 적용 기준이 미비함.
 - 행동강령 책임관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을 경우에 업무처리 근거 규정이 없음

개선방안

- 교육감 소속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도 행동강령 적용 근거 마련
- 부당한 업무 지시자가 공무원행동책임관일 경우 업무처리 규정 마련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경상북도교육청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생략) ②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상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행동강령책임관의 직책이면 그 상급기관의 소속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개선결과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교육감 소속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교육감 소속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생략)

② --- 상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행동강령책임관의 직책이면 그 상급기관의 소속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 규정명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보상 등에 관한 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공무원 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말한다.
4. “내부공익신고”란 공무원 등이 조직내부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부패신고 방법 등) ① (생략)

- ② 부패신고 기한은 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접근성과 공개성(3-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부패신고 대상자나 부패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규 공무원이거나 정규 직원(사립학교 교직원)에 한정되어 있음
- 부패신고 기한을 행위일로부터 2년으로 제한

● 문제점

- 각급 기관(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 등 비정규직원의 직종과 직무의 범위가 넓고 직원수도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게도 부패행위 신고 대상자로 확대하여 반사적 특혜발생 방지 필요
- 학부모, 도민, 비정규직 직원이 부패행위를 알았더라도 이 규정에 따른 신고자가 될 수 없어 부패신고 접근성 제한
- 부패신고 기한이 행위일로부터 2년으로 너무 짧으며 금품수수 등의 경우는 징계시효 기간이 5년임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음

개선방안

- 부패행위 신고대상 : 정규 직원 →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직원
- 신고 가능자 : 정규 직원 → 모든 사람(도민, 학부모, 직원 등)
- 부패 신고 기한 : 2년 → 3년(금품수수 등 : 5년)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공무원 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말한다. 4. “내부공익신고”란 공무원 등이 조직내부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 신뢰받는 청렴 교육행정을 위하여 부패행위 신고 대상자 확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공·사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계약직 교직원”으로 개정 ○ 신고가능자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도록 개선 - 조문 재구성 → “공무원 등의 부패 행위를 신고하는 것”(신고자 지정 없음) ○ 부패 신고기한 조정 - 2년 → 3년 이내(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및 공금의 횡령·유용행위는 5년 이내)
제12조(부패신고 방법 등) ② 부패신고 기한은 행위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개선결과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공무원 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사립 학교 교직원, 공·사립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의 계약직 교직원을 말한다.

4. “부패신고”란 공무원 등의 부패 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부패신고 방법 등) ②부패신고 기한은 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 및 공금의 횡령·유용행위는 5년 이내)로 한다.



❖ 규정명 :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평가대상 조문

제5조(주차요금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그밖에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의한 긴급자동차
3. 1시간 이내의 민원인 및 회의, 행사, 교육 등 공적인 업무 자동차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며,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 주차장법 제19조의3)
- 동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제5조의 주차요금 감면요건에 대하여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②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의한 긴급자동차 ③1시간 이내의 민원인 및 회의, 행사, 교육 등 공적인 업무 자동차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그 밖에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

● 문제점

- 동 조례안 제5조에서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주차

요금의 면제요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감경요건 및 감경을 등 감경에 관한 전체사항을 하위법령인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여 교육감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의 여지가 있으며,

- 주차요금 감경에 대한 요건이나 세부기준이 없는 경우, 주차장 이용자로 하여금 주차요금 감경요건 등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하고, 주차장 사용료 징수업무 집행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행사로 인한 부패유발의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 하위법령에서의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인한 부패유발 방지를 위하여 해당 조항에 대하여 재량 행사범위를 명확화<감경요건 및 감경을 등 규정>하는 수정·보완이 필요함

개선결과

제5조(주차요금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의한 긴급자동차
3. 1시간 이내의 민원인, 회의, 행사, 교육 등 공적인 업무 자동차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까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1. 경형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하고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규정명 : 대전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

평가대상 조문

제2조(징수한도액) 수수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1에 정한 징수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1] 선발수수료 징수한도액

구 분	징수한도액	비 고
사립초등학교/유치원	500원	

평가항목

- 준수부담의 적정성(1-1)

현황 및 문제점

- 2012년 3월 1일부터 무상교육 대상을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서 공통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모든 만 5세 유아로 확대하였고,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던 무상 유아교육을 2013. 3. 1.부터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모든 유아에 대해 무상 유아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었으며, 사립 초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무상교육이 취학 직전 유아들에게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으려는 유아에게 선발 시 수수료(전형료)를 받는 것은 법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일부 유치원은 징수한도액을 초과하여 1인당 1,000원~10,000원까지, 사립 초등학교는 1인당 3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법령 위반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유발하고 있음.

개선방안

- 무상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유아를 선발하는 2014년 입학 전형 시부터 법 개정의 취지에 맞도록 그 선발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 경감
- 현행 법규의 과도한 제한으로 부패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립 초등학교 입학선발 수수료는 사립 초등학교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학교 실정에 따라 당해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함.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2조(징수한도액) 수수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1에 정한 징수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징수금액) 입학선발수수료는 그 학교(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학교(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으로 공통의 교육·보육 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입학선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별표1] 선발수수료 징수한도액	[별표1] (삭제)									
<table><tr><th>구 분</th><th>징수한도액</th><th>비고</th></tr><tr><td>사립초등학교</td><td>500원</td><td></td></tr><tr><td>유 치 원</td><td>500원</td><td></td></tr></table>	구 분	징수한도액	비고	사립초등학교	500원		유 치 원	500원		
구 분	징수한도액	비고								
사립초등학교	500원									
유 치 원	500원									

개선결과

제2조(징수금액) 입학선발수수료는 그 학교(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학교(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으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입학선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별표1] (삭제)



❖ 규정명 : 강원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평가대상 조문

제5조(실비징수)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수강료, 교재대 등 강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현황 및 문제점

- 기존 조례는 평생학습관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경비를 징수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개정조례에서 교육감의 승인을 제외하였는바,
- 평생학습관 운영자가 임의로 이용자에게 경비 징수를 결정할 경우, 경비 징수 근거 부재, 특혜발생 가능성, 징수된 경비에 대한 수입 및 지출 불명확 등의 문제점이 예상됨

개선방안

- 기존 조례와 같이 경비 징수시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개선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5조(실비징수)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수강료, 교재대 등 강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실비징수)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수강료, 교재대 등 강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개선결과

제5조(실비징수)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수강료, 교재대 등 강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 규정명 : 경상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9조(예산편성절차) ① ~ ⑤ (생략)

⑥ ---- 유치원 예산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의 방법) 유치원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평가항목

● 접근성과 공개성(3-1)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관내 사립유치원수는 236개원이며, 예산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지금까지 유치원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며, 규칙 제정(안)에는 단식 부기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문제점

- 예산 공개방법과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비리발생 개연성이 있음
- 단식부기로 할 경우 회계처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낮아 회계사고 우려(공립 유치원회계는 복식부기임)

개선방안

- 비리발생 개연성 차단 및 학부모 신뢰 구축을 위하여 예산 공개 방법과 대상을 구체화
-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단식부기를 복식부기로 변경

제정안	개선권고안
제9조(예산편성절차) ① ~ ⑤ (생략) ⑥ 유치원의 장은 유치원 예산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편성절차) ① ~ ⑤ (제정안과 같음) ⑥ 유치원의 장은 유치원 예산을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원과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의 방법) 유치원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제21조(회계의 방법) 유치원회계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규모와 실정에 따라 단식부기로 할 수 있다.

개선결과

제9조(예산편성절차) ① ~ ⑤ (생략)

⑥ 유치원의 장은 예산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의 방법) ① 유치원 회계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규모와 실정에 따라 단식부기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식부기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정림 韓 세상

Korea, a country of integrity



제4절

공직유관단체 사규 개선 사례





❖ 규정명 : 인사규정 시행세칙

평가대상 조문

제59조(의원면직의 제한) ① 금품, 향응수수 등 비위와 관련되어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직원이 규정 제43조에 의거 의원 면직을 신청할 경우 중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평가항목

- 제재규정의 적정성(1-2)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부패행위 발생 시 외부통보에 의한 조사·수사 중인 경우에 한하여 의원면직 신청 시 확인 후 승인
- 문제점
 - 부패행위로 인한 내부 감사활동에 의해 적발현황이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패행위	1건	1건	2건	6건

- 부패행위자 적발 시 부패행위자가 조사 진행 중에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개선방안

- 내부 또는 외부로부터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59조(의원면직의 제한) ① 금품, 향응수수 등 비위와 관련되어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직원이 규정 제43조에 의거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중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제59조(의원면직의 제한) ① 직원이 규정 제 43조에 의거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 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1. 금품, 향응수수 등 비위와 관련되어 내부 감사부서,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 결과 중징계 처분요구 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 규정명 : 지적확정측량수행자 선정기준

평가대상 조문

2. 지적확정측량수행자 선정방법

지적확정측량수행자 선정은 『지적확정측량수행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수행방식 및 참여업체수와 대표사 지분율 등을 결정하며, 동점자가 나올 경우 공개추첨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예측가능성(3-2)

현황 및 문제점

- 공사는 2009.10월 출범 이후 '12.8월까지 총105건의 지적확정측량을 발주하였으며 선정된 업체는 지적공사와 민간 지적측량업체 39개사로 이중 지적공사는 100회, 민간은 114회 수주

[내출범이후 지적확정측량 수행자 선정현황('12.8.기준)]

구 분	민간업체 선정횟수										지적 공사
	합계	8회	7회	6회	5회	4회	3회	2회	1회	0회	
업체수	146	1	1	3	4	4	5	9	12	107	1
선정횟수	114	8	7	18	20	16	15	18	12	-	100
횟수소계	100%	53회(47%)				31회(27%)			30(26%)		

- 현행 지적확정측량업무 수행자 선정 방법은 사업지구의 면적, 시공상태 등 당해 지구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적확정측량수행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수행 방식(단독 또는 공동) 및 참여업체 수와 대표사 지분율 등을 결정

- 참여업체 수를 객관적인 기준 없이 ‘면적 등 당해지구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은 재량이 과도하여 업체선정의 공정성이 떨어지고, 참여업체의 예측가능성 저하
- 또한, 심의위원회 심사항목이 실적, 참여기술자, 장비, 신용도 등 대형업체에 유리한 구조로 중소기업체는 수주자체가 곤란(107개 중소기업체는 수주실적 0건, 37개 대형업체는 114건)

개선방안

- 선정방법 개선(기준점수 이상 업체 중 추천)
- 참여업체 수 결정기준 구체적 제시(사업지구 면적과 연동)

개정안	개선권고안
2. 지적확정측량수행자 선정방법 지적확정측량수행자 선정은 『지적확정측량수행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수행방식 및 참여업체수와 대표사 지분율 등을 결정하며, 동점자가 나올 경우 공개추첨	2. 지적확정측량수행자 선정방법 2.1 선정원칙 지적확정측량수행자 선정은 『지적확정측량수행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산정한 평가점수가 기준점수(85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추천하여 선정한다. (단서 생략) 2.2 선정기준 (1) 심의위원회 심사평가 및 추천 선정심사표에 의해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심사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통해 아래와 같이 사업지구 면적에 따른 기준업체 수만큼 선정하고 해당 지분율을 부여 하되 두 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할 경우 당첨 업체 중 최고득점 업체를 주관업체로 정한다. (후단 생략)



❖ 규정명 : 계약사무처리준칙

평가대상 조문

제37조(수의계약) 규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 22. (생략)
23. 농협시설물 준공평가에서 우수설계자로 선정된 자와 선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에서 계약하는 경우
24. ~ 28. (생략)
29.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특혜발생 가능성(1-3)

현황 및 문제점

- 상기 조항의 제23호는 농협시설물 준공평가에서 우수설계자로 선정된 자에게 선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서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특혜사항을 규정
 - 본 특혜조항으로 인해 계약의 경쟁입찰기회가 줄어들고 농협시설물 준공평가 과정에서 우수설계자로 선정되기 위한 부패유발요인이 발생하고 다른 입찰업체의 공정한 경쟁기회 제한
- 제29호는 수의계약대상 기준으로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명시하여 과도하게 추상적으로 규정
 - 본 조항으로 인해 업무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경쟁입찰 기회가 제한됨에 따른 객관성 및 공정성 저해 우려

개선방안

- 농협시설물 준공평가에서 우수설계자로 선정된 자에게 부여하는 특혜조항 삭제
- 수의계약의 기타 불가피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37조(수의계약) 1. ~ 22. (생략) 23. 농협시설물 준공평가에서 우수설계자로 선정된 자와 선정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서 계약하는 경우 24. ~ 28. (생략) 29.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7조(수의계약) 1. ~ 22. (개정안과 같음) 23. 〈삭제〉 24. ~ 28. (개정안과 같음) 29.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 가. 시험지 및 비밀문서의 인쇄와 경영 관리 등에 관련하여 본회가 보안상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소송 및 법률·회계자문을 외부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에 의뢰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감안할 때 경쟁에 부쳐서는 당해 계약의 목적 등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라. 농업인의 지원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인과 계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마. 기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본회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규정명 : 인사규정시행세칙

평가대상 조문

제53조의10 (승진심사) ① 2급(을) 이상 직원으로의 승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선발하여 임용한다.

1. 1급 직원으로의 승진은 1급 직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2급(갑) 직원중에서 2급(갑) 승진심사점수와 직전년도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고려하여 사장이 확정 임용한다.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현황 및 문제점

- 1급 승진을 기관장 단독으로 결정
 -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 없이 근무평정점수와 2급(갑) 승진심사 점수를 참고하여 기관장 단독으로 결정하여 1급 승진심사를 결정하고 있어 승진의 특혜 발생 가능성 및 공정성 저해
- 과도한 승진임용범위 운영
 - 3급 이상 직원의 승진임용범위를 타기관에 비해 확대하여 서열명부상 지나치게 승진 서열이 낮은 자가 승진에 임용될 가능성이 있는 등 재량 범위 과다

개선방안

- 공정·청렴한 승진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승진심사위원 및 간사에게 청렴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 신설

- 1급 승진심사를 위한 「1급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 승진임용범위가 과도하지 않도록 적절한 승진임용범위 조정

개정안

제53조의5 (위원 등의 책임) ① 위원은 어떠한 이해관계나 정실도 배제하고 심사기준, 심사자료 및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제53조의10 (승진심사) ① (생략)

1. 1급 직원으로의 승진은 1급 직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2급(갑) 직원중에서 2급(갑) 승진심사점수와 직전년도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사장이 확정 임용한다.

[별표13] (제53조의 10및 제59조의2 관련)

승진임용범위

승진예정인원수 직급별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0명 초과시
2급(갑)직원 으로의 승진	30	35	40	45	50	60	70	80	90	100	초과 인원당 10배수 추가

개선권고안

제53조의5 (위원 등의 책임) ① 위원은 어떠한 이해관계나 정실도 배제하고 심사기준, 심사자료 및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청렴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제53조의10 (승진심사) ① (개정안과 같음)

1. 1급으로의 승진은 별표13의 승진임용범위에 있는 2급(갑) 직원을 대상으로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한다.

[별표13] (제53조의 10및 제59조의2 관련)

승진임용범위

구분	승진임용범위
1급 또는 2급(갑)직원 으로의 승진	승진예정인원의 7배수



❖ 규정명 : 보훈복지타운 운영규정

평가대상 조문

제11조(입주 우선순위) ① (생략)

② 입주 우선순위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무주택자”를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자녀와의 갈등 등으로 유기상태에 있는 무주택자”보다 우선하되, 대상별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애국지사 2. 상이군경 3. 처 4. 유족 5. 기타대상자

평가항목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2-3)

현황 및 문제점

- 공단 소속 보훈원의 보훈복지타운(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거 복지 안정을 위해 “만 60세이상 고령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무주택자 등”에게 26㎡(240세대)과 45㎡(212세대) 두 가지 형태의 주거 공간을 소정의 보증금과 월 관리비만 받고 제공해 주는 역할 수행
- 유사한 거주시설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증금과 관리비만으로 주거가 가능한 보훈복지타운의 경우 입주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 제11조는 ‘입주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상이군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족’의 대상범위 및 ‘처’의 대상자를 규정하지 않아 입주 대상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우선순위 결정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음

※ 제9조(입주자격) 제1항제1호

1. 만 60세 이상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애국지사
 - 나.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다.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배우자
 - 라.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의 배우자
 - 마.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중 손자녀를 제외한 선순위 유족
 - 바.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의 유족 중 자녀를 제외한 선순위 유족
 - 사. 재일학도의용군인과 그 유족 중 자녀를 제외한 선순위 유족
 - 아. 무공·보국수훈자와 그 유족 중 자녀를 제외한 선순위 유족
 - 자. 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중 자녀를 제외한 선순위 유족
 - 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개선방안

- 대상자별 용어의 정의는 복지타운 입소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중요한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각의 용어 정의를 관련 법령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업무수행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11조(입주 우선순위) ① (생략) ② 입주 우선순위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무주택자”를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자녀와의 갈등 등으로 유기상태에 있는 무주택자”보다 우선하되, 대상별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애국지사, 2. 상이군경, 3. 처, 4. 유족, 5. 기타대상자	제11조(입주 우선순위)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입주 우선순위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무주택자”를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의 무주택자”보다 우선하되, 대상별 우선순위는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순으로 한다.



❖ 규정명 : 조합금융 투자업무요령

평가대상 조문

제43조(거래방식) 금융투자상품의 대여 및 회수거래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 통신시스템(SAFE)」을 통하여 실행한다.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현 황

- 제43조는 금융투자상품의 대여 및 회수거래를 특정 중개기관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중개기관 선택에 제한을 두고 있음

문제점

- 특정 중개기관과만 거래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특혜 발생

개선방안

- 대여거래 가능 중개기관을 확대함으로써 특정 기관 몰아주기식의 거래형태를 개선하고, 부패요인 차단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43조(거래방식) 금융투자상품의 대여 및 회수거래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 통신시스템(SAFE)」을 통하여 실행한다.	제43조(거래방식) 금융투자상품의 대여 및 회수거래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증권금융 등과 같은 중개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하되, 차입자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대여거래 중개기관의 대행책임하에 실행한다.

❖ 규정명 : 인사규정

평가대상 조문

제4조 (직원전형채용)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급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시로 직원을 전형 채용할 수 있다.

1. 법령 및 정부지시에 따를 때
2. 보직예정직무에 상응한 특수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할 때
3. 긴급충원이 필요할 때
4. 삭제
5. 사장이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특혜발생 가능성(1-3)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정책에 의하여 인턴직원을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채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
- 인턴직원을 정규직원으로 전환 또는 채용 시 평가기준을 규정하지 않아 채용 담당자의 재량 또는 판단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특혜(상급기관·내부 관계자 자녀 입사 등 타 공공기관 사례)발생 가능성 있음

개선방안

- 인턴직원을 정규직 전환 및 채용 시 채용담당자의 자의적 판단 및 재량에 의해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턴직원 정규직 전환 및 채용에 대한 기준 신설



개정안	개선권고안
〈신설〉	제4조의2 (인턴) ① 법령 및 정부지시에 따라 정원외로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인턴기간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인턴은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채용 및 운영방법 등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규정명 : 연구용역 업무처리기준

평가대상 조문

제7조(목적) 총괄부서의 장은 연구용역 대상자의 객관적 선정과 연구성과물의 검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연구용역 총괄부서의 장이 종합기획부 예산담당 업무팀장, 소관부서 담당업무 팀장을 포함하여 기타 신보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원 5명(위원장 포함)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용역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17조(선급금의 지급) ② 용역금액이 5백만원 이상으로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에 대하여 계약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50%의 범위에서 선급금 을 지급할 수 있다.

평가항목

- 이해충돌 가능성(3-3), 특혜발생 가능성(1-3)

현황 및 문제점

- 연구용역 사업자 선정시 구성·운영되는 ‘실무협의회’ 관련 심사위원의 제척·기피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외부연구용역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실무협의회’ 위원이 용역 사업자 및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공정한 심사를 해하고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가능성 존재
- 연구용역 선급금 지급기준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계약금액이 큰 경우에도 담당자의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 존재



개선방안

- 이해관계가 있는 계약건에 대해서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항 마련
- 용역사업자 선급금 지급기준을 금액별로 세부적으로 규정

개정안	개선권고안
〈신설〉 제17조(선급금의 지급) ① 소관부서의 장은 용역대상자의 계약이행 이전에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부실을 방지하고 계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요령에 따라 선급금 또는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실무협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한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계약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계약 3. 위원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정한 특수관계 등과 같은 법률상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 관련된 계약 ② 이해관계자는 특정위원이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결정을 받은 자는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선급금의 지급) ① 소관부서의 장은 용역대상자의 계약이행 이전에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부실을 방지하고 계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요령에 따라 선급금 또는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	개선권고안
② 용역금액이 5백만원 이상으로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에 대하여 계약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50%의 범위에서 선금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용역금액이 5백만원 이상으로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인 계약에 대하여 계약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선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2.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100분의 40 3.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 규정명 : 용역업무수탁에관한세칙

평가대상 조문

제13조(용역업무 수행상 특례) ① ~ ③ (생략)

- ④ 공단은 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탁받은 용역업무의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업무는 용역담당부서장이 처리한다.
- ⑤ 용역담당부서장은 제4항에 따라 용역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의 집행과 정산이 포함된 계약서 또는 승낙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재량규정의 구체성·적정성(2-1)

현황 및 문제점

- 수의계약으로의 재위탁 특례 규정에 내재한 비리발생 우려
 - 일반 계약규정과 다르게 “금액 등의 제한 없이 수탁 받은 용역 업무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재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업무효율성 등을 이유로 자의적인 수의계약 집행 우려
- 특정업체의 선정 특혜 및 부적절한 예산낭비 우려
 - 재위탁 용역계약을 용역담당부서장이 직접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계약업체 및 계약금액 적정성 등의 충분한 검토 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재위탁 업체를 선정할 우려

개선방안

- 비리발생 및 예산낭비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재위탁 기준 명확화
 - 정부와의 수탁계약 건도 일반 계약사무처리세칙 규정을 준용하여 2천만원(추정가격) 이상의 재위탁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집행
- 용역담당 부서장이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재위탁 계약금액 제한
 - 재위탁 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1천만원(추정가격) 이상의 재위탁은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토록 개선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13조(용역업무 수행상 특례) ① ~ ③ (생략) ④ 공단은 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탁받은 용역업무의 일부를 수의 계약으로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업무는 용역담당부서장이 처리한다. ⑤ 용역담당부서장은 제4항에 따라 용역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의 집행과 정산이 포함된 계약서 또는 승낙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업무 수행상 특례)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공단은 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탁받은 용역업무의 일부를 재위탁 할 경우에는 계약사무처리세칙을 준용하여야 한다. ⑤ 용역담당부서장은 제4항에 따라 용역 업무를 재위탁하려면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1천만원(추정가격) 미만인 재위탁 용역의 경우에는 용역담당부서장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 규정명 : 여비규정

평가대상 조문

[별표3] 이전비정액표

가족을 동반한 이전시에는 위 표의 지급액 외에 이사화물의 적재 및 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을 공사가 인정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특수화물의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직원이 원거리 전보발령으로 인해 가족동반 이사를 하게 될 경우, 공사는 이사업체가 발행해주는 소정의 증빙을 제출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이사비용 지급
- 문제점
 - 이사비용의 상한과 세부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고가의 이사를 실시하여도 회사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불합리 발생

개선방안

- 가족동반 이사비용에 대하여 세부 지급기준을 정하여, 각종 요인(이사물량, 품질의 고저 등)에 따른 과도한 이전비 지급 방지

개정안	개선권고안	
가족을 동반한 이전시에는 위 표의 지급액 외에 이사화물의 적재 및 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을 공사가 인정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특수화물의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급 기준	지급액
	1. 5톤 이하의 이사 화물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 (사다리차 이용료 포함)
	2. 5톤 초과 7.5톤 이내 (상한 7.5톤)	상기 해당금액과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 실비 (사다리차 이용료 포함)의 50%를 더한 금액



❖ 규정명 :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

평가대상 조문

제3조(매매방법) ①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규제금융상품”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3.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제10조에 따라 신고할 것
4. 기타 법령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평가항목

- 이해충돌 가능성(3-3)

현황 및 문제점

- 한국거래소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가능
- 그러나, 한국거래소 임직원은 업무상 일반투자자 보다 중요정보를 취급하고 있어,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 및 부당이득 등 부패행위유발 요인 존재

개선방안

- 기존에 보유중인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매도를 허용하여 재산권 제약요인을 최소화하되, 신규매수를 제한하여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3조(매매방법) ①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규제금융상품”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3.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제10조에 따라 신고할 것 4. 기타 법령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신설〉	제3조(매매제한) ①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금융투자상품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12항에 따른 주가연계증권 중 지분증권의 가격 등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주가연계증권(이하 “지수형 주가연계증권”이라 함)은 제외한다]을 매매하거나 모집 또는 매출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기 위해서 해당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다. 1. 거래소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 2.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 3. 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라 취득한 지분증권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 4. 그 밖에 상임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



❖ 규정명 : KRX 파생상품 우수 논문상 시행 실무기준

평가대상 조문

관련 조문 없음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현황 및 문제점

- KRX 주최 전국 대학생 증권·파생상품경시대회 수상자에게는 신규채용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
- 논문심사위원의 친인척, 지도학생 등이 논문을 제출하는 경우 심사위원이 가점을 부여하여 우수 논문상으로 지정될 가능성 존재

개선방안

- 논문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논문심사위원회를 설치
- 금품수수, 알선, 청탁시 심사위원 해촉 근거 마련
- 심사위원의 제척 및 회피근거 마련

개정안	개선권고안
〈신설〉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거래소는 논문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파생상품시장본부장

개정안	개선권고안
	(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6인으로 구성하며, 학계 위원 4인, 업계 위원 1인, 당연직 위원 1인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학계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파생상품 관련 학회로부터 복수로 추천 받은 자 2. 업계 위원은 금융투자업의 등록 및 인가를 받은 자의 임직원으로서 파생상품분야 전문가 3. 당연직 위원은 파생상품연구센터장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며, 제2항제3호의 위원은 제외한다. ④ 위원회 회의의 준비, 의사록의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센터의 연구실장으로 한다. ⑤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들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의 윤리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제8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본부장은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 또는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2. 타 위원에게 알선, 청탁 등을 하는 행위 3. 그 밖에 심사와 관련하여 청렴 또는 품위유지에 반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 내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신설〉	제1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논문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논문의 저자 혹은 공저자와 친족관계(배우자의 친족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그 밖에 논문 심사에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논문 심사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의 회피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 규정명 : 기술평가기준

평가대상 조문

제4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 ③ (생략)

1. 기술평가인력풀 중에서 별표의 기준 부합하는 자를 기준으로 평가위원 소요 인원의 3~5배 후보자를 선정한다. 감사실 입회 하에 위 후보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교섭순위를 정한다.

제16조(평가결과 공개) 기술평가위원회 종료 후 입찰참가 업체의 기술평가 총점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평가항목

- 특혜발생 가능성(1-3), 접근성과 공개성(3-1)

현황 및 문제점

1) 평가위원 교섭순위 수기 작업에 의한 선정

- 사업입찰별 기술평가위원 후보군(평가위원의 3-5배수) 구성 후, 수기로 감사실 입회 하 교섭순위 직접 추첨
-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문제점 발생
 - 상기 교섭순위 추첨 과정이 수기로 진행되어 교섭순위 절차 공정성에 대한 대내외 인식 부족 및 만족도 저하 우려 (특혜의혹 소지발생)
 - 매 순위추첨 시마다 기술평가팀 및 감사실 관계자 집결 추첨실시에 따른 시간 및 행정력 소요

(문제 분석에 따른 대안)

수기작업에 의해 평가위원 교섭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작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전자시스템에 의해 교섭순위를 정함으로써 평가위원을 예측 불허하게 함으로써 사전에 평가위원들 대상으로 사업 참여 희망업체들이 유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낼 수 있음.

2) 평가결과 공개범위 부족

- 기존에 기술평가점수 총점만을 공개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 발생
 - 평가위원 일부 점수 편중 등 총점만 공개할 경우에 평가의 투명성 의혹 제기 가능
 - 세부적 점수 미공개에 따른 피드백 제공이 어려움

(문제분석에 따른 대안)

기술평가결과는 사업참여업체 선정, 탈락의 중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 평가(정책결정)가 누구에 의해 행해졌는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기관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시켜 사업참여업체들의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제도개선 사항임

개선방안

- 평가위원 선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추첨기록 전산보관
 - 기술평가시스템 상에서 평가위원 교섭순위 추출 기능을 포함하도록 전산 시스템 고도화 실시
 - 평가위원 선정과정 전체를 전산화 및 추출기록을 서버에 보관함으로써 기술 평가 절차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평가결과 공개범위 확대를 통해 기술평가의 투명성 및 평가위원의 책임성 및 평가의 질 제고
 - 기존에 기술평가점수 총점 공개하던 것에서 각 평가위원별(익명처리) 점수표 및 의견서를 공개하도록 함으로 우리 기술평가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평가위원들 스스로 평가 자체에 신중하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평가의 질적제고를 도모함



제정안	개선권고안
제4조(평가위원회 구성) ①~③ (생략) 1. 기술평가인력풀 중에서 별표의 기준 부합하는 자를 기준으로 평가위원 소요인원의 3~5배 후보자를 선정한다. 감사실 입회하에 위 후보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교섭 순위를 정한다. 제16조(평가결과 공개) 기술평가위원회 종료 후 입찰참가 업체의 기술평가 총점을 전자조달 시스템에 공개한다.	제4조(평가위원회 구성) ①~③ (제정안과 같음) 1. 기술평가인력풀 중에서 (중략) 기술평가위원 전자선발시스템을 통해 교섭순위를 확정한다. 제16조(평가결과 공개) 기술평가위원회 종료 후 (중략) 평가위원별 세부 점수를 공개한다.

❖ 규정명 : 감사업무세칙

평가대상 조문

관련 조문 없음

평가항목

- 이해충돌 가능성(3-3)

현황 및 문제점

- 감사담당자는 자체감사 대상부서 및 직원에 대한 부정부패를 예방하거나 적발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감사적발을 무마하기 위한 청탁의 대상이 되고 있어 비위 발생의 가능성이 높으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 개입의 여지가 있음
- 감사업무의 경우 업무특성상 감사대상과의 간접적 관련성까지 고려하여 직무를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나 현재 감사업무에 있어 감사 업무자는 감사대상 업무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불공정한 감사 및 중립성 상실 등 부패행위의 개연성 내재

전문가 의견수렴

- ○○○ 비상임감사(공인회계사)가 우리단 감사관련 업무 진단시 감사대상과 관련 있는 감사담당자가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시 공정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



유사 부패사례

- 모 공공기관 감사팀 A대리는 보험심사에 대한 특혜의혹과 관련한 특정감사 업무 수행 중 조사대상 및 관련자가 친·인척임을 인지하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감사팀장에게 보고 후 관련 내규(감사인 회피)에 따라 일시적으로 해당 특정감사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 및 허가

개선방안

- 감사담당자가 감사 대상업무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관련업무를 재배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개선권고안
〈신설〉	제8조의 2(감사인의 회피) ① 감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2. 감사담당자가 감사대상 업무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감사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시적으로 업무를 재배정할 수 있다

❖ 규정명 : 여비규칙

평가대상 조문

제13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국내여행자의 일비(日費)·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고, 해외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재단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평가항목

-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현황 및 문제점

- “재단차량”이란 용어를 재단이 소유한 차량만으로 오해하여 일비를 과다하게 책정할 수 있음
※ 재단차량 이용 시 일비의 2분의 1만 지급하고 있음

개선방안

- 「공무원 여비규정」을 기준으로 재단에서 제공하는 렌탈 차량 또는 외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용차량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재단차량”이란 용어를 “공용차량”으로 개정하여, 일비를 과다 책정할 수 없도록 함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13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생략) ②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재단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제13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 (좌동) ②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 규정명 : 계약사무규칙

평가대상 조문

- 제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자가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성부분 또는 계약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있어서의 지불금액은 공사 또는 제조에 대하여는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의 10분 9 물품의 매입에 대하여는 그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이사장은 선불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불을 할 수 있다.

평가항목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2-1)

현황 및 문제점

- 계약 절차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계약 사무 진행 시 규칙 해석 혼선 초래
- 특히, 대가 지급 시 선불 지급이 가능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주관적 판단에 의한 선불 지급 가능

개선방안

- 규칙 전면 개정을 통해 계약 흐름에 따른 절차를 상세히 명기하여, 계약 사무에 대한 직원의 이해도를 제고함과 동시에 규칙 해석의 혼선 방지

- 선금 지급이 가능한 상황을 명확히 표기하여, 주관적 판단에만 의존한 선금 지급 방지

개정안	개선권고안
제9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자가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라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성부분 또는 계약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서의 지불금액은 공사 또는 제조에 대하여는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의 10분 9 물품의 매입에 대하여는 그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선불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불을 할 수 있다.	제45조(선금의 지급) ① 제41조 및 제42조에 의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선금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목적의 달성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 계약 2.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선금신청일 현재 계약이행기일의 잔여일수가 30일 이상)인 계약 3. 입찰참가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 규정명 : 설계자문위원회 운영내규

평가대상 조문

제3조(위원회 구성) 제5항

위원은 공사의 3급이상 직원과 기술사(건축사포함)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외부전문가 중에서 인천도시공사 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평가항목

- 이해충돌 가능성(3-3)

현황 및 문제점

- 설계자문위원의 기능(제2조)
 - 개발사업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 설계의 경제성 등(설계VE) 검토, 각종 건설기술공법에 대한 자문
 - 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다른법령에서 위원회에 위임한 심의, 자문, 점검, 확인 등의 사항 등
 - 주요 심의내용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 기술심의와 설계 용역 기술제안서 심사를 통한 업체선정 심의 기능 역할
- 최근 2년간 12건의 기술심의 및 업체선정 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 실적, '13년 하반기에 2건 심의예정 →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필요
- 문제점 인식
 - 소위원회 구성시 내부위원 선정 제한기준 마련 미비
 - 심의부서 및 발주부서 직원의 내부위원 선정의 제한사항이 없어 관련업체의 로비대상 및 유착 가능성

- 심의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미흡
 - 업체선정 심의시 기술제안서 심사가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 요소 및 재량권이 커서위원의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한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위원 자격요건 규정화 및위원의 제척, 기피 기준마련 등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 유사부패 및 민원사례

- 구월건설사업과 관련하여 2011년에 전면책임감리용역 기술제안서 평가에서 누락된 업체에서 평가위원 선정의 적합성에 대한 민원 제기한 사례 등
- 파주교화신도시 입찰비리 및 부산 선급협회 입찰비리,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공공하수 처리시설 1단계건설사업 업체선정 부적정 등 언론보도('13.7 영남일보)

개선방안

- 내부위원 제한기준 마련 및 외부위원 자격요건 구체화·규정화를 통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필요한 알선청탁이나 향응수수 등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는 효과

개정안	개선권고안
〈신설〉 제3조(위원회 구성) 제5항 〈신설〉 〈신설〉	• 소위원회 구성시 내부위원 선정 제한기준 마련 • 외부위원 자격요건 명확화·규정화 • 외부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제도 명시 • 기타 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기준 마련 등



정림 韓 세상

Korea, a country of integrity

제5장

부 록

제1절 제·개정 시 참고해야 할 일반법

제2절 색인

청령韓
세상



제1절

제·개정 시 참고해야 할 일반법

① 과태료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과태료 부과시 고려사항,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부과·징수 방법, 감경기준, 이의제기 절차 등 규정

② 위원회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위원회 설치 요건 및 절차, 구성 및 운영 방법, 위원회 설치 시 법령에 명시해야하는 사항 및 공무원 의제 등 규정

③ 행정업무의 위임·위탁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행정기관 간 위임·위탁 기준, 민간위탁 기준 및 대상선정 기준, 지휘·감독 등 규정

※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위임·위탁은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를 규정

④ 개인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기준 및 목적외 이용금지, 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제한,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 등 규정

⑤ 행정정보의 공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행정정보의 공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규정

⑥ 행정처분·사전통지·청문 등 : 「행정절차법」

⇨ 불이익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청문·공청회, 행정예고·행정지도 등 규정

제2절

색 인

연번	평가규정	평가기준	페이지
1	감사업무세칙	이해충돌 가능성	365
2	강원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재량규정의구체성·객관성, 특혜발생가능성	320
3	강원도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특혜발생 가능성	332
4	검역법 시행규칙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측 가능성	88
5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309
6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특혜발생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324
7	경상북도교육청사립유치원재무·회계규칙	접근성과 공개성	334
8	계약사무규칙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368
9	계약사무처리준칙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특혜발생 가능성	342
1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특혜발생 가능성	38
1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62
12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이해충돌 가능성	302
13	광주광역시방과후학교공익재단설립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315
1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재규정의 적정성	33
15	국가재정법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120
16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재량규정의구체성·객관성	116
17	국립국악·전통예술학교설치령	접근성과 공개성	71
18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제교류 지침	특혜발생 가능성	268



연번	평가규정	평가기준	페이지
19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참고의견	124
20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접근성과 공개성	74
2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준수부담의 적정성	31
22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참고의견	132
23	근로감독관 직무규정	재량규정의구체성·객관성	272
24	근로기준법 시행령	참고의견	127
25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	이해충돌 가능성	358
26	기술평가기준	특혜발생 가능성, 접근성과 공개성	362
27	노동위원회법	제재규정의 적정성	36
28	노인복지법 시행령	준수부담의 적정성	28
29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임·위탁기준의적정성	56
30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특혜발생 가능성	40
31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68
32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재량규정의구체성·객관성	328
33	대전광역시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	준수부담의 적정성	330
34	대전광역시립학교급식소위원회 운영 규칙	재량규정의구체성·객관성, 이해충돌가능성	317
35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재량규정의구체성·객관성, 제재규정의적정성	97
3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예측 가능성	77
37	문화재보호법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50
38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재규정의 적정성	91
39	문화재청 공무원 행동강령	재량규정의구체성·객관성	279
40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예측 가능성	79
41	법제처 홍보업무 운영규정	특혜발생 가능성	270
42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재량규정의구체성·객관성	47
43	보훈복지타운 운영규정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346

연번	평가규정	평가기준	페이지
44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준수부담의 적정성	312
45	부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준수부담의 적정성	312
46	부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재량규정의구체성·객관성	286
47	부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재량규정의구체성·객관성	300
48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이해충돌 가능성	109
49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이해충돌 가능성	284
50	설계자문위원회 운영내규	이해충돌 가능성	370
5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60
52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106
53	소음·진동관리법시행령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100
54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참고의견	130
55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이해충돌 가능성	80
56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 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시행령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114
57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103
58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53
59	여비규정	재량규정의구체성·객관성	356
60	여비규칙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367
61	연구용역 업무처리기준	이해충돌 가능성, 특혜발생 가능성	351
62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재규정의 적정성	93
63	용역업무수탁에관한세칙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354
64	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특혜발생 가능성	319
6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86



연번	평가규정	평가기준	페이지
66	인사규정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특혜발생 가능성	349
67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재규정의 적정성	338
68	인사규정 시행세칙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344
69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이해충돌 가능성	290
70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65
71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118
72	전라남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보조금지원 조례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292
73	전라북도립미술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295
7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직영기업 회계규칙	재량규정의구체성·객관성	298
7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보상 등에 관한 규칙	특혜발생 가능성, 접근성과 공개성	326
76	조합금융 투자업무요령	특혜발생 가능성	348
7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참고의견	135
78	지적확정측량수행자 선정기준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측 가능성	340
79	징병신체검사장비 관리규정	특혜발생 가능성	277
80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이해충돌 가능성	82
8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이해충돌 가능성	112
82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재량규정의구체성·객관성	305
83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접근성과 공개성, 예측 가능성	307
84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위임·위탁 기준의 적정성	288
85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재량규정의구체성·객관성	322
86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특혜발생 가능성	44
87	호남지방통계청 자체 위임전결규정	재량규정의구체성·객관성, 위임·위탁기준의적정성	274
88	KRX 파생상품 우수 논문상 시행 실무기준	특혜발생 가능성	360

2013

Corruption Impact Assessment Casebook

부패영향평가사례집

발행일	2014년 6월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편집	부패방지국 부패영향분석과(Tel. 02-360-6600)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본관(우120-705)
인쇄·디자인	(사)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인쇄사업소 Tel. 02-396-1392 Fax. 02-6008-1473

